主要國의 租稅制度

KIPF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經濟成長이란 巨視指標上에 나타나는 경제의 量的인 成長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量的인 成長에 걸맞는 質的인 成長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유구한 시장경제체제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質的인 成長이란 증대된 경제의 규모를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制度와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經濟主體들의 意識과 慣行을 의미한다. 즉, 늘어난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과 그 그릇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觀點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짧은 기간 동안 量的으로는 일정 수준에 이르는 성장을 달성한 것이 틀림없지만 質的인 側面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經濟主體들의 意識과 慣行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의 양적인 팽창을 수용할 수 있는 制度의 適切한 改善과 導入이 不足하였음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의 租稅制度도 사정은 이와 비슷하다. 경제성장과 발맞추어 稅收는 持續的인 增大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租稅制度 自體는 그에 걸맞는 變化와 改善이 있었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특히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과 所得의 再分配라는 租稅 本然의 機能의 측면에서는 아직 아쉬운 점이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漏失되고 있는 稅源과 낮은 課稅捕捉率, 높은 間接稅의 比重과 直接稅機能의 脆弱, 職種別·階層別 相對的 稅負擔의 不平等, 방만하게 운영되는 租稅減免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우리 조세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인다.

이같은 問題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있어 外國의 經驗과 事

例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示唆點을 제공해준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自由競爭市場體制를 발전시켜 왔거나 우리와 대등한 競爭關係를 이루고 있는 國家들의 制度와 經驗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本 報告書는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 만한 國家들의 租稅制度를 개략적으로나마 소개하고자 작성되었다. 대상이 되는 주요국으로는 美國, 日本, 英國, 프랑스, 獨逸, 臺灣의 6개국을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관심을 끄는 국가들의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작업이 한정된 시간에 이루어졌고 追後 補完作業을 持續한다는 前提下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本 報告書는 林周瑩 博士가 총괄을 담당하고 所得稅는 全瑛俊·韓道淑 博士, 法人稅는 孫元翼 博士, 財產稅는 魯英勳 博士, 相續·贈與稅는 韓相國 博士, 消費稅는 成明宰 博士가 각각 담당하여 작업하였다. 저자들은 그 동안 자료의 정리 및 교정에 수고하여준 申基銚 주임연구원을 비롯한 해당 研究員과 助員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담긴 內容은 筆者들의 勞苦의 結果이므로 그에 따른 모든 功過는 筆者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1996年 11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第 I 篇 主要國의 租稅制度

Ⅰ. 所 得 稅

1. 美國

가. 納稅義務者

美國의 소득세 納稅義務者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지며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거 주 자	이민비자 소유자를 포함하며 모든 소득에 과세
비거주자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산출가능한 정기적 소득에 과세

나. 課稅區間 및 稅率

1995년도 현재 소득세의 과세계급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달러)

세 율	독 신 자	부부합산신고자	부부개별신고자	특 정 세 대 주
15	0 ~ 23,350	0 ~ 39,000	0 ~ 19,000	0 ~ 30,500
28	23,350 ~ 56,550	39,000 ~ 94,250	19,000 ~ 45,925	30,500 ~ 78,700
31	56,550 ~ 117,950	94,250 ~ 143,600	45,925 ~ 70,000	78,700 ~ 127,500
36	117,950 ~ 256,500	143,600 ~ 256,500	70,000 ~ 125,000	127,500 ~ 250,000
39.6	256,500 초과	256,500 초과	125,000 초과	250,000 초과

다. 稅額算定方式

소득세액 산정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소 득 합 계

↓

− 소 득 공 제

↓

= 과 세 소 득

× 세율

↓

− 세 액 공 제

= 납 부 세 액

라. 控除 및 減免

1) 소득공제

소득세 납세자는 각 연도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개별 신고를 할 경우 부부가 동일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표준공제방식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신고자별로 법으로 정한 일정금액을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서 공제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표준공제상의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單位 : 달러)

	1988	1989	1990	1993
부부합산신고자	5,000	5,200	5,450	6,350
특정세대주	4,400	4,550	4,750	5,600
독신자	3,000	3,100	3,250	3,800
부부개별신고자	2,500	2,600	2,700	3,175

항목별 공제방식은 세법상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항목의 지출액을 합계해서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초과소득공제	납세자의 조정 후 소득액이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의 3% 상당액을 감액. 단, 항목별공제액의 20% 상당액이 한도
의료비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지출 합계액이 조정 후 총소득액의 7.5%를 넘는 부분
세금	주・시 등의 지자체 및 외국의 소득세, 고정자산세, 동산세, 특정 주의 실업보험료, 상해보험료 등
자선기부금	공제한도액은 조정 후 소득액의 50%이지만 장기양도이익이 생기는 자산을 기부했을 때는 30%
도난・재해손실	보험에 의해 보전되지 않은 부분에서 1건당 100달러를 공제한 금액이 조정 후 총소득의 10%를 넘는 경우 공제
전근비용, 지불이자	
잡공제	조정 후 총소득액의 2%를 넘는 부분으로, 근로자의 사업경비, 교육훈련비, 도박손실 및 기타직업관련비용

2) 인적공제

1995년 현재 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에게 각각 2,500달러씩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조정 후 소득인 AGI(Adjusted Gross Income)가 부부합산신고시 17만 2,050달러 이상인 경우와 독신자

신고시 11만 4,7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AGI의 매 2천달러마다 2% 비율로 감액한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환급가능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s)와 환급불가능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s)가 있다.

다음의 세액공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개인 세액 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 13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을 부양할 경우 - 최고 부양비용은 1인 2,400달러, 2인 이상일 경우는 4,800달러로 한정 -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AGI(Adjusted Gross Income)가 1만달러일 경우는 부양비의 30%, 1만달러를 넘을 경우 초과액의 2천달러당 세액공제율은 1%씩 감소(최소공제율은 20%)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해 15% 혜택
	주택마련 융자에 대한 이자 비용 세액공제	- 저소득층의 주택소유주 중 州정부에서 발행하는 주택융자 세액공제 인정서(Qualified Mortgage Credit Certificate)를 발부받아 세액공제 신청 - 일반적으로는 인정서에 표기된 공제율만큼 공제 가능하지만 최고 연 2천달러로 한정
외국 세액 공제	- 외국소득세로 지불된 금액에 대해 국내 소득세액공제 - 공제금액은 납세액(Regular tax liability)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세액 공제	- 약물실험 세액공제(Orphan Drugs Credit) - 대체자원개발 세액공제(Alternative Fuels Credits) - 전기자동차 세액공제(Credits for Qualified Electric Vehicles) - 사업관련 세액공제(Business-Related Credits) - 투자소득 세액공제(Investment Credit) - 이전 최소세에 대한 세액공제(Credit for Prior Minimum Tax)	

다음의 세액공제는 환급이 가능하다.

<table>
<tr><td rowspan="5">수취소득
세액공제</td><td colspan="2">- 수취소득이 있으면서 1995년의 과세투자소득이 2,350달러 이하인 저소득 납세자
- 수취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 팁 등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자영업자일 경우는 영업소득이 해당</td></tr>
<tr><td colspan="2">세액공제 한도액(1995년 현재기준)</td></tr>
<tr><td>한명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td><td>2,094달러(수취소득 6,160달러에 공제율 34% 적용), 만약 AGI가 1만 1,290달러를 초과할 경우 위의 공제율은 15.98%씩 감소
- Phaseout percentage</td></tr>
<tr><td>두명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td><td>3,110달러(수취소득 8,640달러에 공제율 36% 적용), 만약 AGI가 1만 1,290달러를 초과할 경우 위의 공제율은 20.20%씩 감소</td></tr>
<tr><td>부양자녀가 없을 경우</td><td>314달러(수취소득 4,100달러에 공제율 7.65% 적용), 만약 AGI가 5,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위의 공제율은 7.65%씩 감소</td></tr>
<tr><td>그 외의
환불 가능
세액공제</td><td colspan="2">- 원천징수세액공제(Credit for Taxes Withheld)
- 휘발유세액공제(Gasoline Tax Credit)
- 정부통제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Regulated Investment Company Credit)</td></tr>
</table>

2. 英國

가. 納稅義務者

英國의 納稅義務者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진다.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英國 내에 거주하거나 4년 연속 英國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英國을 방문하는 경우 조세법상의 거주자로 판정한다.

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거 주 자	영국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
비거주자	영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課稅區間 및 稅率

부부간의 소득은 각각 분리되어 과세되며 課稅區間 및 稅率은 다음과 같다.

(單位 : 파운드, %)

과 세 소 득	세 율
3,200 이하	20
3,200 ~ 24,300	25
24,300 초과	40

다. 稅額算定 方式

美國과 같은 일반적인 稅額算定方式을 따른다.

라. 控除 및 減免

1) 소득공제

<table>
<tr><td rowspan="2">인 적 공 제</td><td>기본공제</td><td>개인당 3,445파운드, 맹인일 경우 추가로 1,200파운드</td></tr>
<tr><td>추가공제</td><td>• 노인을 위한 인적 공제
65 ~ 74세 : 4,200파운드
74세 이상 : 4,370파운드
• 의료보험비용 : 60세 이상의 납세자
• 이자지불 비용
i)단, 하나의 주택마련을 위해 융자한 금액(3만파운드 한도)에 대한 이자지불비용의 20%
ii)상속세에 대한 이자지불액
• 개인연금 혹은 퇴직연금에 지불한 금액</td></tr>
<tr><td>특 별 공 제</td><td colspan="2">- 위자료 지불 : 연 1,720파운드 한도
- 주택마련대출 이자금 : 대출된 금액 중 3만파운드에 대한 이자비용</td></tr>
</table>

2) 세액공제

개인소득 세액공제	다음 액수에 대한 15%의 세액공제(1995~1996년 기준) - 부부합산 : 1,720파운드 - 65~74세의 부부 : 2,665파운드 - 74세 이상의 부부 : 2,705파운드 - 위자료 : 1,720파운드 - 미혼모 : 1,720파운드
외국세액 공 제	외국에 납부된 세액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국내납부세액을 공제

3. 獨逸

가. 納稅義務者

獨逸의 納稅義務者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국적에 관계없이 獨逸 내에 주거지가 있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조세법상의 거주자로 판정한다.

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거 주 자	독일 내외의 모든 소득
비거주자	독일 국내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

나. 課稅區間 및 稅率

소득세율은 독신자와 부부합산신고자에게 달리 적용되며, 이전 소득(earned income) 발생시에는 일반 소득세율과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독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마르크, %)

과 세 소 득	세 율	세 액
5,616 이하	0	0
5,617 ~ 8,153	19	0 ~ 472
8,154 ~ 120,041	19 ~ 53	482 ~ 40,751
120,042 이상	53	40,780 이상

부부합산신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마르크, %)

과 세 소 득	세 율	세 액
11,339 이하	0	0
11,340 ~ 16,307	19	0 ~ 944
16,308 ~ 240,083	19 ~ 53	964 ~ 81,502
240,084 이상	53	81,560 이상

이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과세표준이 적용되며 최대납세액은 다음과 같다.

(單位: 마르크)

미 혼		부부동반 공동신고	
이 전 소 득	최대납세액	이 전 소 득	최대납세액
11,555 이하	0	23,111 이하	0
15,173 이하	1,862	30,347 이하	3,742
15,173 이상	일반세액	30,347 이상	일반세액

다. 稅額算定方式

美國과 같은 일반적인 세액산정 방식을 따른다.

라. 控除 및 減免

1) 소득공제

표준필요경비공제	비독립적 근로소득	2천마르크
	자산소득	100마르크
	기타소득	200마르크
특별지출공제	개인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 미혼·개인 : 2,610마르크, 부부합산 : 5,220마르크 -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원을 가진 납세자일 경우 미혼 : 6천마르크, 부부는 1만 2천마르크씩 추가됨 -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1,305마르크(부부 : 2,610마르크) 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50% 공제 가능
	건축저축	납세자 본인이 거주할 경우에 연 한도 1만 2천마르크 이내의 이자비용을 완공된 해로부터 2년간 공제가능(단, 연 소득이 12만마르크, 부부는 24만마르크 이내의 납세자)
	교육비, 직업훈련비	연 900마르크(자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연수를 갈 경우는 1,200마르크)
	세무상담비	
	기여금	정치적인 기부금 성격일 경우, 연 6천마르크(부부) 한도
인적공제	65세 이상 납세자에 대한 노년자 소득공제(연금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3,720마르크를 한도로 소득의 40%를 공제	
이상부담공제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재해비나 의료비 등에 대해 공제	

2) 세액공제

배당수익 세액공제	총 배당 수익의 7분의 3 한도
외국세액 공제	외국으로 지불한 세액에 대해 독일세액 공제

4. 프랑스

가. 納稅義務者

프랑스의 納稅義務者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주된 거주지나 전문직 활동범위 또는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프랑스 내에 존재할 때 거주자로 판정한다.

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거 주 자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	프랑스 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

나. 課稅區間 및 稅率

세액계산단위는 가족으로 가족합산분할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가족의 과세소득은 모두 합산되고 이것을 구성원 수에 따라 정해진 가족계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가족계수를 곱한다. 가족계수의 수치는 독신자, 이혼자, 과부는 1, 부부는 2로, 부양자녀 1인당 0.5씩 가산되며, 3명째부터는 1씩 가산된다.

1995년 현재 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프랑, %)

과 세 소 득	세 율
0 ~ 22,610	0
22,611 ~ 49,440	12
49,441 ~ 87,020	25
87,021 ~ 140,900	35
140,901 ~ 229,260	45
229,261 ~ 282,730	50
282,731 이상	56.8

다. 稅額算定方式

세액산정은 美國과 동일한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

라. 控除 및 減免

<table>
<tr><td>소득공제</td><td colspan="2">- 급여소득공제 : 미혼자 8천프랑, 부부 1만 6천프랑
- 이자배당소득 공제 : 1995년 기준 5만프랑
- 사회보험료공제, 노년자공제, 장애자공제</td></tr>
<tr><td>특별공제</td><td colspan="2">- 공익사업기부금 : 총소득의 5%한도
- 시청각설비이용료 : 순소득(net income) 한도
- 자녀의료비 : 7세 이하의 자녀에게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연 1만 5천프랑 한도
- 부양자녀공제 : 자녀당 2만 7,120프랑 한도(자녀가 기혼자일 경우 두 배)
- 위자료 지불액</td></tr>
<tr><td rowspan="5">세액공제</td><td>이자지불비용</td><td>주거주택을 보수하거나 개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으로부터 이자지불비용 발생시 그에 대해 처음 5년간 연 25%까지 세액공제(연 1만 5천프랑 한도. 자녀당 2천프랑씩 추가)</td></tr>
<tr><td>생명보험료</td><td>보험료지불액 중 저축이 되는 부분의 25%
(연 4천프랑 한도, 자녀 1인당 1천프랑씩 추가)</td></tr>
<tr><td>자녀교육비</td><td>자녀당 400프랑 : 중학교
자녀당 1천프랑 : 고등학교
자녀당 1,200프랑 : 대학교</td></tr>
<tr><td>주거용 빌딩에의 투자</td><td>최고 빌딩가격의 10%까지 세액공제
(미혼자 : 연 3만프랑 한도
부 부 : 연 6만프랑 한도)</td></tr>
<tr><td>새로 출자한 기업에의 투자</td><td>최고투자액의 25%까지 세액공제
(미혼자 : 연 4만프랑 한도
부 부 : 연 6만프랑 한도)</td></tr>
</table>

5. 日本

가. 納稅義務者

納稅義務者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한해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단, 업주가 비거주자이거나 日本 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거 주 자	ㅇ 국내세율 적용
비거주자	ㅇ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각국과의 조세규약에 의해 결정된다. ㅇ 일반적으로 일본 내에서 발생한 소득일 경우 20%의 원천과세율이 적용됨 ㅇ 배당소득, 이자소득 : 15% 원천과세율이 적용됨

나. 課稅區間 및 稅率

課稅區間 및 稅率은 다음과 같다.

(單位 : 만엔, %)

과 세 소 득 금 액	세 율
~ 300	10
301 ~ 600	20
601 ~ 1,000	30
1,001 ~ 2,000	40
2,000 이상	50

다. 稅額算定方式

稅額算定方式은 美國과 동일한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

라. 控除 및 減免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가 있다.

가) 인적공제

(單位 : 만엔)

항목		소득세
기초공제		38
배우자공제	공제대상배우자	38
	노인공제대상배우자(70세 이상)	48
배우자특별공제		(최고) 38
부양공제	부양친족	38
	특별부양친족(16세 이상 23세 미만)	53
	노인부양친족(70세 이상)	48
동거노친 등 가산		+ 10
동거특별장애자 가산		+ 30
노년자 공제		50
장애자, 과부, 홀아비, 근로학생공제		27
	특별장애자	35
특정의 과부가산		+ 8
백색사업전종자	배우자	86
	배우자 이외	50

나) 특별공제

재해손실공제	손실액에서 보험회사에서 지불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연 한도 5만엔) 또는 총 급여의 10% 초과분
의료비	총 급여의 5% 초과분(연 10만엔 한도)
사회보장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등 정액공제
생명보험료	
재해보험료	단기보험 : 연 3천엔 한도 장기보험 : 연 1만 5천엔 한도
기부금	1만엔 초과분(총 급여의 25%)

다) 근로소득공제

(單位: 만엔, %)

급 여 수 입	공 제 율
	(최저 65만엔)
180 이하 부분	40
360 이하 부분	30
660 이하 부분	20
1,000 이하 부분	10
1,000 초과 부분	5

2) 세액공제

배당소득 세액공제	- 만약 총소득액이 1천만엔 이하일 경우 수취배당금의 10%까지 세액공제 - 만약 총소득액이 1천만엔 이상일 경우 배당소득공제(10%의 배당금)는 1천만엔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으로만 적용 - 외국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외국 세액공제	- 외국으로 납부된 세액은 국내세액으로부터 공제 - 한도액 산출방식: 국내소득세×(국외소득액/총소득액) - 만약 외국세액이 위에서 산출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3년 동안 이월가능함
주택 마련 세액공제	- 만약 연소득 2천만엔 이하의 납세자가 주거할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중 적은 액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i) 25만엔 ii) 1%의 주택마련융자금액(연 한도 2천만엔)+만약 융자금이 2천만엔이 넘을 경우 0.5%의 초과액(3천만엔 한도) - 연소득이 2천만엔을 넘지 않은 경우 6년간 같은 융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6. 臺灣

가. 納稅義務者

納稅義務者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국내에 주소가 있고 또 항상 국내에 거주하는 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과세연도에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자를 거주

자로 판정한다.

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거 주 자	대만 내 원천소득에만 과세(속지주의)·종합소득세방식 적용
비거주자	대만 내 원천소득에만 과세, 원천징수방식

나. 課稅區間 및 稅率

과세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元, %)

과 세 소 득 금 액	세 율
300,000 이하	6
300,000 초과 800,000 이하	13
800,000 초과 1,600,000 이하	21
1,600,000 초과 3,000,000 이하	30
3,000,000 초과	40

다. 稅額算定方式

종 합 소 득 총 액

↓(—)

면 세

↓(—)

공 제

↓(—)

특 별 공 제

↓(=)

과 세 소 득

↓(×) 세율적용

세 액 공 제 (=) 납 부 세 액

라. 控除 및 減免

控除 및 減免은 면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리고 외국세액 공제제도가 있다.

1) 면세액

본인, 배우자 및 규정된 부양가족의 면세액을 차감하는데, 종합소득세의 면세액 기준은 연 6만元이며, 면세액 산정은 물가지수 연동법을 따른다.

2)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열거공제와 표준공제로 나누어지는데 납세자는 두 가지 공제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열거공제	기 부 금	교육, 문화, 공익 · 자선사업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20%까지의 금액. 단, 국방, 군대위문을 위한 기부금 및 정부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공제
	보 험 료	납세의무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직계친족의 생명보험료, 노공보험료 및 군인, 공무원, 선원보험의 보험료. 단, 1인당 연간 공제액은 2만 4천元 한도
	의 료 및 산아비용	납세의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부양친족의 치료비 및 산아비용으로 공립병원 또는 재정부가 인정하는 회계 기록이 정확한 병원에 지불한 것에 한함. 단, 보험급부를 받은 부분은 제외
	재해손실	납세의무자가 받은 불가항력의 재해손실. 단, 보험급부를 받은 부분은 제외
	가옥구입 차입금이자	납세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 지불한 차입금이자는 집 한채에 한해 1인당 연간 8만元까지 공제
표준공제	- 상기의 각종공제에 대해 일일이 항목을 열거하여 설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표준공제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표준공제액은 3만 8천元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5배인 5만 7천元이 됨	

3) 특별공제

자산양도 손　　실	- 납세의무자의 자산양도에 의한 손실액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상계 - 당해 연도에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양도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공제부족액은 3년간 이월
급여소득 특별공제	-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합산신고하는 개인에게 급여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신고급여소득에서 5만 2천元을 공제 - 신고한 급여소득이 5만 2천元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
저축투자 특별공제	-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합산신고하는 배우자, 부양친족에게 각종 이자, 저축성신탁예금의 수익 및 상장기명주식으로부터 수취배당이 있을 때에는 이들 합계액의 연간 2만 7천元을 한도로 공제 인정
장애자 특별공제	- 납세의무자, 그 납세의무자와 합산신고하는 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장애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자인 경우에는 1인당 매년 6만 3천元을 공제
교육비 특별공제	- 납세의무자 자녀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시에는 자녀 교육비로 연간 2만元을 공제할 수 있음

Ⅱ. 法 人 稅

1. 美國

가. 納稅義務者

美國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美國 내에 설립된 內國法人과 外國法人 모두에게 있으며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內 國 法 人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外 國 法 人	미국 국내의 항구적 시설에 귀속하는 영업상의 소득, 미국 국내를 원천으로 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

내국법인이란 미합중국법·각 주법에 의거하여 美國 내에서 설립 또는 조직된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이외의 법인을 의미한다.

세법상 법인의 유형은 일반법인(C-corporation), 소규모법인(S-corporation), 조합(Partnership), 개인사업주(Solo Proprietorship)로 구분되어 있다[1].

나. 課稅區間과 稅率

美國 법인세의 과세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 美國의 其他 法人類型」 참조.

(單位 : 달러, %)

課　　稅　　所　　得	稅　　　率
50,000 미만	15
50,000 이상　75,000 미만	25
75,000 이상　100,000 미만	34
100,000 이상　335,000 미만	39
335,000 이상 10,000,000 미만	34(평균세율)
10,000,000 이상 15,000,000 미만	35
15,000,000 이상 18,333,333 미만	38
18,333,333 이상	35(평균세율)

資料: Commerce Clearing House, *U.S. Master Tax Guide*, 1996.

과세소득 5만달러 미만, 5만달러에서 7만 5천달러 사이, 7만 5천달러에서 10만달러까지는 각각 15%, 25%, 34%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소득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초과분의 5% 또는 1만 1,700달러 중 적은 액수의 세가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과세소득 33만 5천달러까지의 한계세율은 39%가 된다. 따라서 33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4%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1993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35% 과세구간이 적용되었는데 과세소득이 1,5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과세분의 3% 또는 10만달러 중 적은 액수의 세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1,500만달러 이상 1,833만 3,333달러 미만의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38%가 된다. 따라서 1,833만 3,333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35%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다. 稅額算定方式

법인세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총수익
−	손금
	당기소득액
−	이월결손금공제
−	특별공제
	과세소득액
×	세율
	세액공제전 세액
−	세액공제
	납부세액

포상금·기부금·유증품·비과세공공채이자·자본전입·미실현이익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연도는 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한번 선택한 사업연도는 변경할 수 없다. 한편, 일단 법인단계에서 법인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후 주주에게 배분된 배당에 대하여도 개인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은 사업상의 지불이자와 달리 법인소득의 산정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일반법인 이외의 사업형태에 대해서는 사업체 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라. 非課稅 및 減免

內國稅法 第501條는 자선이나 상호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비영리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非課稅團體(exempt organization)를 정의하고 있다. 비과세단체는 美國政府의 소속기관으로서 特別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 종교, 자선, 과학, 공공의 안전·문

학·교육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의 강화, 자녀·동물의 학대방지를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다. 비과세단체가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unrelated business income)을 취득할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私的資金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단체의 경우에는 그 이자·배당금 등의 순투자 수익에 대해 2%의 消費稅가 부과되며, 매기 그 수익을 분배시킬 목적으로 각종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한편 세액공제제도는 아래와 같다.

	支援對象	支援內容	備 考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증가지출분	20% 세액공제	
고용촉진 세액공제 (Targeted Jobs Credit)	특정집단을 고용한 고용주가 초년도에 지불한 임금	40% 세액공제 단, 연간 6,000달러 한도에서 세액공제	경제적으로 불리한 청년, 여름 임시직 청년 등
미국령기업에 대한 세액면제 (Possessions Tax Credit)	미국령기업이 미국령에서 얻는 사업소득, 투자소득	세액면제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등

[참고] 美國의 其他 法人類型

1. 파트너쉽(Partnership)

파트너쉽이란 신디케이트(syndicate), 그룹(group), 풀(pool), 합작회사(joint venture), 그 외 法人格 없는 團體로 영업·금융·투기적 사업을 행하는 단체를 포함하며, 信託財團(trust), 遺産財團(estate), 法人(corporation)은 제외된다. 파트너쉽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州法에 의해 설립되며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특별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① 파트너쉽의 소득은 자금 또는 재산분배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에 의한 특약사항이 없는 한 그 지분비율에 따라 파트너의 소득이 되고, 파트너의 타손익과 합산된다.
② 파트너와 파트너쉽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파트너의 소득액에 합산되는 소득은 파트너의 회계기간중에 종료한 파트너쉽의 결산기 소득액에 대한 분담 부분이다.
③ 파트너쉽의 缺損金도 이익과 같이 그 분담비율에 따라 각 파트너에 귀속하게 되나 각 파트너는 그 지분액을 넘어 파트너쉽의 결손액을 인식할 수는 없으며 출자지분액을 넘는 결손액은 다음기로 이월되어 추가 출자가 있었던 연도에 공제된다.
④ 파트너쉽으로부터의 금전 또는 재산에 의한 각 파트너에 대한 분배는 배당금이 아니고 출자지분의 인출이며, 과세대상이 아니다.
⑤ 사업활동으로 생긴 소득의 종류, 손금의 성격 등은 그대로 파트너에 이행해야 하므로 파트너쉽에서 생긴 資本利得(capital gain)은 파트너에 있어서도 자본이득으로 되고, 寄

附金은 기부금으로서 파트너에 인계되어 파트너의 단계에서 손금산입 제한액이 계산된다.

⑥ 파트너로부터 현물출자된 자산의 세무상의 가액은 파트너에 있어서의 세무상의 장부가액이고 파트너쉽으로부터 파트너에 분배된 자산도 똑같이 파트너쉽에 있어서의 세무상의 장부가액이다.

⑦ 파트너와 파트너쉽간의 거래는 그것이 타당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한 제3자간의 거래와 똑같이 인정되나 50% 초과의 이익배분 지분을 가진 파트너와 파트너쉽간에 생긴 資產의 賣却, 交換에 의한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⑧ 80% 초과의 지분을 소유한 파트너와 파트너쉽간의 거래에 의한 이익은 자본이득이 아니고 통상소득으로 취급된다.

2. 信託 및 遺產財團(trust and estate)

信託財團이나 遺產財團은 독립된 납세주체로 되어 수탁자에 의해 모든 소득이 신고되어야 하며 유산재단 및 신탁재단에 관한 세율표에 의해 납세하도록 되어 있다. 수탁자에 대해 배분한 금액은 신탁소득으로부터 제외되며 수익자가 그 부분에 대해 납세한다. 美國에서는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규정을 정하고 있다. 遺產財團은 개인의 사망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그 자체가 과세 대상이며, 상속인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그 수익에 대해 과세된다.

3. 小規模法人(S-corporation)

小規模法人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주가 소득세를 납세하는 법인을 말하며, 특정 자본이득 및

자산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법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주주는 35명 이하로, 부부는 소유 주식과 관계없이 한명의 주주로 간주하며 주주 중 비거주 외국인은 없을 것

② 주주는 전원 개인 또는 유산재단일 것

③ 1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는 비관련 그룹 국내법인일 것

소규모법인 총수입의 25%를 넘는 자산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通常稅率로 과세하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그와 같은 수익이 총수입의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규모법인에게 배당되는 금액 중 자산의 분배가 되는 금액으로 법인의 순자본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주주의 장기자본이득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법인단계에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법인의 당해 연도 소득이 2만 5천달러 이상이면서 2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순자본이득이 있는 경우

② 당해 연도 과세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 단계에서의 세액은 순자본이득이 2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총액의 35%와 소규모법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법인의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 중 적은 것으로 과세된다.

4. 外國人所有法人(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外國人所有法人은 총수입의 60% 이상이 투자수익이고,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5인 이하의 美國人 또는 거주 외국인이 보유하

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2. 英國

가. 納稅義務者

納稅義務者는 居住法人과 非居住法人으로 구분되며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居住法人	사업에 관계되는 관리 및 지배의 중심이 영국 국내에 있는 법인으로 전세계소득과 자본이득(capital gain)이 법인세의 대상
非居住法人	영국 국내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한 사업소득과 지점 또는 대리점이 사용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및 자본이득

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 법인격 없는 단체, 신탁재단(unit trust), 외국기업의 지점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 파트너쉽(partnership)은 개인으로 취급된다.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데 그치고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주식회사

② 주주가 회사의 해산시 받는 금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有限責任 株式會社

③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無限責任 株式會社

나. 課稅區間과 稅率

(單位: 파운드, %)

課 稅 所 得	稅 率
300,000 이하	25
300,000～1,500,000	35
1,500,000 이상	33

資料: Coopers & Lybrand, *International Tax Summaries*, 1995.

세율은 기본적으로 33%의 단일세율이나, 과세소득이 30만 파운드 이하인 小規模法人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30만에서 150만파운드 사이인 법인에 대해서는 35%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일정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限界控除制度(marginal relief)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한계공제액} = (\text{한도액상한} - \text{순이익}) \times \frac{\text{과세소득}}{\text{순이익}} \times \text{한계공제비율}$$

현재 법인세에서는 한도액 하한을 30만파운드로, 한도액 상한을 150만파운드로 하고 있으며 限界控除比率은 50분의 1로 정하고 있다. 이 한계공제제도에 의해 산출된 법인세액은 결과적으로 위의 35% 한계세율을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산출법인세액은 같게 된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 즉 소득과 자본이득에서 일정한 경비와 공제가능한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英國 내에서의 사업이익
② 자유직업 소득
③ 이자, 연금, 로열티 및 기타 연차지불금(annual payments)
④ 외국의 저당증권, 채권 등에 의한 소득
⑤ 외국소재 재산으로부터의 소득
⑥ 기타소득
⑦ 英國에 있는 부동산에서의 임대료수입 및 프리미엄(premium)
⑧ 국채 또는 지방자치채권에서의 이익
⑨ 급여소득
⑩ 英國 거주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 등

일반적으로 배당은 법인의 이익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법인단계의 법인세 과세와 개인단계의 소득세 과세의 二重課稅 問題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진다. 조정과정에서 소득세의 기본세율인 25%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法人段階	配當分과 留保分을 구별하지 않고 33%
個人段階	受取配當額에 8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課稅所得에 산입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受取配當額의 20/80을 공제

법인에 대한 각종의 특별조치 때문에 실제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二重課稅調整(imputation)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하여 배당을 지불할 때에 세율 80분의 20으로 豫納法人稅를 납세한다. 豫納法人稅는 본래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고 법인간의 배당에는 예납법인세 없이 수취

배당에 대하여도 전액 익금불산입한다.

다. 稅額算定方式

손익계산서의 세 공제전 이익
세법상 신고조정 (+) 가산
(−) 감산
(−) 순사업소득 이외의 소득 제외
(−) 수취배당금 불산입
(=) 사업소득(trading profits)
(−) 전기이월손실 공제
(+)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 가산
(=) 소득합계(total profits)
(−) 연차지불금 공제(부담금)
(+) 자본이득 가산
(=) 과세소득

라. 非課稅 및 減免

이자 또는 로열티(royalty)에 대해서 지불된 英國源泉稅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된다. 또한 外國稅額控除가 있는데, 外國稅額控除에는 直接稅額控除와 間接稅額控除가 있으며, 공제한도액은 외국세액과 대상이 되는 국외소득에 대한 英國 법인세 상당액 중 적은 것이다. 외국법인의 의결권을 10% 이상 가지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관한 間接稅額控除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여유액이나 공제미달액의 이월제도는 없고 看做稅額控除는 租稅條約에서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3. 獨逸

가. 納稅義務者

獨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즉, 株式會社, 有限會社, 株式合資會社, 組合, 相互保險會社 및 동류의 외국기업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合名會社나 合資會社와 같은 형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개인에게 배분되는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居住法人	독일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거나 경영관리의 중심지를 갖고 있는 경우로서 기본적으로 전세계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나 租稅條約에 의한 각종 免稅措置를 받고 있음.
非居住法人	일반적으로 법인세 대신 독일을 원천으로 하는 배당, 로열티, 채권이자에 대해 源泉稅가 부과되나 이러한 소득이 국내에 있는 지점이나 항구적 시설에 의해 可得된 경우는 법인세가 부과됨.

나. 課稅區間과 稅率

거주법인은 未處分利益에 대해 45%, 配當利益에 대해 30%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1995년에는 법인세액의 7.5%에 해당하는 團結附加稅(solidarity surcharge)가 과세되어 實效稅率은 留保分이 48.375%, 配當分이 32.25%가 된다. 과거에 50%가 과세된 잉여금을 배당하면, 법인세율은 14% 낮아진 36%가 되며 과거에 비과세 처리된 소득을 배당한 경우에도 36%의 세금이 과세된다.

獨逸 원천소득에만 과세되는 비거주법인은 배당과 상관없이 46%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社會保障料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양쪽에 부과되어 고용주부담분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한 贈呈은 1인당 연 75마르크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慈善의 성격을 갖는 寄附金 및 公益目的을 위한 寄附金은 과세소득의 5% 또는 연간 매출액과 급여 합산액의 0.2%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配當支拂法人과 配當受取法人 또는 配當受取個人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二重課稅調整(imputation)을 적용하고 있다. 배당을 수취한 측은 배당지불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원천세 가운데 수취측의 실수입 배당부분의 7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법인의 법인세 납부 또는 수취개인의 소득세 납부시 세액공제할 수 있다. 배당수취측이 외국거주자인 경우 당해 외국과 獨逸間의 조세조약 중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稅額算定方式

법인의 과세소득은 기본적으로 법인이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초하여 계산하며,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후 가감조정한다.

라. 非課稅 및 減免

동독지역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支援對象	支援內容
投資稅額控除 (Investment Tax Credit)	동독지역에 대한 건물 투자, 流動資產(movable asset)에 대한 투자	투자한 해, 또는 5년 내 투자비용의 50% 공제

4. 프랑스

가. 納稅義務者

居住法人, 非居住法人 모두 프랑스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프랑스 국외소득은 법인세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법인의 국외소득은 비과세된다. 비거주법인의 이익은 당해 이익이 프랑스 거주자에게 배당되었거나, 주주에게 분배된 총 배당금액이 지점의 세후이익보다도 적다는 것을 당해 비거주법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처분된 것으로 보고 25% 源泉徵收된다. 원천징수세액은 조세조약에 의해 輕減될 수 있다.

법인의 유형은 株式會社, 株式合資會社, 有限會社, 協同組合 등이 있는데, 合名會社, 合資會社 등의 人的會社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출자자 개인에게 과세한다.

非營利團體는 회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된다. 不動產所得, 農林業所得, 일정한 動產資本所得은 법인세의 輕減稅率(24%)로 과세되나 營利活動에 대해서는 標準稅率로 과세된다.

나. 課稅區間과 稅率

法人稅率은 33.33% 單一稅率로서 지점이익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이익은 분배된 것으로 보아 源泉稅의 대상이 된

다. 長期資本利得에 대해서는 19%의 分離課稅, 公益法人의 資産所得에 대해서는 24%의 輕減稅率이 적용된다.

신규 설립회사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최초 5년간 課稅免除 또는 輕減稅率을 적용받을 수 있다.

(單位: 개월, %)

期　　間	課稅輕減率
1 ~ 24	100
24 ~ 36	75
36 ~ 48	50
48 ~ 60	25

다. 稅額算定方式

법인소득세는 당해법인의 稅務申告書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財務諸表에 표시된 이익에 대하여 免稅所得,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經費, 特別控除, 移越缺損 등의 조정을 함으로써 과세소득이 산출된다.

회사가 배당을 지불하는 경우, 주주는 配當額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稅額控除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納稅債務와 相殺할 수 있다. 주주가 개인이며 자신의 납세채무가 없든지 또는 그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공제액과의 차액이 환급되는 것을 'avoir fiscal'이라 한다. 이것은 거주법인, 개인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체결한 二重課稅 防止條約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총매상고에 따른 액수를 과세하는 槪算課稅制度는 적자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이 많은 것에 대처하기 위해

1974년 도입되었다. 이것은 법인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며 개산과 세액은 당기와 차기 2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프랑스기업은 社會保障負擔稅 고용주부분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회보장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法人稅 概算課稅의 稅額

(單位: 프랑)

總　買　上	稅　額
100만 미만	5,000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7,500
200만 이상 ~ 500만 미만	10,500
500만 이상 ~ 1,000만 미만	14,500
1,000만 이상 ~ 5,000만 미만	25,000
5,000만 이상 ~ 1억 미만	35,000
1억 이상 ~ 5억 미만	50,000
5억 이상	100,000

라. 非課稅 및 減免

	支援對象	支援內容	備 考
研究開發費 稅額控除	연구개발 중 직전 2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	50% 세액공제 공제한도 : 4천만 프랑	1992～1995년 동안 적용, 초과분 (Excess Credit)은 환급할 수 없으며, 향후 3년간 사용 가능
教育費 稅額控除	직업훈련비 중 전년도 지출액 초과분	25% 세액공제 공제한도 : 100만 프랑	45세 이상, 50명 이하 소기업, 비숙련 노동자 교육의 경우 40% 세액공제, 한도는 500만 프랑
投資稅額 控除	프랑스 북부(Nord Pas de Calais)의 10인 이상 기업	창업 후 36개월 동안 투자액의 22% 세액공제	단, 철강야금, 합성섬유, 조선, 자동차 산업인 경우 EC의 동의 필요
增資稅額 控除	증자액이 자본과 유보금의 25%를 초과한 증자기업	증자액의 25% 세액공제. 한도는 50만프랑	1991년 11월 15일 ～ 1993년 12월 31일 동안 적용
創業企業 稅額免除	1988년 10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	2년간 법인세 면제, 그 후 3년간 각각 75%, 50%, 25% 면제	단, 기존 기업과 관련되지 않아야 함

5. 日本

가. 納稅義務者

日本의 경우 법인의 유형에 따라 납세의무가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다.

普通法人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상호회사 등으로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公共法人	지방공공단체, 공사, 공단, 공고 등으로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음
公益法人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공공법인에 속하지 않는 각종의 사업단으로서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과세
協同組合	농업, 어업 등으로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人格이 없는 社團	법인으로 간주되어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과세

나. 課稅標準과 稅率

법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등화된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單位: %)

法 人 形 態		稅 率
普 通 法 人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이며 연간소득 8백만엔 이하	28
	그 외 모든법인	37.5
協 同 組 合		27
公 益 法 人		27
特定醫療法人		27

다. 稅額算定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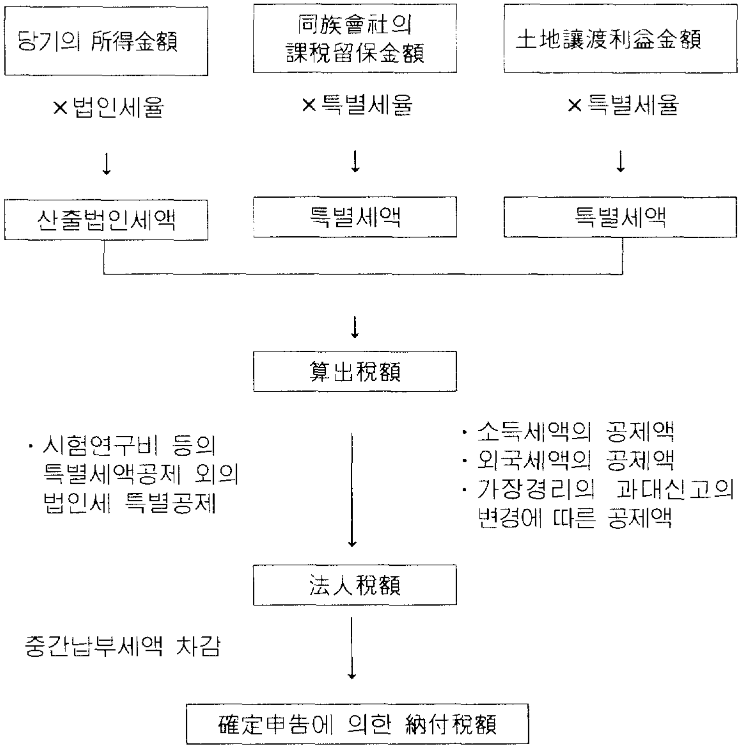

각 事業年度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課稅標準인 당기소득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特別稅率에 의한 세액이 가산된다. 단, 이자·배당 등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액이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서 공제하고, 각종 특별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법인세액이 되며, 확정신고시 中間納付稅額을 공제한 금액이 納付稅額이 된다.

또한, 同族會社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累進稅率 구조이므로, 필

요 이상으로 배당을 억제하여 주주 등의 소득세 부담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영업자와 일반 법인의 주주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소득을 유보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의한 법인세 외에 特別稅率에 의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법인이 지불한 배당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二重課稅를 없애기 위한 所得稅額控除制度가 있다. 과세총소득금액이 1천만엔 미만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의 10% 상당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과세총소득금액이 1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중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의 稅額控除가 인정된다.

라. 非課稅 및 減免

公益法人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된다. 協同組合 등에 대해서는 보통법인과 똑같이 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분량배당 등의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있다.

日本은 광범한 범위에 걸쳐 조세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表와 같다.

	支援對象	支援內容	備考
증가시험연구비 세액공제	시험연구비 증가지출분	20% 세액공제	개인·법인
기반기술개발 연구용자산 세액공제	기반기술개발 연구용 자산	7% 세액공제	개인·법인
특정시험연구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시험연구비 세액공제	특정시험연구회사의 주식을 직접출자하여 취득·보유하는 경우	20% 상당액 세액공제	법인
에너지수급구조개혁 추진설비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수급구조개혁 추진설비 취득액	7% 세액공제 또는 30% 특별상각	개인·법인
전자기기 이용설비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취득액	7% 세액공제 또는 30% 특별상각	개인·법인
사업기반강화설비 투자세액공제	농업가공업, 도소매업, 음식점·서비스업	7% 세액공제 또는 30% 특별상각	개인·법인
수입증가시 세액공제	수입대상촉진제품 수입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직전 2년간 취득한 기계의 10% 특별상각 또는 수입증가액의 5% 세액공제	개인·법인
공해방지시설 특별상각	공해방지설비투자	18% 특별상각	개인·법인
공업용수도 등에의 전환설비 특별상각	우물에서 공업용수도 등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기계설비	15% 일시상각	개인·법인
폐기물재생처리설비 특별상각	폐기물재생처리설비 투자	14% 일시상각	개인·법인
전선류 지중화설비 특별상각	전선류 지중화설비투자	12% 일시상각	개인·법인
선박 특별상각	해운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선박	12% 일시상각	개인·법인
항공기 특별상각	항공운송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항공기	9% 일시상각	법인
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해 정비된 설비의 특별상각	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해 정비된 설비	13% 일시상각	법인
문화학술연구시설 특별상각	문화학술연구시설(건물 및 기계장치)	30%(건물은 15%) 일시 상각	법인

	支援對象	支援內容	備考
특정중핵적 민간시설 특별상각	중점정비지구 또는 업무시설집적지구 내의 중핵적 민간시설	10% 일시상각	법인
산림보전사업용 자산 특별상각	산림보전사업용자산	15% 일시상각(건물 8%)	법인
지진방재대책용 자산 특별상각	지진방재대책용 자산	13% 일시상각	개인·법인
고도기술 공업용설비 특별상각	첨단기술공업용설비	15 ~ 30% 일시상각 (건물 8 ~ 15%)	법인
특정사업집적촉진지역 내 사업용자산 특별상각	특정사업집적촉진지역내 사업용자산	24 ~ 30% 일시상각 (건물 12 ~ 15%)	법인
산업구조전환용설비 특별상각	산업구조전환용설비	15% 일시상각	법인
특정여가이용시설 특별상각	특정여가이용시설	13% 일시상각	개인·법인
특정전기통신설비 특별상각	전파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설비, 전기통신설비	30% 일시상각	개인·법인
점포용건물 소화설비 특별상각	점포용 소화설비	8% 일시상각	개인·법인
상업시설 특별상각	사업협동조합, 중소소매업자 등이 취득하는 점포용건물, 공동 이용시설	8% 일시상각	개인·법인
특정거점지구 내 산업업무시설 특별상각	사무소용 또는 연구소용 건물	12% 일시상각	법인
저개발지역 등의 기계설비 특별상각	저개발지역, 농촌지역 공업개발지구, 반도체 진흥대책 실시지역 등에서 취득하는 기계 및 공장용 건물	15% 일시상각	개인·법인
중소기업기계 특별상각	중소기업	14% 일시상각	개인·법인
의료기기 등의 특별상각	의료업자의 의료기기	15% 특별상각	개인·법인
중소기업 구조개선용 설비 특별상각	중소기업의 공장용건물 및 기계설비	20% 특별상각	개인·법인
중소섬유공업구조개선용 설비 특별상각	섬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 특별상각	개인·법인

	支援對象	支援內容	備考
중소어업구조개선용설비 특별상각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 특별상각	법인
농업용기계 특별상각	경영규모 확대계획에 따라 농업을 영위하는 개인	20% 특별상각(신규농업자는 30%)	개인·법인
장애자고용기업 특별상각	장애자고용비율이 25% 이상인 기업	기계 및 공장용건물의 14% 특별상각	개인·법인
특정대내투자사업용자산 특별상각	대내투자사업용자산	20% 특별상각	개인·법인
신축임대주택 등 특별상각	용도지역 내에 신규취득하는 임대주택	20% 특별상각	법인
재개발건축물 특별상각	특정 재개발 건축물	18% 특별상각	개인·법인
창고용건물 특별상각	창고용건물 및 곡물저장용창고	18% 특별상각	개인·법인
광업용갱도 특별상각	공기통풍갱도 또는 배수갱도	14% 특별상각	개인·법인
식림비의 손금산입특례	법인소유 산림조림을 위한 식림비	25% 손금산입허용	법인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용 공동시설 특별상각	특정준비금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17% 일시상각	법인
광공업기술연구조합 등에 대한 출연금의 전액 손비인정	광공업기술연구조합 등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시험연구용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부담금	전액 손비인정	개인·법인
관광호텔업 사업용자산의 내용연수특례	등록호텔 및 등록여관의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를 82%로 단축	개인·법인
수입제품 국내시장 개척준비금	수입을 10% 이상 증가시킨 도·소매업자	제품수입증가액 20% 준비금 적립시 손비인정	개인·법인
해외투자손실준비금	특정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15~100%를 한도로 준비금 적립시 손비인정	법인
자유무역지역 투자손실준비금	오끼나와 자유무역지역내 인정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15% 한도로 준비금 적립시 손비인정	법인
중소기업구조개선준비금 등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출연금	전액 손비인정	개인·법인
하청중소기업진흥준비금 등	하청중소기업진흥사업출연금	전액 손비인정	개인·법인

	支援對象	支援內容	備 考
전통적 공예품산업 진흥준비금	전통적 공예품산업 진흥사업 출연금, 준비금	전액 손비인정	개인·법인
중소기업 지식융합개발 준비금 등	중소기업 지식융합개발 사업 출연금, 준비금 등	전액 손비인정	개인·법인
금속광업광해방지 준비금	금속광산의 광해방지사업비용 충당 준비금	전액 손비인정	개인·법인
해양유전폐광준비금	해양유전폐광에 대비한 준비금	일정 한도 손비인정	법인
채석재해방지준비금	암석채취종료 후 재해방지비용 준비금	일정 한도 손비인정	개인·법인
폐기물처리 재해방지준비금	폐기물처리 활동 종료 후 재해방지 준비금	일정 한도 손비인정	개인·법인
도시철도정비준비금	도시철도 정비를 위한 준비금	일정 한도 손비인정	법인
가스배관공사 상각준비금	가스배관설비 상각비용 준비금	16% 한도 손비인정	법인
계획조림준비금	삼림소유법인의 조림비용 충당 준비금	1ha당 21만엔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비인정	법인
전자계산기매매 손실준비금	전자계산기 제조업자가 적립한 준비금	특별매매손실 발생추정액을 한도로 손비인정	법인
프로그램 개발 준비금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적립한 준비금	범용프로그램 매출액의 25% 한도로 손비인정	개인·법인
데이타베이스 구축 준비금	데이타베이스 구축 비용 충당을 위한 준비금	데이타베이스 수입금액의 10% 한도 손비인정	개인·법인
정보처리시스템 보수 준비금	정보처리시스템 보수비용 충당 준비금	수입금액의 10% 한도로 손비인정	법인
갈수준비금	전력회사가 갈수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는 준비금	일정 한도 내 손비인정	법인
핵연료재처리준비금	전력회사가 핵원료 재처리에 대비하는 준비금	일정 한도 내 손비인정	법인
원자력발전시설 해체준비금	전기사업자의 원자력시설 해체비용 충당 준비금	일정 한도 내 손비인정	법인
관서국제공항정비 준비금	공항정비비용 충당 준비금	공항용지 취득가액의 10% 한도 손비인정	법인
기술의 해외이전소득공제	공업소유권 양도·대여소득, 과학기술 용역제공소득	수입총액의 8%를 소득금액 40% 한도로 공제	개인·법인
탐광준비금	신광상의 탐방비용 준비금	광물판매수입금액의 13% 한도로 손비인정	법인
신광상탐광비에 대한 소득공제	탐광준비금으로 신광산 탐광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액 또는 감가상각액을 공제	개인·법인

6. 臺灣

가. 納稅義務者

법인세 과세대상은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의 유형은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법인, 협동조합, 교육, 문화, 공공복지와 자선단체로 구분된다.

일반영리법인이 臺灣 국내에서 영위하는 영리사업은 영리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영리사업이란 공영, 민영 또는 공민 공동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명칭 또는 장소를 가진 독립자본, 공동자본, 회사 및 그 외의 조직방법에 의한 工·商·農·林·漁·牧·鑛業 등에 관한 영리사업을 말한다.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은 지점과 본사의 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사무소에서 납세의무를 지며, 국외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내에 사업소득을 갖는 법인은 국내사업소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영업대리인이 영리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源泉徵收 외에 그 영리사업소득세를 영업대리인이 營業登記한 곳의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나. 課稅區間과 稅率

영리사업의 주사무소가 臺灣 국내에 있는 것은 臺灣 국내외의 영리사업소득 전부에 대한 영리사업소득세를 합하여 과세해야 하며 주사무소가 臺灣 국외에 있고 臺灣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이 있는 것은 臺灣 국내의 영리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營利事業所得稅를 과세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지점

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申告納稅義務者의 영리사업소득세의 납세개시액은 5萬元이며, 과세소득액별 累進稅率은 다음과 같다.

(單位: 元, %)

課 稅 區 間	稅 率	累進差額
50,000 이하	면세	-
50,000~100,000	15	-
100,000 초과	25	10,000

다. 稅額算定方式

세액 산출을 위해 우선 영리사업소득을 계산하는데, 營利事業所得이란 당해연도 수입 총액에서 原價·費用·損失 및 세후 순익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를 말한다. 영리사업소득액은 과세소득액이라고도 불리우며, 계산방식은 영리사업의 성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

賣買業, 製造業, 用役 및 信用事業의 영리사업소득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업

순매출액 = 매출액 — (매출환입+매출에누리)
매출원가 = 당기상품재고 + {매입상품 — (매입환출+매입에누리)}
+ 매입비용 — 기말상품재고
매출총이익 = 순매출액 — 매출원가
영 업 이 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용+관리비용)
이 익 = 영업이익 + 비영업이익 — 비영업손실

② 제조업

제조원가 = (기초원료재고+매입원료 — 기말원료재고) + 직접보수 + 제조비용
완제품원가 = 기초제품재고 + 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
매출원가 = 기초제품재고 + 완제품원가 — 기말제품재고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영업순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용+관리비용)
순 익 = 영업손익 + 비영업손익

③ 용역 및 신용사업 등

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원가
영업순익 = 영업이익 — 관리비 및 사무비

위에서 산출된 營利事業所得額을 기초로 신고납세하는 일반영리사업의 세액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 기본공식
신고납부세액 = 영리사업소득액 × 세율 — 누진차액 — 감면액 — 원천징수세액 — 잠정납부세액
○ 1년간의 영리사업소득액이 71,428.57元 이하인 경우
신고납부세액 = (영리사업소득액 — 5만元)×1/2 — 감면액 — 원천징수세액 — 잠정납부세액
○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세액 = (1년간의 영리사업소득액×세율 — 누진차액) $\times \dfrac{\text{실제영업한 월수}}{12}$ — 감면액 — 원천징수세액 — 잠정납부세액

국내에 고정영업장소가 없거나 영업대리인이 없는 경우 영리사업으로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소득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납부세액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된다.

○ 재산거래소득부분 : 재산거래소득×25% ○ 비과세·단체·사업·업무집행자가 지급하는 소득부분 : 소득액×원천징수율 ○ 국제금융기관의 지점이 국내의 개인·법인·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게 대출한 대부금에 대한 비과세 이자소득은 단독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이자수입총액×15%

라. 非課稅 및 減免

1) 外國稅額控除

영리사업의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회사(臺灣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는 臺灣 국내외의 영리사업소득 전부에 대해 영리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臺灣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所得源泉地 國家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納稅義務者가 소득원천지 국가의 세무기관에서 발급하는 동일연도의 證憑을 제출하여 여기에 대해 臺灣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臺灣 정부가 인가한 기타 기관의 인증을 취득하면 그 전부를 영리사업소득에서 계산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때 세액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세액공제한도액 = 〔(국내소득액 + 국외소득액) × 세율 － 누진차액〕
－ (국외소득액 × 세율 － 누진차액)

2) 非課稅所得

다음 소득은 비과세된다.

① 敎育, 文化, 公益, 慈善機關 또는 단체의 행정원이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그 자신 및 부속업무집행기관의 소득.

② 법에 의해 대외영업을 하지 않는 소비조합의 이익

③ 개인 또는 영리사업이 매각한 토지, 개인이 팔려는 가정 일상의류 가구의 매각 또는 영리사업의 정부규정에 의한 전비물자 비축을 위한 재산처리에 관련된 소득

④ 각급 정부기관의 각종 소득

⑤ 각급 정부공영사업의 소득

⑥ 외국 국제선 운송사업의 臺灣 국내에서의 영리사업소득, 단, 당해 외국이 臺灣의 국제운송사업에 대해 같은 정도의 면세특별대우를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⑦ 외국정부 또는 國際經濟開發金融機構의 臺灣 정부 또는 臺灣 국내의 법인에 대한 대부금 및 외국금융기구의 臺灣 국내의 당해 지점 및 그 외의 臺灣에 있는 금융사업에 대한 융자의 이자, 외국금융기구의 臺灣 국내 법인에 대한 주요경제건설계획을 위한 대부금으로 재정부의 인가를 얻은 것의 이자, 수출의 융자제공 또는 보증을 전업으로 하는 외국정부 및 외국금융기구가 臺灣 국내의 법인에게 제공 또는 보증하는 특혜이율수출대금에 관련된 이자

⑧ 영리사업이 신생산기술 또는 제품의 도입, 제품의 품질향상, 생산원가의 경감 때문에 정부의 인가를 얻어 외국영리사업이 소유하는 특허권, 상표권 및 각종 특허권리를 사용할 때 해당 외국영리사업에 지불하는 권리금, 또 정부주관청의 인정을 받은 주요 생산사업이 공장건설 때문에 외국영리사업에 지불하는 기술 서비스의 보수

⑨ 贈與에 의해 취득한 재산. 단, 영리사업이 증여하는 재산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租稅支援制度

支 援 目 的	支 援 內 容
설비투자촉진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특별상각(내용연수를 2년으로 단축) - 산업구조조정, 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한 기계장치 100% 특별상각 - 산업고도화 촉진을 위한 투자금액의 5~20% 세액공제
지역간 균형발전지원	- 저개발지역 또는 자원부족지역에 투자한 금액의 20% 세액공제
고도기술산업 지원	- 고도기술산업이나 모험자본산업에 대한 출자금액의 20% 세액공제
해외투자촉진	-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의 20% 손비인정
외자도입지원	- 외국인의 국내투자소득에 대한 20%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기업의 경영합리화지원	- 기업의 합병 또는 통합시 양도세 면제 등 각종 조세지원

Ⅲ. 相續 · 贈與稅

1. 美 國

美國에서는 1916년과 1924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처음으로 과세되기 시작했으며, 양자는 별개의 세목으로 독립적으로 부과되었다.

美國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移轉稅(transfer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연방에서는 유산세(Estate tax), 各 州에서는 상속세(Inheritance tax),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사망세(Death tax)라고 부르고 있다. 연방상속세는 증여세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이 평생 동안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준 데 대한 세금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재산상속은 사망자의 마지막 증여(final gift)로 취급되는 것이다.

가. 納稅義務者

상속 또는 증여와 관련한 재산이전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이전세는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자 즉, 증여자나 피상속인(상속재단)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納稅義務者는 遺產執行人 또는 遺產管理人이 되며, 상속세체계가 유산과세형에 속하지만 수증인 또는 상속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한국의 경우와 다르다.

상속 · 증여세와 관련을 가지는 美國 재산 소유권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자.

美國의 50개 州는 동산, 부동산의 소유 및 이전에 관하여 각각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법에 대한 일률적인 검토는 곤란하다. 그러나 크게 볼 때 普通法體系(common law systems)와 夫婦共同財産法體系(community property systems)로 구분할 수 있다.

普通法體系는 英國法上의 재산소유권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의 개인적 소유권에 초점을 두는 제도이며 41개 州가 이를 따르고 있다. 夫婦共同財産體系는 스페인계 재산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혼인기간중 취득한 재산의 부부공동소유제를 근간으로 하며 9개 州가 이를 따르고 있다. 이들 양 체계하에서는 개인이 타인과 함께 재산을 공동소유하거나 재산에 관한 부분적 이익(partial interest)을 갖는 것이 인정된다.

나. 課稅區間과 稅率

統合移轉稅率의 과세구간 및 그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美國의 統合移轉稅率

(單位 : 달러, %)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10,000 이하	18	500,000 초과 ~ 750,000 이하	37
10,000 초과 ~ 20,000 이하	20	750,000 초과 ~ 1,000,000 이하	39
20,000 초과 ~ 40,000 이하	22	1,000,000 초과 ~ 1,250,000 이하	41
40,000 초과 ~ 60,000 이하	24	1,250,000 초과 ~ 1,500,000 이하	43
60,000 초과 ~ 80,000 이하	26	1,500,000 초과 ~ 2,000,000 이하	45
80,000 초과 ~ 100,000 이하	28	2,000,000 초과 ~ 2,500,000 이하	49
100,000 초과 ~ 150,000 이하	30	2,500,000 초과 ~ 3,000,000 이하	53
150,000 초과 ~ 250,000 이하	32	3,000,000 초과	55
250,000 초과 ~ 500,000 이하	34		

美國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統合稅率表(unified rate schedule)上의 統合移轉稅率(unified transfer tax rate)은 최저 18%에서 최고 55%까지 17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개인은 일생 동안 타인에 대한 재산이전에 대하여 그 가액을 누적해 가면서 누진구조의 統合移轉稅率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한 재산이전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한 최후의 증여(final gift)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액을 납부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재산이전에 따른 세금납부를 마치게 된다.

다. 稅額算定方式

1) 상속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 유형재산 또는 무형재산 등 소재지를 불문하고 사망시의 그의 전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기초한 財務省規則은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도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內國稅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시 소유한 모든 재산(제2033條)
② 잔존배우자의 부부관계에 기인한 권리(제2034條)
③ 사망전 3년 이내에 행한 증여재산(제2035條)
④ 생존중의 권리를 유보하고 이전한 재산(제2036條)
⑤ 사망시 이전키로 한 재산(제2037條)
⑥ 취소 가능한 이전(제2038條)
⑦ 연금(제2039條)
⑧ 공동소유권(jointly owned property; 제2040條)

⑨ 지명권이 있는 재산(제2041조)

⑩ 생명보험금(제2042조)

⑪ 對價가 불충분한 이전(제2043조)

⑫ 과거에 배우자공제가 인정된 재산의 일부(제2044조)

⑬ 과거의 권리(제2045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時價(공정시장가격 : fair market value)로 하든가, 아니면 사망 후 6개월이 된 때의 時價로 평가해서 과세대상으로 한다. 농토 또는 가족회사에 사용되는 재산은 특별한 평가방법인 특별용도평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방상속세의 稅額算定方式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ㅇ 총상속재산가액
- 각종 공제
= 조정총유산(Adjusted Gross Estate)
- 배우자공제
- 기부금공제
= 과세대상 재산가액(Taxable Estate)
\+ 1977년 1월 1일 이후 과세대상 증여가액
= 총이전재산가액
× 통합이전세율(Unified Transfer Tax Rate)
= 잠정 상속세액
- 1977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증여세
- 통합이전세액공제(미사용액)
- 기타 세액공제
= 상속세 납부세액

총상속재산가액(총유산)이란 사망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공정시장가격 혹은 사망 후 6개월이 지나서 재평가한 총재산가치를 말한다. 단 가족 소유의 회사(business)와 가족 소유의 농장은 예외적으로 실제 사용가치(Actual Use)로 평가한다.

각종 공제에는 장례비, 유산관리비, 부채, 각종세금(연방·州·지방소득세) 및 상속재산관리기간중 발생한 손실액(우발손실) 등이 포함된다.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가액공제제도는 아래와 같다.

가) 配偶者控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공제가 인정된다. 美國 국적자이면 기본적으로 전액면제되지만, 받는 이가 美國 국적자가 아니면 적격국내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한 상속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공제는 조정총유산(순적격유산 ; adjusted gross estate)[2]의 크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곧 연방 및 州정부의 사망세(death taxes),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장례비 및 유산관리비 등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한정된다. 법개정 전까지는 25만달러와 조정유산총액의 50% 중 큰 쪽이 상한으로 허용되었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배우자공제가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 1981년 9월 12일 이전에 행해진 유언이나 신탁에 배우자공제 상한조항이 들어 있고, 이 조항이 상기일 이후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수정되어 무제한적인 배우자공제를 허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州가 유산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배우자공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정총유산이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장례비, 유산관리비, 부채, 각종 세금 및 상속재산관리 기간중 발생한 손실액 등)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나) 寄附金控除(慈善控除 ; Charitable Deduction)

일정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사용에 제공하도록 이전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그 가액이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자선공제가 인정된다. 즉 자선단체·비영리기관에 증여한 재산은 생존시에는 소득세에서 세금 공제되고, 사후에는 기증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시에 공제된다. 문화재단이나 교육기관 등에 유산을 기증함으로써 상속세를 내지 않고 유산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다.

다) 피상속인인 고용주가 자기소유주식을 從業員持主組合(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 또는 eligible worker-owned cooperative: EWOC) 등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가 인정된다(ESOP공제는 과세대상 상속재산가액의 50%, 또는 동 공제로 인한 상속세액감소분 중 75만달러를 한도로 함).

라)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관리비용 공제

유언집행인(excutor)이나 유산관리인(administrator)이 실제로 사용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관리비용(administration expenses : 재산의 수집, 채무의 변제,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공제가 허용된다.

마)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지를 관할하는 州의 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지급이 허용된 채무는 공제대상이 된다. 단,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개인적 채무에 한정한다.

바) 偶發損失 등

상속재산의 관리기간중에 발생한 우발손실 또는 도난손실은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범위에 한해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다.

가) 통합이전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

동 공제는 1977년에 종전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통합한 통합이전세를 시행하면서 종전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각각 인정되던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단일한 세액공제로 묶은 것이다.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통합이전세액공제 한도는 19만 2,800달러이다. 과세가액 60만달러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개인은 자신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평생동안 이 한도액의 미사용잔액을 이월해가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나) 단기재상속세액공제(credit for tax on prior transfer)

가족 중 두 사람이 계속해서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동일한 재산이 두 사람 모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단기간 내에 중복하여 상속세과세를 받을 경우가 생긴다. 이에 따른 과도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한도액은 당초 상속개시일과 재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의 장단에 따라 공제비율이 감소된다(0~2년 : 100%, 3~4년 : 80%, 5~6년 : 60%, 7~8년 : 40%, 9~10년 : 20%).

다) 증여세세액공제

피상속인이 통합이전세제도가 시행된 1977년 이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납부세액 계산시 자동적으로 공제되

나, 1977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그 재산이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납부한 증여세액 또는 그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라) 외국사망세액공제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재산에 대하여 양국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타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 또는 동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美國 연방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2) 증여세(Gift Tax)

증여세는 개인이 평생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누적액에 대하여 매 역년을 과세기간으로 증여가액을 누진세율로 증여자에게 부과한다. 즉 매 역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개인별로 매년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증여세의 稅額算定方式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연간증여총액은 공정시장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며 연간증여공제(Annual Exclusion)는 증여자 1인당 1만달러이다. 각종 공제(증여공제액)에는 의료비나 교육비를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대납했을 때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통합이전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는 19만 2,800달러이며 60만달러의 증여가액에 해당한다. 이것은 증여세없이 평생동안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60만달러라는 것을 의미한다.

ㅇ 연간증여총액
　— 연간증여공제
　— 각종공제(증여공제액)
　= 과세대상 당해연도 증여가액(연간 과세증여액)
　+ 당해연도까지 이전재산 누계액
　= 증여세의 과세표준(평생 과세증여가액; Lifetime Taxable Gifts)
　× 세율(Unified Transfer Tax Rate)
　= 잠정적 증여세액(Tentative Tax)
　— 이전연도 증여에 대하여 당해연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통합이전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
　=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

증여세는 1년중 증여한 재산을 전부 합산한 총액에서 법이 인정하는 항목을 차감하여야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를 산출할 수 있다. 내국세법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연간증여공제(비과세금액 : Annual Exclusion) : 1년에 한 사람에게 1만달러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부부는 한 자녀당 2만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매년 증여할 수 있다.

② 기부금공제(Charitable Deduction) : 연방정부, 州정부, 市정부, 종교자선교육단체, 향군단체 등에 제공하는 자선적 증여는 공제한다.

③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 : 배우자에게 주는 증여공제(단, 수증자가 비시민권자인 경우 1988년 7월 13일 이후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만 10만달러 한도로 공제가능)

④ 교육기관에 내는 입학등록금

⑤ 의료비

라. 納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 英 國

英國에서는 현행 상속세의 모태가 되는 유산세(Estate Tax)가 1894년에 도입되어 1974년까지 시행되었다. 유산세는 자산의 생전이전(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망전 7년내[3]에 행한 생전이전만을 사망유산에 합산해서 과세하였다. 배우자간 자산의 생전이전에 대해서 1961년에는 Finance Act에 의해 비과세하였다. 자산 과세에 대한 조세가 최고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입 당시의 최저 1%, 최고 8%(15단계의 과세계급)였던 세율구조가 점차 상향조정되어 최고세율이 1949년에는 80%에까지 이르렀다.

1975년에 유산세를 폐지하고 資産移轉稅(Capital Transfer Tax)를 시행하였다. 자산이전세에서는 증여자가 평생[4] 동안 행한 모든 증여액을 누적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자산이전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사망유산에 대하여는 생전이전과세시에 도달한 초과누진세율상의 한계세율점에서 그 세율 적용이 시작되도록 하였다.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완전 면세하였다.

1986년 3월에 이제까지 시행되던 자산이전세가 폐지되고, 동

---

3) 1894년에는 1년으로 시작했으나 1910년에는 3년으로, 1946년에는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증여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산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4) 1981년부터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년 4월부터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유산과세형에 속한다.

가. 納稅義務者

英國 상속세의 부과는 개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納稅義務者는 被相續人(유산집행인)이 되지만 생전증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여를 취득한 자, 즉 受贈人이 納稅義務者가 된다.

나. 課稅區間과 稅率

상속세의 세율체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의 40%로 고정되어 있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속과 증여를 연계하여 증여자의 생존연수에 따라 상이한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생전에 자산을 위탁한 경우 사망시의 자산이전에 대한 세율의 2분의 1(20%)을 과세하고 만약, 자산위탁 후 7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율(40%)로 산정하여 과세하며 7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세하는 이른바, 暫定的 免稅移轉(potentially exempt transfers : PETs)制度를 1989년 3월 13일 이후 시행하고 있다. 즉, 증여세 세율은 20%이다.

다. 稅額算定方式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재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에는 英國 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상속세는 마치 사망자가 사망 직전에 그의 전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의제해서 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이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것

② 피상속인이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모든 특별신탁재산 (예: 종신재산권)

③ 피상속인이 무제한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non-settled property

④ 증여자가 받은 조건부 증여재산으로서 그 조건이 증여자의 사망당시에도 잔존해 있는 경우

상속세의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o 〔(유산총액 + 7년 이내 증여분) — (채무 · 장례비 + 제반공제 + 비과세 · 감면)〕× 세율 = 상속세액

상속세의 각종 공제제도는 아래와 같다.

기초공제	상속재산 누적시가총액의 첫번째 15만 4천파운드까지는 전액공제된다(1995년 4월 이후).
배우자 공 제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은 그것이 상속이든 증여이든 그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특별신탁 여부에 관계없이 완전면세하고 있다. 이를 배우자 면세(spouse exemption)라고 한다. 단, 증여나 유증의 경우 일방의 배우자(증여자나 유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타방의 배우자(수증자 또는 수유자)가 해외에 주소를 두었거나 영국인이 아닐 경우 면세액은 5만 5천파운드가 상한이다. 한편 증여나 유증이 직접적으로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이전이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조건에 따라 행해질 때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
채 무, 장례비	채무, 실제 사용한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관리비용은 전액공제가 허용된다.

라. 非課稅 및 減免

위의 공제제도 이외에 기타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자선단체, 국가기관, 피용자 기금 및 등록주택협회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은 전액 비과세된다.

② 적격정치단체[5]에 대한 기부금은 비과세되며, 사망 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가 대상이고 1988년 3월 15일 이전의 증여는 10만파운드가 상한이다.

③ 전사 또는 공무로 인한 상속

④ 증여자의 소득에서 지불한 정상비용 형식의 생전증여

⑤ 1과세연도에 3천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생전증여

⑥ 자녀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불되는 생전증여

⑦ 결혼과 관련된 생전증여

⑧ 국가적 유산이나 공공물의 보존과 관련되는 단체에 대한 증여 및 상속

3. 獨 逸

상속 및 증여과세제도의 연원은 1906년의 獨逸 제국상속세법에서 찾을 수 있다. 1959년에 새로운 상속세법이 제정되었으며 1974년에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

---

5) 적격정치단체는 증여행위 발생 전 마지막 총선에서 2인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거나 1인의 국회의원과 15만표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을 말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통합형으로 단순누진세율구조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獨逸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는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4분의 1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들이 평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합의가 없으면 부부재산은 증가재산공동제에 의하며, 이는 법정재산제이다. 혼인기간중에 취득한 증가재산은 증가재산공동제가 종료하는 때에 청산된다.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증가재산공동제가 종료하는 때에는 법정상속의 경우 생존배우자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며,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재산의 4분의 1만큼 증가해서 상속분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이 된다. 증가재산공동제에서 발생하는 청산채권은 부부재산공동제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때 청산채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고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청산채권액은 증가재산공동제의 종료시에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재산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가. 納稅義務者

獨逸의 상속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에 따라 생긴 부의 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형을 취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속세와 기본적으로 다르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의 納稅義務者는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진다. 생존증여시에는 수증인이 납세의무를 지지만 증여자도 연대적 납세의무를 가진다.

獨逸 상속세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재산취득자(즉, 納稅義務者)를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와의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4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이다. 제1류 내지 제3류는 친족관

계를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로부터 분류하고 제4류는 친족관계가 없는 자를 분류하고 있다.

○ 제 1 류 :	배우자, 자녀 및 의붓자녀
○ 제 2 류 :	손자, 증손자, 부모, 조부모
○ 제 3 류 :	제2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모 및 기타 직계비속, 형제자매, 계부모, 형제자매의 1촌의 직계비속,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
○ 제 4 류 :	기타의 모든 취득자 및 목적 출연을 받은 자

이상의 분류에 속하는 친족관계는 입양에 의해 생길 수도 있다. 단,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가 민법상 소멸된 때는 종전 관계에 따라 분류한다.

나. 課稅區間과 稅率

獨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相續·贈與稅率의 共通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의 경우 잔존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생존배려를 위해 특별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상속인의 세부담이 수증인의 세부담보다 가벼울 뿐이다.

2) 納稅義務者別 差等稅率

위에서 언급한 納稅義務者別 분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법적 친소관계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고 있다.

3) 單純累進稅率

상속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단순누진세율이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각 세율별 과세의 한계금액을 초과할 때마다 세액이 비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별도의 방법에 의해 조정한다.

相續稅(贈與稅)의 課稅區間 및 稅率은 다음과 같다.

(단위 : 1만마르크, %)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 세율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5 이하	3	6	11	20
7.5 이하	3.5	7	12.5	22
10 이하	4	8	14	24
12.5 이하	4.5	9	15.5	26
15 이하	5	10	17	28
20 이하	5.5	11	18.5	30
25 이하	6	12	20	32
30 이하	6.5	13	21.5	34
40 이하	7	14	23	36
50 이하	7.5	15	24.5	38
60 이하	8	16	26	40
70 이하	8.5	17	27.5	42
80 이하	9	18	29	44
90 이하	9.5	19	30.5	46
100 이하	10	20	32	48
200 이하	11	22	34	50
300 이하	12	24	36	52
400 이하	13	26	38	54
600 이하	14	28	40	56
800 이하	16	30	43	58
1,000 이하	18	33	46	60
2,500 이하	21	36	50	62
5,000 이하	25	40	55	64
10,000 이하	30	45	60	67
10,000 초과	35	50	65	70

다. 稅額算定方式

ㅇ 〔(유산총액 + 10년이내 수증분) − (채무 · 장례비 + 비과세재산 + 공제액)〕 × 세율 = 상속세액

獨逸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누적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상속세의 세액계산 과정에서 과거 10년 동안 동일인의 상속·증여액을 전액과세대상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과거 10년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하여 상속세의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이것은 생전증여에 의한 상속세부담의 회피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세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례비용, 묘지관리비용, 유산관리비용 등의 상당한 비용과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등은 취득재산에서 공제한다.

한편 상속인·수증자별 신분에 따라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모든 상속인, 수증자에게 허용하는 일반공제와 배우자와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특별배려공제로 나눌 수 있다. 인적공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공제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납세의무자별로 공제액에 차별을 두고 있음. · 배우자 : 25만마르크 · 제1류의 기타 납세의무자 : 9만마르크 · 제2류 납세의무자 : 5만마르크 · 제3류 납세의무자 : 1만마르크 · 제4류 납세의무자 : 3천마르크
배 우 자 특별공제	생존하는 배우자에게는 일반공제 외에 추가로 25만마르크의 특별공제를 인정함.
자 녀 특별공제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한 특별배려로서 연령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금액을 달리하여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최저 : 20세 초과~27세 이하의 자녀 1만마르크 · 최고 : 5세 이하의 자녀 5만마르크

라. 非課稅 및 減免

獨逸 상속세법은 매우 광범위하게 비과세대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非課稅 및 減免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소액가사재산 : 의류, 골동품 및 수집품을 포함하는 家財에 대하여 제1, 2류 納稅義務者가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각각 4만마르크, 1만마르크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하고 상속·증여재산이 동산인 경우에도 각각 5천마르크, 2천마르크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② 공익용재산 : 100분의 60을 비과세하고 納稅義務者가 당해 재산을 기념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거나 당해재산을 가족이 2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및 문화재반출제한법에 의해 국보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비과세

③ 사후 동거자의 단기부양청구권 비과세

④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비과세

⑤ 직계존속의 생계를 위해 귀속되는 재산으로 타재산과 합하여 4만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

⑥ 간호인의 배려 : 취득재산 중 2천마르크 범위 내에서 비과세

⑦ 의례적 기념선물에 대한 비과세

⑧ 공익적 출연 : 일정한 공익단체에 출연하는 것은 금액의 제한없이 비과세

⑨ 정당에 대한 기부 : 정당에 기부한 재산은 금액의 제한없이 비과세

4. 프랑스

가. 納稅義務者

프랑스의 상속세제는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의 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의 納稅義務者는 상속인이 되며, 생존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인이 납세의무를 가진다. 프랑스의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친밀도에 따라 納稅義務者를 분류하고 세율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獨逸의 상속세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나. 課稅區間과 稅率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친밀도(신분관계)에 따라 상속재산의 취득을 배우자간 상속, 직계상속,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 4촌이내 상속, 기타상속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의 상속형태에 따라 서로 상이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單位: 프랑, %)

배우자간 상속		직계상속		형제・자매상속	
금 액	세 율	금 액	세 율	금 액	세 율
5만 이하	5	5만 이하	5	15만 이하	35
5만 초과	10	5만 초과	10	15만 초과	45
10만 초과	15	7만5천 초과	15	4촌까지	55
20만 초과	20	10만 초과	20	기타	60
340만 초과	30	340만 초과	30		
560만 초과	35	560만 초과	35		
1,120만 초과	40	1,120만 초과	40		

다. 稅額算定方式

o 〔(유산총액 + 일생동안의 증여총액) — (채무 · 장례비 + 비과세재산 + 공제액)〕 × 세율 = 상속세액

각종 공제제도는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과 納稅義務者의 친밀도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① 배우자공제 : 33만프랑

② 직계 자녀공제 : 30만프랑(자녀가 없을 때는 손자녀들이 공제받음)

③ 형제자매 공제 : 10만프랑

④ 장애자 공제 : 30만프랑

⑤ 기초공제 : 1만프랑

⑥ 세액공제 : 배우자와 직계자녀는 각 4천프랑까지, 기타는 각 2천프랑까지 허용

라. 非課稅 및 減免

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기타 非課稅 및 減免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테러희생자의 유산 비과세

② 생명보험금 지급, 유물, 산림 등에 대한 부분 또는 완전 비과세

③ 연금의 경우 생존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전시 전액 비과세

5. 日本

유산과세형 상속세체계를 유지해 오던 日本의 상속세제는 1950년 슈프(Shoup)사절단의 권고에 따라 승계과세형(accession tax type)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사회관행과의 충돌 및 세무행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1953년에 이를 폐지하고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였다. 취득과세형 상속세제의 시행과정에서도 몇 가지의 폐단이 노출되자 稅制調査會의 권고에 따라 1958년의 세제개정에서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6]이라는 절충형을 취하였고, 이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 納稅義務者

日本의 상속세는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개인을 納稅義務者로 하여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無制限納稅義務者는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개인으로서 법시행지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재산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制限納稅義務者는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개인으로서 법시행지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전체 재산 중 법시행지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日本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처 또는 남편)와 동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6)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이란 과세되는 유산총액, 법정상속인의 수, 법정상속분이라는 객관적 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는 경우,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배우자는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그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나머지 2분의 1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들이 평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분의 지정은 遺留分을 어길 수 없으며,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일 때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일 때에는 피상속인 유산의 2분의 1이다.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창설된 증여세의 納稅義務者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개인이 되며 無制限納稅義務者 및 制限納稅義務者에 대한 사항은 상속세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課稅區間 및 稅率

상속세와 증여세의 課稅區間 및 稅率은 각각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 : 9단계의 초과누진세율구조이며 최저 10%에서 최고 70%까지

② 증여세 : 13단계의 초과누진세율구조이며 최저 10%에서 최고 70%까지

日本의 相續稅率

(單位 : 엔, %)

법정상속분 취득금액	세 율	속산공제액
800만 이하	10	-
800만 초과 ~ 1,600만 이하	15	40만
1,600만 초과 ~ 3,000만 이하	20	120만
3,000만 초과 ~ 5,000만 이하	25	270만
5,000만 초과 ~ 1억 이하	30	520만
1억 초과 ~ 2억 이하	40	1,520만
2억 초과 ~ 4억 이하	50	3,520만
4억 초과 ~ 20억 이하	60	7,520만
20억 초과	70	2억 7,520만

日本의 贈與稅率

(單位 : 엔,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후의 과세가액	세 율	속산공제액
150만 이하	10	-
150만 초과	15	75만
200만 초과	20	175만
250만 초과	25	300만
350만 초과	30	475만
450만 초과	35	700만
600만 초과	40	1,000만
800만 초과	45	1,400만
1,000만 초과	50	1,900만
1,500만 초과	55	2,650만
2,500만 초과	60	3,900만
4,000만 초과	65	5,900만
1억 초과	70	1억 900만

다. 稅額算定方式

○ 〔(유산총액 + 3년 이내의 수증분)
　— (채무・장례비 + 비과세재산 + 공제액)〕×세율
　= 상속세액

증여세는 통상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과세가액 — 배우자공제 — 기초공제) × 증여세율 = 증여세액

증여시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히 그 이전에 지불한 증여세는 조정되지 않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세액공제된다. 그러나 생전이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생전이전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

고 있다.

또한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1親等의 혈족 및 배우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세액의 20%를 가산한다. 상속재산의 취득자가 1親等의 혈족 및 배우자 이외인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재산취득의 우연성, 과세기회의 회피·감소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관련된 주요 공제제도는 아래와 같다.

① 기초공제 : 5,000만엔 + (1,000만엔×법정상속인수)

② 채무공제 :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이 개시된 때의 남은 금액.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전액공제

③ 증여세액공제 :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그 상속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납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증여세 세액을 공제.

④ 배우자세액경감 :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상속세 총액에 다음의 ㉠ 또는 ㉡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계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배우자세액 경감액으로 한한다. 세액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혼인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이 없으며 또한 배우자가 代償分割에 의해 다른 상속인에 대해 부담하는 代償財産을 급부하는 채무는 다음 ㉡의 배우자 취득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다음 ㉡의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내에 분할(일부분할도 포함한다) 등에 의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초로 계산한다.

㉠ 과세가액 합계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서 얻은 금액. 이 금액이 1억 6천만엔에 미달할 경우에는 1억 6천만엔. 즉 법정상속분과 1억 6천만엔 중 큰 금액을 말한다.

㉡ 배우자의 과세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상기 내용을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상속세 총액} \times \frac{\left.\begin{array}{l}\text{법정상속분과 1억 6천만엔 중 큰 금액}\\ \text{배우자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end{array}\right] \text{중 작은 금액}}{\text{각 상속인의 과세가액의 합계액}}$$

$$= \text{배우자세액 경감액}$$

⑤ 미성년자세액공제 : 상속인 중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6만엔×만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장애자세액공제 :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無制限納稅義務者로서 법정상속인이고 장애자인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에서 1년에 6만엔의 금액을 70세가 달할 때까지 공제할 수 있다.

⑦ 외국세액공제 :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법시행지 외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소재국가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서 그 부과된 상속세 상당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1950년 슈프(Shoup)의 권고에 따른 세법개정에서 배우자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액공제법을 채택했는데, 그 공제액은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가액의 1/2상당액으로 하였다. 1958년의 개정에서 가액공제법을

세액공제법으로 전환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1/2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 1966~1974년의 기간중에는 결혼연수를 고려해서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하였다. 1968년의 개정에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세액의 전액공제로 바뀌었다. 배우자 세액경감제도(공제제도)를 도입한 것은 배우자가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것이 많다는 점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고려한 것이다.

라. 非課稅 및 減免

상속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다.

① 황실경제법에 규정한 황위와 더불어 전해지는 유서있는 물건

② 묘소, 제구, 분묘 등의 소유권 등

③ 공익사업용 재산

④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한 심신장애공제제도에 의하여 급부금을 받을 권리

⑤ 상속인이 취득한 생명보험금 등의 합계액 중 일정한 금액

⑥ 상속인 등이 취득한 퇴직수당금 중 일정한 금액

⑦ 상속세의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국가 등에 증여한 상속재산

6. 臺 灣

가. 納稅義務者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자연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다. 즉, 중화민국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자가 국내외에 소유하는 재산을 사망으로 인해 이전할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의 納稅義務者는 명목상 피상속인이 되며 실제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유언집행자가 없을 경우 상속인 및 유증자가 納稅義務者가 된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증여행위이며 중화민국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者가 국내외에 소유하는 재산을 증여로 인해 이전할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증여세의 納稅義務者는 증여자이며 증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나 본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국내에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納稅義務者가 된다.

나. 課稅區間과 稅率

상속세 세율 및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元, %)

상 속 세		증 여 세	
과 세 구 간	세율	과 세 구 간	세율
300,000 以下	2	300,000 以下	4
300,000 ~ 600,000	3	300,000 ~ 570,000	5
600,000 ~ 1,140,000	5	570,000 ~ 1,140,000	6
1,140,000 ~ 1,620,000	7	1,140,000 ~ 1,620,000	8
1,620,000 ~ 2,160,000	9	1,620,000 ~ 2,160,000	11
2,160,000 ~ 2,700,000	11	2,160,000 ~ 2,700,000	14
2,700,000 ~ 3,510,000	14	2,700,000 ~ 3,315,000	17
3,510,000 ~ 4,080,000	17	3,315,000 ~ 4,080,000	20
4,080,000 ~ 5,100,000	20	4,080,000 ~ 5,100,000	23
5,100,000 ~ 7,650,000	23	5,100,000 ~ 7,200,000	26
7,650,000 ~ 10,200,000	26	7,200,000 ~ 9,600,000	30
10,200,000 ~ 14,400,000	30	9,600,000 ~ 14,400,000	35
14,400,000 ~ 24,000,000	34	14,400,000 ~ 28,800,000	40
24,000,000 ~ 33,600,000	38	28,800,000 ~ 45,000,000	45
33,600,000 ~ 48,000,000	42	45,000,000 ~ 90,000,000	50
48,000,000 ~ 90,000,000	46	90,000,000 ~150,000,000	55
90,000,000 ~160,000,000	52	150,000,000 以上	60
160,000,000 以上	60		

다. 稅額算定方式

상속세의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ㅇ 〔(유산총액 + 3년 이내의 증여분)
- (채무 · 장례비 + 비과세재산 + 면세액 + 공제액)〕× 세율
- (의제유산으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 및 그 이자 + 국외 세액공제)
= 상속세액

증여세의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 〔매년증여총액 — (매년 면세액 + 해당연도 매회 증여공제액의 합계)〕 × 세율 —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 해당연도 국외세액 공제액) = 증여세액

공제제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공제 : 유산총액에서 200萬元을 차감한다.

- ○ 직계 존·비속 공제 : 1인당 유산총액에서 25萬元을 차감한다.
- ○ 미성년자 공제 :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인 상속인의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 20세가 될 때까지 매년 25萬元이 차감된다.
- ○ 형제·자매 및 조부모 공제 : 피상속인이 부양하는 민법 제1138조의 제3, 제4순위의 상속인(형제자매 및 조부모)이 있는 경우, 1인당 유산총액에서 25萬元을 차감한다.
- ○ 농업용지의 토지가액공제 : 유산 중 농업용지를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상속받아서 계속 영농을 하는 경우, 그 토지가액의 50%를 차감함. 단 자경할 수 있는 상속인 1인이 상속받아서 계속 영농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액의 전액을 차감한다.
- ○ 단기재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9년 전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年單位로 체감적으로 공제(80%, 60%, 40% 및 20%)한다.
- ○ 채무 및 필요경비 공제 :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40萬元까지 인정되며 유언집행 및 유산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필요경비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라. 非課稅 및 減免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면세액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면세 : 피상속인이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 유산총

액에서 200萬元까지 면세된다.

② 군인, 경찰, 공무원, 교원 등이 임무수행으로 인해서 사망할 때에는 400萬元까지 면세된다.

③ 증여세의 경우 매년 증여총액에서 45萬元이 면세되며 이때 국민과 비국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음 각 항의 재산은 상속세의 유산총액 계산시에 산입되지 않는다.

① 유증인, 수유자 또는 상속인이 각급 정부 및 공립 교육, 문화, 공익 및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재산

② 유증인, 수유자 또는 상속인이 공유사업기구 또는 전 주식이 공공 소유인 공영사업에 기부하는 재산

③ 유증인, 수유자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시에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교육, 문화, 공익, 자선 및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재산

④ 유산 중 문화·역사 및 미술과 유관한 도서물품으로서 상속인이 주관 세무기관에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피상속인이 자기가 창작한 저작권, 발명특허권 및 예술품

⑥ 상속인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구 및 용구로 그 총 가액이 45萬元 이하인 것.

⑦ 피상속인의 직업상의 공구로 그 총 가액이 25萬元 이하인 것

⑧ 법에 의해서 벌채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삼림

⑨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지정 수익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생명보험금액, 공무원 및 교사 또는 勞工(노동자)의 보험금액 및 상조금

⑩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내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다음 각 항의 재산은 증여총액의 계산시에 산입되지 않는다.

① 각급 정부 및 공립 교육, 문화, 공익 및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재산

② 공유사업기구 또는 전 주식이 공공 소유인 공영사업에 기부하는 재산

③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인 교육, 문화, 공익, 자선 및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재산

④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인을 위해서 지불하는 생활비, 교육비 및 의료비 가정농장의 농업용지를 자경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민법 제1138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 1인이 수증받아서 계속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Ⅳ. 財 産 稅

1. 美國

美國의 재산과세는 보유단계에서 지방재산세가 부과되며, 양도시의 자본이득은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로 과세된다.

가. 地方財產稅(Local Property Tax)

美國 내 지방재산세의 과세는 市(City, Municipality, Township)와 郡(County, Borough) 단위의 基礎自治團體가 과세주체로서 세율결정 및 세입사용권을 갖고 있으며, 州政府는 과세기준·절차에 관한 지침의 설정 및 과세평가에 관한 사후감독·교육, 그리고 지방정부과표 평가간의 均等化作業(equalization process)을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어떤 州의 경우 州政府가 직접 과표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納稅義務者는 부동산 소유자와 과세대상재산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대부분의 州가 토지와 건물의 正常市場價値(Fair Market Value)를 이용한다. 단, 캘리포니아 등 일부 州는 去來價額(Full Market Valuation at reassessment on sales)을 이용한다.

세율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8만 3천여 지방정부(county, municipal, township, special taxing districts)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35개 州는 모든 재산에 同一率로 과세하며, 16개 州와 워싱턴 D.C.는 재산유형별로 차등과세하고 있다. 세율상한을 갖고 있는 州는 29개 州이며, 세율인상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州도 있다. 따라

서 美國의 재산세율은 지방정부별로 모두 차등화되어 있다. 세액계산은 과표에 비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各 州 내에 속한 시·군의 ① 지방재산세 과표액 ② 세액 ③ 평균세율 그리고 ④ 부동산 이외에 동산까지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單位 : 백만달러, %)

	총과표액[1]	세 액	평균세율[2]	동 산[3]
앨라배마	19,725	698	0.35	
알래스카	34,284	691	2.01	
애리조나	22,193	2,474	11.1	
아칸소	15,200	580	3.81	
캘리포니아	1,702,879	19,424	1.14	
콜로라도	28,285	2,329	8.23	
코네티컷	140,173	3,744	2.67	
델라웨어	17,010	212	1.24	×
콜롬비아	54,441	882	1.62	
플로리다	555,197	9,123	1.64	
조지아	118,353	3,354	2.83	
하와이	113,342	489	0.43	×
아이다호	35,037	443	1.26	
일리노이	127,252	9,066	7.12	×
인디애나	45,353	3,202	7.06	
아이오와	75,147	1,918	2.55	×
캔사스	14,623	1,725	11.7	
켄터키	106,337	1,027	0.96	
루이지애나	15,317	1,171	7.64	
메인	57,550	984	1.70	
메릴랜드	94,397	2,996	3.17	
매사추세츠	376,409	4,976	1.32	
미시간	150,860	8,373	5.55	
미네소타	3,235	3,182	98.3	
미시시피	9,417	886	9.40	
미주리	40,818	1,946	4.76	
몬태나	1,595	507	31.7	
네브래스카	54,303	1,185	0.00	
네바다	21,616	585	2.70	
뉴햄프셔	60,024	1,482	2.46	×
뉴저지	366,052	9,749	2.66	
뉴멕시코	14,869	344	2.31	
뉴욕	252,718	19,875	7.86	×
노스캐롤라이나	271,471	2,575	0.94	

	총 과 표 액[1]	세 액	평 균 세 율[2]	동 산[3]
노스다코타	951	321	33.7	×
오하이오	134,813	5,916	4.38	
오클라호마	11,508	796	6.91	
오리건	112,410	2,564	2.28	
펜실베이니아	78,066	6,720	8.60	×
로드아일랜드	37,002	883	2.38	
사우스캐롤라이나	7,595	1,507	19.8	
사우스다코타	17,568	407	2.31	×
테네시	43,109	1,630	3.78	
텍사스	658,934	11,787	1.78	
유타	54,879	737	1.34	
버몬트	28,457	524	1.84	
버지니아	341,373	4,013	1.17	
워싱턴	238,511	3,137	1.31	
웨스트버지니아	26,154	492	1.88	
위스콘신	139,172	3,948	2.83	
와이오밍	6,387	420	6.57	

註 : 1) 各 州 내의 주정부 자체 또는 시·군정부가 결정하는 과표기준이 모두 다르고 州別 과표의 시가대비 비율도 차이가 크므로 과표총액은 公簿上의 과표를 단순합계한 것임.
2) 미네소타州의 경우 과표액은 일종의 Tax Capacity로서 자산유형별 법정세율을 시장가격에 곱한 수치이며, 몬태나州의 경우 자산유형별로 시가의 3~12% 정도만을 과표로 결정하고 있고, 노스다코타州의 경우 1981년 시가의 50% 수준에서 과표를 결정한 후 유형별로 9~10%의 법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평균세율이 높게 나타남.
3) 부동산 이외에 재고자산, 영업용자산, 가재자산, 차량, 무형자산 등을 지방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州들만을 ×로 표시하였음.

資料: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2 Census of Governments Vol. 2 Taxable Property Values*

비과세·감면항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州에서 非課稅인 항목	정부소유재산, 종교·교육용재산, 병원 및 묘지, 자가거주주택
일부 州에서만 非課稅인 항목	문화재, 임야, 과수원, 광산, 운수재산, 자선단체가 소유한 재산

농지·임야·보존지에 대한 감면은 저세율적용보다는 과세평가방법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이들 용도의 토지에 대한 과세평가시 最高效用度評價法(highest and best use valuation)이 아닌 現在用度評價法(current use valuation)을 사용할 경우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보유세부담이 경감되므로 現在用度로의 토지이용을 지속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資本利得課稅

자본이득은 연방소득세로 과세되며 22개 州에서는 州소득세로 추가과세된다.

1) 聯邦所得稅

納稅義務者는 국내외에 소재한 모든 재산의 처분·양도차익을 실현한 개인이다. 타원천소득과 자산양도차익을 합산한 과세소득을 누진적인 개인 소득세율 체계 내에서 과세한다(第Ⅰ章 所得稅 참조). 장·단기를 구분하여 연간 3천달러 한도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자본공제와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주된 居住住宅(Primary Residence) 한 채로부터의 양도차익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代替取得時 課稅移延(roll-over)이 허용되는데, 그 조건은 거래전·후 각 2년 내에 新住宅을 구입하고 신주택구입가격이 舊住宅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체취득가액이 구주택의 양도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완전승계되지 못하고 차액분에 대해 과세된다. 이렇게 과세이연되다가 궁극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55세 이후 양도 전 5년 중 3년 이상을 거주하는 경우로서, 평생에 한번 12만 5천달러의 限度額에 한한다.

다. 富裕稅 및 其他課稅

부유세는 펜실베이니아州를 제외하고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이전과세는 36개 州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가액의 일정 백분율(1~5%) 또는 일정비율(평가액 500달러당 55센트)로 부과된다. 부동산의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로 플로리다州 데이드郡과 버몬트州의 개발이득세(Development Gains Tax)가 있기는 하나, 흔하지 않다. 부동산 매매시 州稅로 賣上稅(sales tax)를 부과하는 州는 몇 군데에 불과하나 거래가의 0.1~2.2% 수준에서 양도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移轉稅(deed transfer tax)를 부과하는 州는 많이 있다. 抵當稅(mortgage tax)는 부동산 구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금액을 과표로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과세로 대부분의 州들이 비과세하고 있지만 8개 州는 0.15~1%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美國 내 각 州政府가 ① 州所得稅 내에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과세하는지의 여부, ② 이전세의 과표를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③ 이전세율, 그리고 ④ 저당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單位 : %)

	자본이득 과　세[1]	이전·취득과세		
		매매가[2]	이전세율	저당세율
앨라배마	○	○	0.10	0.15
알래스카	×	×		
애리조나	○		$2.00	
아칸소	○	○	0.33	
캘리포니아	○	△	0.11	
콜로라도	○	○	0.01	
코네티컷	○	○	0.61	
델라웨어	○	○	2.00	
콜롬비아	○	○	2.20	
플로리다	×	○	0.70	0.35
조지아	×	△	0.10	
하와이	×	○	0.10	
아이다호	△	×		0.26
일리노이	○	△	0.10	
인디애나	○	×		
아이오와	○	○	0.16	
캔자스	○	△		
켄터키	○	○	0.10	
루이지애나	○	×		
메인	○	○	0.44	0.23
메릴랜드	○	○	0.50	
매사추세츠	50%	○	0.456	
미시간	○	○	0.75	
미네소타	○	○	0.33	0.23
미시시피	×	×		
미주리	○			
몬태나	△	×		
네브래스카	○	○	0.175	
네바다	×	△	0.13	
뉴햄프셔	×	○	0.35	
뉴저지	○	○	0.35	
뉴멕시코	○	×		
뉴욕	○	△	0.4	1.00
노스캐롤라이나	○	△	0.2	
노스다코타	×	×		
오하이오	○	△	0.3	
오클라호마	○	△	0.15	0.10
오리건	○	×		
펜실베이니아	○	○	1	
로드아일랜드	×	○	0.28	
사우스캐롤라이나	△	○	0.26	
사우스다코타	×	○	0.1	

	자본이득 과　세[1)	이전·취득과세		
		매매가[2)	이전세율	저당세율
테네시		△	0.37	0.115
텍사스	×	×		
유타	○	×		
버몬트	△	○	1.25	
버지니아	○	△	0.1	0.15
워싱턴	×	○	1.28	
웨스트버지니아	○	○	0.22	
위스콘신	60%	○	0.3	
와이오밍	×	×		

註 : 1) 자본이득과세 列 중, ○는 부동산자본이득을 통상소득의 일부분으로 보아 주소득세에서 과세하는 州이고, △는 부분적으로 과세하는 州이며, ×는 비과세하는 州이다. 구체적인 퍼센트가 기록된 경우는 양도차익의 특정 퍼센트만 부분적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2) 매매가 列 중, ○는 소유권이전세의 과세표준으로 매매가를 사용하는 州이고, △는 매매가에서 할부저당액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재산만을 과표로 사용하는 州이며, ×는 소유권 이전세를 부과하지 않는 州이다.

資料: ACIR staff compilation from Commerce Clearing House, *State Tax Guide* (Chicago, 1994).

2. 英國

英國의 재산과세는 보유단계에서 지방세인 의회세(Council Tax), 국세화된 영업용 레이트(Business Rate)가 있고, 자본이득은 개인소득세제 내에서 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하며, 부유세는 없다.

가. 財産保有稅

1) 議會稅(Council Tax)

보유단계 재산과세인 의회세는 지방세로서, 納稅義務者는 주택점유자이며 점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1991년 4월 1일 시점으로 평가한 주택의 시장가치(open market capital value)이며 세율은 계급별 定額稅額構造를 갖는다. 8개 계급(A~H)의 세액은 기준계급인 D계급 소속 세액의 6/9, 7/9, 8/9, 1, 11/9, 13/9, 15/9, 18/9 배수를 갖고, 역진적인 세부담 구조를 갖는다.

완스벡(Wansbeck) 지역의회 1996년 회계연도의 의회세 세액 및 세율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單位 : 파운드, %)

계급 (Band)	가격구간	지 역 의회세	군 의회세	경찰서	합계	계급 D 대 비	평균세율
A	40,000 이하	52.01	339.96	29.95	421.92	6/9th	1.05 ~
B	40,001~ 52,000	60.68	396.62	34.04	492.24	7/9th	1.23~0.94
C	52,001~ 68,000	69.35	453.28	39.93	562.56	8/9th	1.08~0.82
D	68,001~ 88,000	78.02	509.94	44.92	632.88	1	0.93~0.71
E	88,001~120,000	95.36	62.26	54.9	773.52	11/9th	0.87~0.64
F	120,001~160,000	112.69	736.59	64.88	914.16	13/9th	0.76~0.57
G	160,001~320,000	130.03	849.9	74.87	1,054.8	15/9th	0.65~0.32
H	320,000 초과	156.04	1,019.88	89.84	1,265.76	18/9th	~ 0.39

資料: http://ace.co.uk

비과세·감면항목은 다음과 같다.

비과세대상 주택	영업용 재산, 학생소유주택, 신축주택(6개월간), 자선단체소유 주택(6개월간), 증·개축중인 주택(준공후 6개월간), 형무소·요양원 등에 입원하여 빈집, 차압주택
인적공제	1주택의 거주 가구가 2명의 성인으로 구성된 것을 표준으로 보아, 1명 거주시 25% 감면, 거주인이 없을 경우 50% 감면. 거주인수에 따른 인적공제시, 18세 미만 아동, 학생, 입원중 환자, 양로원 입원자, 정신질환자, 임시숙박자, 성직자, 재소자 등은 거주인수 계산에서 제외됨.

2) 營業用 레이트(Business Rate, Non-domestic Rate)

納稅義務者는 占有者이며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의 (순)임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점유가치이다. 세율은 單一比例稅率(uniform business rate)로서 세율(tax multiplier) 인상은 消費者物價指數 上昇率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면에서 국세에 가깝다. 세액은 임대가치(rateable value)에 세율(tax multiplier)을 곱하여 산출된다.

비과세 · 감면항목은 다음과 같다.

비과세대상	농지 및 농가, 교회, 등대, 하수처리장 시설건물, 공원 · 놀이터, 신체장애자용 재산, 산업진흥면세지역(Enterprise Zones), 외교공관(소유권 귀속이 아닌 이용용도에 따른 비과세제도)
감면대상	자선단체소유재산(최소 80%), 공장용지(북아일랜드 : 15%, 스코틀랜드 : 50%), 정부청사, 비점유 사업용 부동산(50%)

나. 資本利得課稅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개인 및 법인소득세 체계 내에서 종합과세한다.

1) 資本利得稅(Capital Gains Tax)

연간공제액 5,800파운드를 초과하는 순자본이득을 타소득과 합

산하여 개인소득세로 종합과세한다. 실질자본이득을 계산하기 위해 小賣物價指數(Retail Price Index)를 사용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物價上昇控除(Indexation Allowance)를 허용한다.

納稅義務者는 국내외에 소재한 모든 재산의 처분·양도차익을 실현한 개인이며 세율은 초과누진세율구조이다.

(單位: 파운드, %)

課 標 區 間	稅 率
3,000 이하	20
3,000 ~ 23,700	25
23,700 초과	40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순자본이득 (1982년 4월 1일 이후 실질가치증가분)
− 연간 공제액 ; 5,800파운드
과세자본이득
× 누진세율

非課稅 및 減免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主居住住宅(principal residence) 매각(1에이커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며, 임대 및 여타주택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자산은 자동차, 삼림, 창업투자주식, 해외지출용 외화, 복권수입, 적격생명보험의 만기 또는 해약반려금, 전환불능의 파운드표시 사채,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자산, 저축증서(National Savings Certificate) 및 할증채권(Premium Bond) 등이다.

1982년 3월 3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物價上昇控除

(indexation allowance)를 허용하는데 공제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물가상승공제 = \frac{매각일\ 소매물가지수 - 취득일^{*}\ 소매물가지수}{취득일\ 소매물가지수} \times (취득가액 + 비용)$$

* 1982년 3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은 이 날을 취득일로 의제한다.

이 외에도 순자본손실의 타소득에 대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단지 미래의 자본이득에 대해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단기·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및 연간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자산증여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수증자에게 승계(roll-over)되어 과세이연된다.

2) 法人稅(Corporation Tax)

거주법인은 자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그 처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 과세된다. 課稅區間과 稅率은 법인세 과세의 경우와 같으며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begin{array}{ll} & 양도가액 + 매각비용 \\ - & (취득가액 + 취득비용) \times 소매물가상승률 \\ \hline & 과세양도차익(\text{chargeable gain}) \\ \times & 세율 \\ = & 세액 \end{array}$$

국채 및 전환사채 이외의 파운드 표시 사채, 자선 또는 특정의 공공단체에 대한 자산증여, 자동차, 감가상각이 불허되는 減價性動產(wasting chattel)은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

3. 獨逸

가. 不動產保有稅

1) 不動產稅(Grundsteuer)

부동산의 保有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地方稅이다. 納稅義務者는 獨逸 국내의 거주자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세율은 연방정부에서 기본세율을 정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배수를 정하여 세액을 산정하므로 實效稅率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세법상에 규정된 基本稅率(Steuermesszahl)은 0.35%(토지)와 0.6%(농림업재산)이며, 여기에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결정하는 租稅算定率(Hebesatz)을 곱하여 세액이 계산되는데 평균 조세산정률은 404%이다. 주택에 대하여는 경감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세액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배수

공공기관, 교회, 자선, 복지기관은 세액공제되며 1990년 12월 31일 이후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住居用建物은 비과세된다.

2) 純富裕稅(Vermögensteuer)

부동산뿐만 아니라 포괄적 財産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소득자간에도 자산보유자와 비보유자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도모하고 소득세를 보완하기 위해 부과되는 人稅로서의 州稅이다.

納稅義務者는 국내에 주소·사무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無制限納稅義務者)와 국내에 주소·사무소 등이 없는 비거주자(制限納稅義務者)로 나누어진다.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전세계의 전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獨逸 국내의 평가액 2만마르크 이상의 순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세율은 법인의 경우 0.6%이고 개인은 1%(농림지 사업용자산 주식은 0.5%)이다[7]. 과세기준은 1993년 評價法의 규정[8]에 따른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각 분리된 재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의 경우 사업용재산을 제

---

7) 1994년까지는 개인에 대한 순부유세 세율이 0.5%의 단일세율이었으나, 1995년 과세연도부터 1%의 기본세율로 인상되면서 자산 중 농림지·사업용재산·주식에 대해서는 0.5%의 경감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대상 자산유형별로 차등과세되기 시작함.

8) 독일은 연방정부에서 평가법(Bewertungsgesetz)을 제정하여, 각종 세목의 세액산정시 재산가액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평가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산의 종류를 農林財産, 土地財産, 事業用財産, 其他財産의 4가지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평가방법인 생산물수익, 현행가치, 시장가격 평가법을 사용하고 있음. 그리고 농림재산과 토지재산에 대해서는 6년마다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평가하도록 再評價의 週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재산을 제외하고는 1964년에 실시된 평가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시가와 많은 괴리가 발생하여 과거 토지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1964년 평가액에 40%를 추가(mark-up)하여 과세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외한 순재산액에 가족 1人當 12만마르크의 기초공제가 있고[9], 개인소유 사업용재산은 50만마르크의 75%만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한다. 법인의 경우도 사업용재산공제액인 50만마르크를 초과하는 순재산의 75%가 과세기준이 된다.

세액은 총자산을 크게 사업용재산, 부동산, 기타재산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채를 공제한 순재산을 구하고, 여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차감한 후 해당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 감면된다.

○ 1991년 1월 1일 ~ 1995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은 구동독지역 5개 州에서 과거부터 거주하던 개인이나 법인에 한해 비과세된다. 따라서 1990년 12월 31일 이후 구동독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 구동독 이외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라도 구동독지역 내에 소유한 영업용자산에 대해서는 1991년 1월 1일~ 1995년 12월 31일 기간 동안은 비과세된다.

나. 資本利得課稅

개인의 자본이득은 투기거래에 의한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非課稅이다. 투기거래란 취득에서 양도까지의 기간이 토지에 대해서는 2년,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인 경우의 양도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개인소득세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

9) 1994년 이전의 인적공제액은 개인 7만마르크, 부부합산 납세자는 14만마르크, 부양자녀 1인당 7만마르크이었으나, 1995년부터 공제액이 12만마르크로 각기 인상되었음. 또한 60세 이상이나 신체불구자와 같은 노약자에 대해서는 일정조건하에서 5만마르크의 추가공제가 허용됨.

법인의 경우 자본이득은 전액 통상의 법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과세된다.

다. 不動産取得稅(Grunderwerbsteuer)

부동산의 소유나 처분권에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시에 부과되는 州稅이다. 세율은 2%이고, 과세기준은 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매매시 양도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상을 포함하며,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는 재산가액이 된다.

다음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① 피상속인의 유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상속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족들이 공동구입하는 경우

② 부부간의 부동산 거래

③ 직계혈족(양자 및 배우자 포함)에 의한 부동산 취득

④ 5천마르크 이하의 소액부동산 취득

부동산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거래는 모두 세무서에 신고된 후, 세무서가 결정한 세액을 납부하고 발급받은 完納證明書를 讓受者가 등기소에 제출해야만 부동산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4. 프랑스

財産保有稅는 지방세로서의 物稅인 재산세, 토지세, 주거세와 국세로서의 人稅인 순부유세가 존재하며, 資本利得稅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로 과세된다. 중앙정부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과세·징세업무 중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가. 財產保有稅

1) 財產稅(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bâties)

納稅義務者는 건물과 건물부속토지(건축지)의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임대가치를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며, 비용공제 후 50%만 과표로 사용한다. 상업용 건물의 과표는 ① 실제임대료, ② 인근 유사임대료 평균, ③ 수익률환원가액 중 하나로 계산하며 공장용 부동산은 대체비용에 기초한 수익률을 사용한다.

세율은 행정단위인 22개의 레지용(region: 地方), 95개의 데빠르뜨망(département: 道), 3만 5천여개의 꼬뮨(commune: 邑·面), 그리고 9개 대도시지역(Metro. Districts)별로 차등화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1981년 이래 지방정부가 세율결정권을 갖지만, 중앙정부는 데빠르뜨망(départment) 내의 꼬뮨단위 평균세율(communal rate)과 전국평균치 중 높은 것의 2.5배를 넘을 수 없다는 최고세율 상한을 정하고 있다.

비과세·감면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비과세대상주체라도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부동산은 과세된다.

보유과세 전반의 비과세대상(토지세나 주거세에도 적용)	- 정부소유, 외국정부소유, 종교단체, 학교 및 교육기관 보유재산, 박물관 및 문화재산, 병원·고아원 등의 복지시설, 농가, 임야, 묘지
기타 비과세	-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에의 증·개축은 공사 후 2년간 비과세 - 정부보조 저소득층 주택은 15년간 비과세 - 소득세 과세최저한 미만의 노인소득자가 소유한 주거주주택은 비과세

2) 土地稅(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non bâties)

納稅義務者는 나대지(미건축지: propriétés non bâties)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나대지에 대해 임대가치기준으로 산정되며 중앙정부가 입법화한 일반지수로 매년 조정된다. 세율은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먼저 꼬뮨(commune)마다 12개 토지유형별로 시장임대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액을 면적에 곱하여 과표를 산출한다. 단위면적당 가액은 대표적 토지임대료를 평균하거나, 토지의 시장가치로부터 임대료를 추정하여 결정하며 평가액에서 20%의 비용을 공제한 과표에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일반적 재산세 비과세 대상 외에 소유자의 토지개량사업(경작・입목, 하수로설치)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비과세한다.

3) 住居稅(Taxe d'habitation)

주택점유자에 대해 과세하며 건물의 質에 따라 8개 등급 중 하나로 분류하여, 등급별 單位面積價額을 건축면적에 곱해 과표를 산정한다. 세율은 지역마다 차등화된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과표에 비례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 감면된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인적감면	2人까지는 1人當 10%, 1人 추가시 15%
저소득노인, 병약자, 상처자 등	1% 과표감면과 특별감면제도 o 1만 5천프랑 한도로 소득의 4%에 해당하는 과세최대한 존재

4) 富裕稅(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1982년 사회당의 집권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사회당과 보수연합간의 정권교체에 따라 1987년의 폐지와 1988년의 부활을 거듭하였다. 부유세는 기본적으로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소득세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좌파 정치철학을 대변하는 세제이다.

納稅義務者는 법인을 제외한 프랑스내 거주 개인 및 프랑스내 자산소유 비거주자이며, 매년 1월 1일 현재 사업용자산을 제외한 총재산가액에서 債務 및 461만프랑의 基礎控除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식이나 지분은 사업용자산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되고 있으며, 대부분 부동산이 과세대상 자산이다.

(單位: 프랑, %)

課稅財産價額1)	稅 率
0 ~ 2,890,000	0.5
2,890,000 ~ 10,270,000	0.7
10,270,000 ~ 18,490,000	0.9
18,490,000 ~ 40,120,000	1.2
40,120,000 초과	1.5

註: 1) 기초공제액인 461만프랑을 차감한 과세재산가액임.

세율은 위와 같은 5단계(0.5~1.5%)의 累進稅率構造를 갖고 있으며, 1996년 경우 총소득세와 순부유세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의 통상과세소득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는 課稅上限이 있다[10]. 1995년부터 납부해야 할 순부유세액의 10%에 해당하는 附加稅(surcharge)를 순부유세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나. 資本利得課稅

1976년까지는 사업용 자산의 처분 양도익만 과세되었으나, 부동산·유가증권·보석·귀금속 등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다. 개인이 실현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개인소득세에서, 법인이 실현한 자본이득은 법인세 내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의 種類와 保有期間에 따라 차등과세할 목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1) 所得稅(Impôt sur le Revenu)

거주개인의 사업용자산 처분 양도이익은 통상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일 경우 타원천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누진과세된다[11]. 장기보유일 경우 16%(1%의 사회부가세와 2.4%의 일반사회기여금의 추가)의 경감된 비례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일정액 이하의 거래가액으로 5년 이상

---

10) 이러한 순부유세 및 소득세 합계액의 課稅上限(maximum tax burden)은 1996년 1월 1일부터는 순재산가액이 1,488만프랑을 넘는 고액자산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합계세액과 과세최대한간의 차액에 대한 완전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①순부유세액의 50%와 ②제2과표 계급(289만~1,027만프랑)의 상한인 1,027만프랑에 대한 순부유세액인 6만 6,110프랑 중 적은 금액에 한해 부분공제됨.

11) 합산누진과세하더라도 3년 이상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됨.

보유 후 이루어진 거래일 경우 장기보유 양도익은 비과세되는 것이 보통이다.

비사업용 자산은 부동산, 유가증권, 귀금속・보석 등으로 구분되어, 이로부터의 자본이득은 달리 과세된다.

① 不動産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예, 부동산보유회사의 주식)의 처분 양도익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2년 미만의 단기보유인 경우 6천프랑의 기초공제후 당해연도의 타원천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2년을 초과하는 장기보유인 경우, 6천프랑의 정액공제를 한 후 보유 3년 이상부터 보유연수별 定率控除(보유연수 1년당 5%)를 적용하여 계산된 純課稅譲渡益을 5分5乘法으로 과세한다. 즉, 순과세양도익의 5분의 1을 납세자의 통상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하였을 때 증가하는 세액을 계산한 후, 이 소득세 증가분의 5배가 최종적인 자본이득세액이다. 납세자는 이를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4회분의 분납액은 이자비용이 추가된다.

② 有價證券에 대한 자본이득이 과세되는 경우는, 파트너권리의 매각, 지배주주[12]에 의한 법인주식 매각, 상장주식・채권・유사유가증권 매각, 비지배주주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매각, 비상장채권과 유사 비상장 유통채권의 매각 등이다. 연간 거래액이 일정한도(예, 1996년의 경우 20만프랑, 1997년 경우 10만프랑)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③ 貴金屬・寶石, 美術品, 骨董品의 매각에 대해서는 거래총액을 과표로 비례세율로 과세된다.

---

12) 과거 5년간 한번이라도 법인소득의 25% 이상을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통해 직접・간접으로 얻은 주주임.

과세대상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 자본이득	16%(1%의 사회부가세, 1.1%의 일반사회세금의 부가)
보석·골동품 등 자본이득	매각대금의 6%에 해당하는 특별세 부과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	누진세율로 부과

稅額算定方式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데, 2년 이상 보유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처분양도차익

— 6천프랑의 표준공제액(공공목적용인 경우 7만 5천프랑)

과세양도차익

— 장기(5년 이상) 물가상승공제(보유기간 2년 초과연수당 5%씩)

과세소득

× 누진세율

세액

위의 세액산정과정 중 누진세율은 소득세율보다 경감된 세율을 적용한다.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은 투기성거래로 간주되어 표준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50% 비례과세된다.

비과세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主居住 住宅 처분이익

② 主居住 住宅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40만프랑(배우자 1人과 2人 부양자녀 기준, 추가 자

녀당 10만프랑 추가) 이하이며, 1971년 1월 1일 이전의 구자본이득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의 임대주택 양도차익

③ 가구, 가정용 기구, 개인용 자가용의 처분이익

④ 연간 3만프랑 미만의 부동산 및 2만프랑 미만의 기타자산 양도차익

다. 不動產登錄稅

주거용 부동산 건물의 거래에는 登錄稅가 과세된다. 세율은 데빠르드망(département)에 따라 4.2~6.5%의 범위 내에서 차등화되어 있고, 여기에 상위 및 하위 지방자치단체인 레지용(region)과 꼬뮨(commune)이 각각 최고 1.6%와 최고 1.2%까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2.5%의 부가세를 추가할 수 있다. 최고세율인 6.5%는 1993년 6월 1일부터 6%로 인하되며, 데빠르뜨망들은 5만프랑 이상 30만프랑 이하의 공제를 할 수 있다.

5. 日本

가. 不動產保有稅

1) 固定資產稅

納稅義務者는 매년 1월 1일 현재 各 市·町·村의 固定資產課稅臺帳上에 등록된 부동산(토지, 가옥)과 상각자산의 소유자이며, 특정 경우에는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市町村稅이다. 과세표준은 고정자산의 적정한 시가로서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세율은 각 시·정·촌이 標準稅率과 制限稅率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정하는데, 표준세율은 1.4%이고 표준세율을 넘는 경우에도 2.1%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는 30만엔, 가옥은 20만엔, 상각자산은 150만엔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된다. 단, 재정상 또는 기타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시·정·촌의 조례에 의해 上記 금액 이하일 때도 고정자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소유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비과세되며, 감면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住宅用地에 대한 課稅標準特例	- 일반주택용지 과세표준특례 ·전용주거주택, 일부주거주택 중 1/4 이상의 부지가 주거용으로 제공: 과세표준 가액의 1/3 - 소규모주택용지 과세표준특례 ·上記 特例對象으로 면적이 200㎡ 이하인 주택용지: 과세표준가액의 1/6
新築住宅에 대한 固定資産稅 輕減特例	- 신축주택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년간 연면적 120㎡ 이하 부분에 대해 1/2세액경감 ·대상: 평성 7년 1월 1일까지 신축, 연면적 중 1/2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 주거용면적이 40~200㎡, 등록가액이 1㎡당 11만 2천엔 이하 - 中高層(지상 3층 이상) 耐火建築住宅 중 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연면적 120㎡ 이하 부분에 대해 1/2세액경감
評價上昇比率이 높은 宅地에 관한 課稅標準特例	- 1994년 평가대체에 따른 잠정특례로 1995년, 1996년 적용 ·평가상승비율 1.8~4배인 택지평가토지: 과세표준 가격의 3/4 ·평가상승비율 4~7.5배인 택지평가토지: 과세표준 가격의 2/3 ·평가상승비율 7.5배 초과인 택지평가토지: 과세표준 가격의 1/2 - 지가하락을 고려한 1995년, 1996년의 임시적 특별조치 ·평가상승비율이 2.4~4.8배인 택지: 과세표준 가격의 3/4 ·평가상승비율이 4.8~6배인 택지: 과세표준 가격의 3/5 ·평가상승비율이 6배 초과 택지: 과세표준 가격의 1/2

2) 地價稅

土地稅制改革에 의해 1992년에 신설된 地價稅는 전국의 토지 등에 대하여 매년 자산가치에 따라 통일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부과하는 國稅이다. 納稅義務者는 每年 1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土地 및 借地權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가액의 합계액이며, 이는 相續稅評價額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율은 最初年度인 1992년에는 0.2%, 그 이후부터는 0.3%가 적용된다. 세액은 課稅標準에서 基礎控除額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基礎控除는 금액기준과 면적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金額基準控除: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보통법인은 10억엔, 개인 및 그 밖의 법인은 15억엔

② 面積基準控除: 1㎡당 土地價額이 3만엔을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 × 3만엔

비과세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다.

① 國家 또는 公共法人, 公益法人 등의 보유지

② 國家 등에 대한 貸付地

③ 自然保全, 醫療, 社會福祉 등 공익적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

④ 1㎡당 價額이 3만엔 이하인 토지

⑤ 1,000㎡까지의 주택부속토지(自家居住住宅 또는 賃貸住宅 1채에 한함)

3) 特別土地保有稅

토지의 소유자 또는 취득자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토지의 취득가액(부대비용 포함)이다.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3%,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1월 1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액(취득가액)에 세율(1.4%)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당해토지에 대해 시·정·촌이 부과할 당해연도분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에 1.4%를 곱한 금액을 공제함
1월 1일 또는 7월 1일전 1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액(취득가액)에 세율(3%)을 곱한 금액에서 당해 취득에 대해 道·府·縣이 과세할 부동산취득세의 과세표준에 4%를 곱한 금액을 공제함.

단, 산출된 세액에서 이들 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세액, 고정자산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비과세·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취득하거나 소유한 토지

② 상속, 법인의 합병 등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의한 토지

③ 농림어업의 경영규모의 확대, 공장의 지방분산 등 국가시책 등에 적합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

나. 資本利得稅

一般資産은 50만엔의 기초공제 후 과세양도익(5년 이상의 장기보유는 50% 산입비율)을 타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不動産 讓渡益의 경우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하여 分離課稅特例를 적용하고 있다.

5년 이상의 장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익은 4천만엔 미만에 대해 25%(주민세 7.5%), 4천만엔 초과분에 대해 30%(주민세 9%)의 2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13]. 2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보유부동산에 대한 양도익은 40%(주민세 12%)의 정률세액과 종합합산세액 증가분의 110% 중 큰 세액으로 과세하고, 2년 미만의 초단기 보유 부동산 양도익은 50%(주민세 15%)와 종합합산세액 증가분의 120% 중 큰 세액을 과세한다.

또한 住宅에 대하여는 매각연도 1월 1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처음 6천만엔에 대한 10%(주민세 4%) 세율과 6천만엔 초과분에 대한 15%(주민세 5%)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갖고 있어 타부동산에 비해 輕減措置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양도특별공제로 장기 양도소득 특별공제 100만엔과 주거용재산 양도소득 특별공제 3,000만엔이 있다.

다. 取得段階課稅

1) 不動産取得稅

부동산 소유권의 실제적 취득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都·道·府·縣이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부동산 취득은 유·무상에 상관없고, 그 원인이 매매, 교환, 증여, 유증,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매립 등으로 인한 원시취득, 승계취득인 경우도 상관없다.

과세표준은 부동산 취득시의 가액으로 하며,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은 등록된 가액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

---

13) 평성 7년 세제개정으로 장기보유부동산에 대한 1992~94년 기간중의 단일세율 30%(주민세 9%)로부터 2단계 누진세율로 하향조정하였음.

은 것은 自治大臣이 발표한 평가기준에 따라 都·道·府·縣知事가 그 가액을 평가하고 결정한다.

표준세율은 4%이나, 주택 및 일련의 주택용지 취득세율은 3%로 한다.

비과세·감면은 다음과 같다.

非課稅	- 면세점: 토지 10만엔, 가옥 1호당 신축은 23만엔, 기타 12만엔 - 相續이나 信託財産의 이전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 土地改良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으로 환지 취득·교환분합 - 신도시기반정비법에 의한 사업실시로 환지 취득
減免	- 新築住宅用 부지에 대한 稅額輕減 ·대상: ①토지 취득 후 2년 내에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 ②토지 취득 전 1년 내에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 ③신축매입 주택을 양도한 자가(신축된 지 6개월 이내이고 아직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주택에 한함) 신축 및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취득 ·공제액: 4만 5천엔과 토지 1㎡당 고정자산세평가액1) × 주택연면적의 2배 (200㎡ 한도) × 3% 중 큰 금액 - 中古住宅用 土地 取得에 대한 稅額輕減 ·대상: ①토지취득일 후 1년 내에 그 토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 ②토지 취득일 전 1년 내에 그 토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 ·공제액: 신축주택용 부지에 대한 세액경감특례와 동일. - 농업근대화자금조성법 및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등에 의해 대부받은 자금으로 취득: 취득가액×대부이자율을 공제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매각 후 2년 내에 대체자산으로 부동산 취득: 대체자산가액—수용자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 特定市街化區域農地를 전용하여 3층 이상의 중고층내화건축물을 신축하여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의 1/10 공제 - 신축주택 공제:標準住宅2)에 한해 과세표준에서 1,000만엔 공제 - 중고주택(10~20년 전에 신축된 표준주택으로 거주용으로 사용될 것) 취득시 신축주택공제 상당액을 평가액에서 공제(350만~1,000만엔)

註: 1) 1994년은 1/2, 1996년은 2/3, 1997년 이후는 1을 곱함.
2) 연면적 40㎡ 이상, 200㎡ 이하로 1㎡당 가격이 17만 6,000엔 이하

2) 登錄免許稅

부동산 취득시 그 소유권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등기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登記의 種類	稅　率
- 소유권 保存登記	0.6
- 소유권 移轉登記	
・相續・法人의 合併	0.6
・遺贈・贈與	2.5
・共有物 分割	0.6
・賣買 등	5
- 地上權・賃借權 등의 설정	2.5
- 抵當權 설정	0.4[1]
- 假登記	
・소유권이전・소유권이전 請求權 保全	0.6
・기타	부동산 1개당 1,000엔

註: 1)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임.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등기일 현재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된 금액이 있는 부동산은 등기신청일이 속한 기간구분에 따라 다음의 고정자산과세대장 등록가액을 기초로 계산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등기신청일이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일 때:
  전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가액 × 1/2 (1995년, 1996년은 2/3, 그 이후는 1)
- 등기신청일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 때:
  1월 1일 현재의 등록가액 × 1/2 (1995년, 1996년은 2/3, 그 이후는 1)

등록된 가액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록된 유사한 부동산을 기초로 등기기관이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축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주택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조치특례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減 免 種 類	減 免 內 容
신축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세율경감	연면적 50~200㎡인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1년내 등기: 0.3% 세율
주택소유권이전등기 세율경감	연면적 50~200㎡인 특정중고주택1)을 취득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1년 내 등기: 0.6%
주택취득자금 대부와 관련된 저당권설정등기 세율경감	주택용가옥 신축·취득을 위한 저당권설정의 1년내 등기: 0.2%

註: 1) 1동만을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10~20년 전에 신축된 것.

6. 臺灣

가. 不動產保有稅

1) 地價稅

納稅義務者는 다음과 같다.

① 토지소유권자

②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

③ 점유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점유허가를 받은 자

④ 개간승인을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경작권을 가진 자

⑤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인
⑥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분의 소유자

토지소유권자가 동일 직할시·현(시)에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의 사용인이 각각 다른 상황하에서 이들 토지에 대해서 지가세가 누진세율로 계산·부과된다면, 각 토지의 사용인은 사용하는 토지의 지가 비율에 따라 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基本稅率(비례세율), 累進稅率 및 優待稅率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公告地價를 시가에 근접(초년도 80%, 차년도 90%, 3차년도 100%)시키고자 대폭 인상했으며, 이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였다. 累進起點地價란 지가세의 누진세율의 적용을 개시하는 지가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累進起點地價} = \frac{\text{直轄市나 縣(市)의 規定地價總額} - \text{工·鑛·農業用地 地價} + \text{免稅地 地價}}{\text{直轄市나 縣(市)의 規定地價總面積} - \text{工·鑛·農業用地面積} + \text{免稅地 地價}} \times 7$$

과세대상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對 象 土 地	稅率
基本稅率	해당 직할시 및 현의 누진기점지가에 미달한 경우	10
累進稅率	- 과세지가가 누진기점지가의 5배 이내 - 과세지가가 누진기점지가의 5~10배 - 과세지가가 누진기점지가의 10~15배 - 과세지가가 누진기점지가의 15~20배 - 과세지가가 누진기점지가의 20배 이상	15 25 35 45 55
優待稅率	- 자기거주(自用)의 택지 - 국민주택용지	2 2
기　　타	- 공장·광업용지, 사립공원·운동장용지, 교회, 명승고적지, 공유지(공공용은 면세) - 공공시설보유지(단, 사용하지 않는 것은 면세) - 국방, 정부기관, 교육, 교통, 수리, 급수지, 염전, 종교, 의료, 위생, 자선 또는 교역사업용 등으로 제공하는 토지	10 6 면세

비과세·감면항목은 다음과 같다.

	對 象 土 地	減免稅率
公有土地	국유·성(시)유·현(시) 및 향·진(시)유지	10
私有土地	- 사립학교 및 학술연구기관의 용지 - 사회·자선사업 및 공익단체 소유지 - 농·림·교통사업 용지 - 개간 및 불하받은 토지	면세 감면 감면 감면
특수상황하에서의 감면	- 공공목적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유토지(사용기간중) - 도시계획에 의한 공공시설보유지로서 보유기간중에 미사용되거나 사용중인 토지와 격리된 경우 - 국방부와 내정부가 함께 지정한 해안·산지 또는 중요 군사시설지구로서, 법에 의하여 통제지구로 분리됨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 - 유실·붕괴와 같은 환경적 요인 및 기술적 요인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개간중에 있는 토지 - 공공통행에 사용되는 보도로서 건축개량물이 없는 경우 • 지상에 1층 건축개량물이 있는 경우 • 지상에 2층 건축개량물이 있는 경우 • 지상에 3층 건축개량물이 있는 경우 • 지상에 4층 건축개량물이 있는 경우	전액면제 전액면제 30%감면 전액면제 전액면제 1/2감세 1/3감세 1/4감세 1/5감세

2) 房屋稅

房屋이란 영업용, 사업용, 주택용 등의 건축물을 말하며, 納稅義務者는 건축물의 소유권자 혹은 저당권설정자이다. 과세대상은 각종 방옥과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기타 부속건축물이며 課稅區間과 稅率은 다음과 같다.

(單位: %)

건축물의 사용유형		稅率	
		最低稅率	最高稅率
거주용건축물	자가거주용[1] 자가비거주용[2]	1.38 1.38	1.38 2
비거주용 건축물	영업용 비영업용[3]	3 1.5	5 2.5
거주용과 비거주용의 겸용건축물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거주용과 비거주용에 사용되는 면적에 따라 각각 세율을 적용(단, 비거주용의 과세면적이 최소한 전체면적의 1/6은 되어야 함).	

註: 1)자가거주용이란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건축물임(自住房屋).
2)자가비거주용이란 자신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임(非自住房屋).
3)비영업용이란 개인병원, 자유직업자들의 사무소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임.

방옥가액 계산을 위한 房屋現値(표준가격)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원가법에 의해서 산정한다.

房屋現値 = 住宅面積 × 〔1 — 減價償却率 × 경과연수〕×
街路等級調整率 × 査定된 單價*

* 재건축가격을 의미함.

납부세액은 房屋現値에 징수율(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비과세·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免 稅	- 公有建築物 - 私有建築物 ○ 사립학교 및 학술연구기구가 재단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성과가 있으며 주관 기관이 증명하는 경우 교사 또는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私立慈善救濟事業으로서 영리 목적이 아니며, 재단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성과가 있으며 주관 기관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 제사에 전용되는 祠堂·宗敎團體가 전도 및 포교에 사용하는 교당 ○ 정부기관이 公用 또는 軍用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 정부의 허가를 받은 非營利公益社團이 자체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가축 사육에 전용되는 건축물 ○ 重大 災害를 입어서 파손된 면적이 전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반드시 복구해서 사용하려는 건축물
減 稅	○ 정부에서 공급한 國民住宅 ○ 합법적으로 등기한 공장으로서 직접생산에 사용되는 자가보유의 건축물 ○ 農業協同組合의 自用倉庫 및 시험장 ○ 重大 災害를 입어서 파손된 면적이 전 면적의 30% 이상 50% 이하를 차지하고, 반드시 복구해서 사용하려는 건축물

나. 資本利得稅

1) 土地增値稅

納稅義務者는 토지를 有償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 無償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자,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이다. 과세표준은 증가된 토지의

가치 총액(土地漲價 總數額)이다. 증가된 가치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增加된 價値總額＝ 신고한 토지이전가격 — 원규정지가 또는 전회 이전시의 신고한 토지이전가격 × (일반도매물가지수/100) — (토지개량비 ＋공정수익비 ＋ 토지구획정리시 부담했던 총비용)

세율은 累進稅率과 優待稅率을 혼용하고 있다.

	대상토지의 내용	세율(%)
누진세율	- 土地漲價 總數額[1]이 100/100 미만 - 土地漲價 總數額이 100/200 미만 - 土地漲價 總數額이 100/300 이상	40 50 60
우대세율	- 自用住宅用地(도시지역 300㎡, 비도시지역 700㎡)	10

註: 1)土地漲價 總數額이란 토지의 증가된 가치 총액을 말함.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土地의 種類	納付稅額	減稅額
일반토지	토지창가 총수액 × 누진세율 — 누진차액 — 감세액 — 저격(환급)세액	(감세되는 토지창가 총수액×누진세율 — 누진차액)×감세비율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	우대세율의 토지창가 총수액 × 우대세율 — 감세액 — 저격(환급)세액	
누진세율과 우대세율이 함께 적용되는 토지	(토지자연창가 총수액 — 우대세율의 토지자연창가 총수액) × 누진세율 — 누진차액 ＋ (우대세율의 자연창가 총수액 × 우대세율) — 감세액 — 저격(환급)세액	

비과세 ·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면세	○ 政府에서 매각하는 토지 및 정부가 법에 따라 贈與하는 공유토지 ○ 정부에 증여하는 사유토지 ○ 相續으로 인해서 이전되는 토지 ○ 개인이 토지를 出捐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사용하는 토지 ○ 區段徵收(地帶收用)되는 토지는 平均地權條例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煥地받은 토지가 최소건축 단위면적에 미달되어 현금으로 보상 받은 경우 ○ 區段徵收되는 토지로서, 平均地權條例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垈土(토지구획사업이 끝난 후 분배하는 토지)로 토지를 보상하는 경우 ○ 농업용지가 법에 따라 경작되거나, 자경농민에게 이전되어 경작되는 경우
감면	○ 수용되는 토지는 40% 감세 ○ 수용되는 토지를 토지소유권자가 公告土地現値로 수용기관에 자진해서 매각하는 경우 ○ 區段徵收되는 토지로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 重劃(區劃整理)한 토지로서 중획 후 제1차 이전시에는 20% 감세

V. 消 費 稅

소비세제는 그 특성상 다양한 세목을 포괄하는바,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목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판매세	○	 ○	○	○	○	○	○
석유류세(교통세, 탄화수소세, 광유세, 석유산품내국소비세, 휘발유세, 석유류 화물세)	○	○	○	○	○	○	○
연방소매세		○					
연방제조자세		○					
시설이용세		○					
환경세		○					
도박세 또는 도박유희세		○	○				
항만유지세		○					
총포세		○					
담배(소비)	○	○	○	○	○	○	
주세	○	○	○	○	○	○	
전화세	○	○					
주연료세		○					
특소세, 화물세	○						○
지방도로세						○	
석유가스세						○	
자동차중량세		○				○	
자동차특별세			○				
항공기연료세		○				○	
전원개발촉진세						○	
커피세				○			
자동차특별세			○				
경마복권세				○			

1. 美國

美國의 주요 소비세로는 연방소비세, 판매세, 담배소비세, 주세, 총포세, 주연료세 등이 있다. 연방소비세, 총포세는 연방세이며 판매세, 주연료세 등은 지방세이고 담배소비세와 주세는 연방세와 주세의 두 가지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美國의 개별소비세로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석유류에 대한 것으로 주연료세, 연방소매세 중 석유류 관련세, 연방제조자세 중 석유류 관련세이다.

연방소매세 중 석유류 관련세와 연방제조자세 중 석유류 관련세의 과세대상에는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방제조자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연방소매세 중 석유류 관련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美國의 소비세의 종류 및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후 美國 소비세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 중 *표시한 세목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 소비세
- 국 세
  - 연방소비세
    - 연방소매세*
      - 사치세
      - 특수연료세
      - 자동차중량세
    - 연방제조자세*
      - 연료낭비세
      - 타이어세
      - 석유류세
      - 석탄세
      - 백신세
      - 오락기구세
      - 총포세
    - 시설이용세*
      - 통신세
      - 항공운송세
    - 도박세
    - 항만유지세
    - 해운세
    - 환경세*
  - 연방주세*
  - 연방담배소비세*
  - 연방총포류세
- 지방세 (주세)
  - 판매세*
  - 주담배소비세*
  - 주酒稅*
  - 주연료세*

가. 販賣稅(Sales Tax)

納稅義務者는 최종소매단계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며 과세표준은 소매가격이다. 세율과 과세대상의 범위는 주별로 크게 다른데 1996년 1월 1일 현재 각 주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세율			
	기본	식료품	처방약	기타약
앨라배마	4	4	비과세	4
알래스카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애리조나	5	비과세	비과세	5
아칸소	4.5	4.5	비과세	4.5
캘리포니아[1)]	6	비과세	비과세	6
콜로라도	3	비과세	비과세	3
코네티컷	6	비과세	비과세	6
델라웨어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플로리다	6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조지아	4	4	비과세	4
하와이	4	4	비과세	4
아이다호	5	5	비과세	5
일리노이[2)]	6.25	1	1	1
인디애나	5	비과세	비과세	5
아이오와	5	비과세	비과세	5
캔자스	4.9	4.9	비과세	4.9
켄터키	6	비과세	비과세	6
루이지애나	4	4	비과세	4
메인	6	비과세	비과세	6
메릴랜드	5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매사추세츠	5	비과세	비과세	5
미시간	6	비과세	비과세	6
미네소타[2)]	6.5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미시시피	7	7	비과세	7
미주리	4.225	4.225	비과세	4.225
몬태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네브래스카	5	비과세	비과세	5
네바다	6.5	비과세	비과세	6.5
뉴햄프셔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뉴저지	6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뉴멕시코	5	5	5	5
뉴욕	4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노스캐롤라이나	4	4	비과세	4
노스다코타	5	비과세	비과세	5
오하이오	5	비과세	비과세	5
오클라호마	4.5	4.5	비과세	4.5
오리건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펜실베이니아	6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로드아일랜드	7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사우스캐롤라이나	5	5	비과세	5
사우스다코타	4	4	비과세	4
테네시	6	6	비과세	6
텍사스	6.25	비과세	비과세	6.25

(單位: %)

	세율			
	기본	식료품	처방약	기타약
유타	4.875	4.875	비과세	4.875
버몬트	5	비과세	비과세	5
버지니아	3.5	3.5	비과세	3.5[3)]
워싱턴	6.5	비과세	비과세	6.5
웨스트버지니아	6	6	비과세	6
위스콘신	5	비과세	비과세	5
와이오밍	4	4	비과세	4
워싱턴DC	5.75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註 : 1) 임시세율 0.5%가 포함된 세율임.
2) 세수의 1.25%(일리노이) 또는 0.5%(미네소타)는 지방소정부에 배분됨.
3) 1996년 6월 30일 이후부터 비과세
1. 하와이, 아이다호, 캔사스,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와이오밍에서는 식료품을 과세하지만 빈곤층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줌.

資料 : Internet, sso.org/fta/tax__stru.html

나. 聯邦小賣稅(Retail Excise Taxes, Federal)

연방소매세는 해당 과세대상 물품의 소매판매단계에 부과되는 연방소비세로서 納稅義務者는 소매단계의 판매자이다. 연방소매세는 사치품과 연료유를 주요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크게 사치세와 특수연료세, 자동차중량세의 세 가지가 있다.

1) 사치세(Luxury Tax)

과세대상은 승용차, 보트, 비행기, 보석, 모피이며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품목에 대해 설정된 기준금액 초과분이다. 세율은 10%이다.

과세대상별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다(1996년 현재).

(單位: %, 천달러)

과 세 대 상	세율	기준가격	비 고
승용차, 밴, 경트럭	10	34	중량 6천파운드 초과 및 사업용 비과세
보트	10	100	사업용 비과세
비행기	10	250	이용량의 80% 이상이 사업용이면 비과세
보석	10	10	
모피	10	10	

資料 : Internet, www.tns.lcs.mit.edu:80/uscode
Internal Revenue Service, *Excise Taxes for 1996,* Publication 510, US Dept. of Treasury, December 1995.

2) 특수연료세

과세대상은 경유, 특수모터연료, 항공연료와 내륙수로를 항해하는 선박에 사용되는 액체연료이며 과세대상의 양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내륙 수로를 통해 항해하는 (비사업용)선박이 소비하는 액체연료에 과세하는 세목은 내륙수로연료세라고 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센트/갤런)

	경유	특수모터연료	항공연료	내륙수로선박연료
세 율	24.4	18.4	21.9	20.1

註 : 연방제조자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함.
資料 : Internet, www.tns.lcs.mit.edu:80/uscode

3) 자동차중량세

과세대상은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트럭과 트레일러이다. 단, 과세대상의 부분품 가운데 아래에서 기술할 연방제조자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타이어는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1995년 현재).

(單位: %)

과 세 대 상	세율	비 고
중량 3만 3천파운드 초과 트럭 중량 2만 6천파운드 초과 트레일러	12 12	제조자세를 납부한 타이어에 해당하는 가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資料 : Internet, www.tns.lcs.mit.edu:80/uscode

다. 聯邦製造者稅(Manufacturers Excise Taxes, Federal)

연방제조자세는 특정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판매단계에 부과되는 연방소비세로서 納稅義務者는 해당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이다. 연방제조자세에는 연료낭비세, 타이어세, 석유세, 석탄세, 백신세, 오락기구세 등이 있다.

1) 연료낭비세(Gas Guzzlers Tax)

納稅義務者는 과세대상 차량의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이며 바퀴가 네 개 장착된 차량으로 중량 6천파운드 이하의 차량에 대해 과세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1995년 현재).

(單位: 달러/대)

과 세 대 상 (연비기준, MPG: Miles Per Gallon)			세 율
22.5	~		0
21.5	~	22.5	1,000
20.5	~	21.5	1,300
19.5	~	20.5	1,700
18.5	~	19.5	2,100
17.5	~	18.5	2,600
16.5	~	17.5	3,000
15.5	~	16.5	3,700
14.5	~	15.5	4,100
13.5	~	14.5	5,400
12.5	~	13.5	6,400
	~	12.5	7,700

資料 : Internet, www.tns.lcs.mit.edu:80/uscode

2) 타이어세

과세대상은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타이어이며 종량세 체계로 되어 있다. 세율은 중량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1994년 현재).

(單位: 파운드, 달러)

과세대상(중량기준)			세 액
	~	40	0
40	~	70	0.15 × (40파운드 초과 파운드 수)
70	~	90	4.50 + 0.30 × (70파운드 초과 파운드 수)
90	~		10.50 + 0.50 × (90파운드 초과 파운드 수)

資料 : Internet, www.tns.lcs.mit.edu:80/uscode

3) 석유세

제조·생산 또는 수입단계에서 과세되는 연방제조자세로서 納稅義務者는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이다.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1996년 현재).

(單位: 센트/갤런)

	휘 발 유	경　　유	항공연료
세　율	18.4	24.4	21.9

資料 : Internet, www.tns.lcs.mit.edu:80/uscode

4) 석탄세

美國 내 광산에서 채굴된 석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연방제조자세로서 納稅義務者는 광산채굴자이다. 세율은 지하광산과 지상광산의 경우 각각 1.10달러/톤, 0.55달러/톤이다. 단, 톤당 세액은 석탄가격의 4.4%를 상한으로 한다.

5) 백신(Vaccine)세, 오락기구세

納稅義務者는 해당 과세대상의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이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백신稅의 稅率(1994년 현재)

(單位: 달러/1회분)

	DPT	DT	MMR	Polio
세　율	4.56	0.06	4.44	0.29

資料 : Internet, www.tns.lcs.mit.edu:80/uscode

오락기구세의 과세대상은 낚시기구와 활 및 화살, 소화기(총포류)이며 세율은 낚시기구와 활 및 화살의 경우 10%, 소화기(총포류)의 경우 10~11%이다.

라. 施設利用稅(Facilities and Services Taxes)

시설이용세는 통신세와 항공운송세로 구분된다. 통신세는 전화서비스료가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3%이며 사용자가 부담한다. 항공운송세는 항공여객, 세관이용 등의 사용자에 부과되는 것으로 세율은 이용요금의 10%이다.

마. 環境稅(Environmental Tax)

納稅義務者는 해당 과세대상물품의 정유업자,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이며 과세대상은 석유류, 즉 정유회사에 입고되는 원유 및 美國으로 반입되는 석유제품과 일부의 화학물질, 수입품 가운데 일부의 품목(주로 화학물질)이다.

세율은 정유회사에 입고되는 원유 및 美國으로 반입되는 석유제품의 경우 14.7%, 화학물질의 경우 0.22~4.87달러/톤이다.

이 외에도 연방소비세로서 도박세, 항만유지세 등이 있다.

사. 州燃料稅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휘발유와 알콜을 혼합한 연료인 개스홀이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1996년 1월 1일 현재).

(單位: 센트/갤런)

	휘발유			경 유			개스홀		
	연료세	부가세	계	연료세	부가세	계	연료세	부가세	계
앨라배마	16.0	2.0	18.0	17.0	2.0	19.0	16.0	2.0	18.0
알래스카	8.0		8.0	8.0		8.0	0.0		0.0
애리조나	18.0		18.0	18.0		18.0	18.0		18.0
아칸소	18.5	0.2	18.7	18.5	0.2	18.7	18.5	0.2	18.7
캘리포니아	18.0		18.0	18.0		18.0	18.0		18.0
콜로라도	22.0		22.0	20.5		20.5	22.0		22.0
코네티컷	36.0		36.0	18.0		18.0	35.0		35.0
델라웨어	23.0		23.0	22.0		22.0	23.0		23.0
플로리다	4.0	8.3	12.3	4.0	8.3	12.3	4.0	8.3	12.3
조지아	7.5		7.5	7.5		7.5	7.5		7.5
하와이	16.0		16.0	16.0		16.0	16.0		16.0
아이다호	25.0	1.0	26.0	25.0	1.0	26.0	22.9	1.0	23.9
일리노이	19.0		19.0	21.5		21.5	19.0		19.0
인디애나	15.0		15.0	16.0		16.0	15.0		15.0
아이오와	20.0		20.0	22.5		22.5	19.0		19.0
캔사스	18.0		18.0	20.0		20.0	18.0		18.0
켄터키	15.0	1.4	16.4	12.0	1.4	13.4	15.0	1.4	16.4
루이지애나	20.0		20.0	20.0		20.0	20.0		20.0
메인	19.0		19.0	20.0		20.0	19.0		19.0
메릴랜드	23.5		23.5	24.25		24.25	23.5		23.5
매사추세츠	21.0		21.0	21.0		21.0	21.0		21.0
미시간	15.0		15.0	15.0		15.0	15.0		15.0
미네소타	20.0		20.0	20.0		20.0	20.0		20.0
미시시피	18.0	0.4	18.4	18.0	0.4	18.4	18.0	0.4	18.4
미주리	17.0	0.05	17.05	17.0	0.05	17.05	15.0	0.05	15.05
몬태나	27.0		27.0	27.75		27.75	27.0		27.0
네브래스카	25.7	0.3	26.0	25.7	0.3	26.0	25.7	0.3	26.0
네바다	24.0		24.0	27.0		27.0	24.0		24.0
뉴햄프셔	18.0	0.7	18.7	18.0	0.7	18.7	18.0	0.7	18.7
뉴저지	10.5		10.5	13.5		13.5	10.5		10.5
뉴멕시코	17.0	1.0	18.0	18.0	1.0	19.0	17.0	1.0	18.0
뉴욕	8.0		8.0	8.0		8.0	8.0		8.0
노스캐롤라이나	22.0		22.0	22.0		22.0	22.0		22.0
노스다코타	20.0		20.0	20.0		20.0	20.0		20.0
오하이오	22.0		22.0	22.0		22.0	22.0		22.0
오클라호마	16.0	1.0	17.0	13.0	1.0	14.0	16.0	1.0	17.0
오리건	24.0		24.0	24.0		24.0	24.0		24.0
펜실베이니아	12.0	10.35	22.35	12.0	10.35	22.35	12.0	10.35	22.35
로드아일랜드	28.0	1.0	29.0	28.0	1.0	29.0	28.0	1.0	29.0
사우스캐롤라이나	16.0		16.0	16.0		16.0	16.0		16.0
사우스다코타	18.0		18.0	18.0		18.0	16.0		16.0
테네시	20.0	1.0	21.0	17.0	1.0	18.0	20.0	1.0	21.0
텍사스	20.0		20.0	20.0		20.0	20.0		20.0
유타	19.0	0.5	19.5	19.0	0.5	19.5	19.0	0.5	19.5
버몬트	15.0	1.0	16.0	16.0	1.0	17.0	15.0	1.0	16.0
버지니아	17.5		17.5	16.0		16.0	17.5		17.5
워싱턴	23.0		23.0	23.0		23.0	23.0		23.0
웨스트버지니아	20.5	4.85	25.35	20.5	4.85	25.35	20.5	4.85	25.35

	휘발유			경 유			개스홀		
	연료세	부가세	계	연료세	부가세	계	연료세	부가세	계
위스콘신	23.7		23.7	23.7		23.7	23.7		23.7
와이오밍	8.0	1.0	9.0	8.0	1.0	9.0	8.0	1.0	9.0
워싱턴 DC	20.0		20.0	20.0		20.0	20.0		20.0
연방	18.4		18.4	24.4		24.4	13.0		13.0

註: 1. 개스홀은 가솔린과 알콜이 혼합된 연료임.
2. 부가세의 경우, 앨라배마와 미주리는 검사비, 아칸소, 유타는 환경부가금(Environmental surcharge), 아이다호는 청정수세, 켄터키와 미시시피, 오클라호마는 환경비(Environmental fee), 네브래스카는 석유비(petroleum fee), 뉴햄프셔는 석유청소비(Oil discharge cleanup fee), 뉴멕시코는 석유부하비(petroleum loading fee), 펜실베이니아는 석유면허세(Oil franchise tax), 로드아일랜드와 와이오밍은 욕망세(LUST tax), 테네시는 특별석유세(Special petroleum tax), 버몬트는 석유청소비(petroleum cleanup fee)임.
3. 판매세가 과세되는 주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뉴욕, 웨스트버지니아 등임.

資料 : Internet, sso.org/fta/tax_stru.html

아. 담배消費稅

美國의 담배소비세는 연방세와 주세의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 납부방식 및 納稅義務者는 다음과 같다.

	연 방 세	주 세
납 부 방 식	납세신고방식	납세증지의 구매·부착
납세의무자	제조자 또는 도매상	담배배분업자

주담배소비세와 연방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州담배消費稅 稅率(1996년 1월 1일)

(單位 : 센트/갑)

	세율		세율		세율
앨라배마	16.5	루이지애나	20	오하이오	24
알래스카	29	메인	39	오클라호마	23
애리조나	58	메릴랜드	36	오리건	38
아칸소	31.5	매사추세츠	51	펜실베이니아	31
캘리포니아	37	미시간	75	로드아일랜드	61
콜로라도	20	미네소타	48	사우스캐롤라이나	7
코네티컷	50	미시시피	18	사우스다코타	33
델라웨어	24	미주리	17	테네시	13
플로리다	33.9	몬태나	18	텍사스	41
조지아	12	네브래스카	34	유타	26.5
하와이	60	네바다	35	버몬트	44
아이다호	28	뉴햄프셔	24	버지니아	2.5
일리노이	44	뉴저지	40	워싱턴	81.5
인디애나	15.5	뉴멕시코	21	웨스트버지니아	17
아이오와	36	뉴욕	56	위스콘신	44
캔사스	24	노스캐롤라이나	5	와이오밍	12
켄터키	3	노스다코타	44	워싱턴 DC	65

資料 : Internet, sso.org/fta/tax__stru.html

聯邦담배消費稅 稅率

(單位: 달러)

	궐련	시가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파이프 담배
과세단위	천개비당		파운드당		
세 율	12.00(25.20)	11.25(12.75%)	0.12	0.36	0.675

註 : 1. ( ) 안의 수치는 1천개비당 중량이 3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의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임.
2. 시가의 경우 천개비당 세액이 30달러를 최고한도로 하고 있음.

資料 : 美國 BATF

자. 酒稅

과세체계는 종량세이며 연방주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달러)

주 종	과 세 단 위	세 율
증류주	proof gallon	13.50
수입향수(증류주 함유)	wine gallon	13.50
스틸와인		
• 알콜농도 14% 이하	wine gallon	1.07
• 알콜농도 14% 초과 21% 이하	wine gallon	1.07
• 알콜농도 21% 초과	wine gallon	3.15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wine gallon	3.40
인공탄산와인	wine gallon	3.30
맥주	barrel	18.00

註 : 1. 1년에 2백만 배럴 이하를 양조하는 제조업자의 경우 6만 배럴까지는 7%로 과세함.
2. 과세단위는 증류주의 경우 알콜 농도가 50% 이상이면 proof gallon, 24% 초과 50% 미만인 경우 wine gallon이며, 와인의 경우 알콜 농도가 24% 이하이면 wine gallon(24% 초과의 경우 증류주로 과세)임.

州酒稅 稅率(1996년 1월 1일 현재)

(單位: 달러/갤런)

	스 피 릿		와 인		맥 주	
	세율	판매세	세율	판매세	세율	판매세
앨라배마	A	○	1.70	○	0.53	○
알래스카	5.60	n.a.	0.85	n.a.	0.35	n.a.
애리조나	3.00	○	0.84	○	0.16	○
아칸소	2.50	○	0.75	○	0.23	○
캘리포니아	3.30	○	0.20	○	0.20	○
콜로라도	2.28	○	0.43	○	0.08	○
코네티컷	4.50	○	0.60	○	0.19	○
델라웨어	5.46	n.a.	0.90	n.a.	0.16	n.a.
플로리다	6.50	○	2.25	○	0.48	○
조지아	3.79	○	1.51	○	0.48	○
하와이	5.81	○	1.32	○	0.90	○
아이다호	A	○	0.45	○	0.15	○

	스피릿		와인		맥주	
	세율	판매세	세율	판매세	세율	판매세
일리노이	2.00	○	0.23	○	0.07	○
인디애나	2.68	○	0.47	○	0.12	○
아이오와	A	○	1.75	○	0.19	○
캔자스	2.50	×	0.30	×	0.18	3.2~4.25
켄터키	1.92	○	0.50	○	0.08	○
루이지애나	2.50	○	0.11	○	0.32	○
메인	A	○	0.60	○	0.35	○
메릴랜드	1.50	○	0.40	○	0.09	○
매사추세츠	4.05	○	0.55	○	0.11	○
미시간	A	○	0.51	○	0.20	○
미네소타	5.03	8.5%	0.30	8.5%	0.15	8.5%
미시시피	A	○	0.35	○	0.43	○
미주리	2.00	○	0.36	○	0.06	○
몬태나	A	n.a.	1.06	n.a.	0.14	n.a.
네브래스카	3.00	○	0.75	○	0.23	○
네바다	2.05	○	0.40	○	0.09	○
뉴햄프셔	A	n.a.	B	n.a.	0.35	n.a.
뉴저지	4.40	○	0.70	○	0.16	○
뉴멕시코	6.06	○	1.70	○	0.41	○
뉴욕	6.44	○	0.19	○	0.21	○
노스캐롤라이나	A	○	0.79	○	0.48	○
노스다코타	2.50	7%	0.50	7%	0.16	7%
오하이오	A	○	0.32	○	0.18	○
오클라호마	5.56	○	0.72	○	0.40	○
오리건	A	n.a.	0.67	n.a.	0.08	n.a.
펜실베이니아	A	○	B	○	0.08	○
로드아일랜드	3.75	○	0.60	○	0.10	○
사우스캐롤라이나	2.72	○	0.90	○	0.77	○
사우스다코타	3.93	○	0.93	○	0.27	○
테네시	4.00	○	1.10	○	0.13	○
텍사스	2.40	○	0.20	○	0.19	○
유타	A	○	B	○	0.35	○
버몬트	A	×	0.55	○	0.27	×
버지니아	A	○	1.51	○	0.26	○
워싱턴	A	○	0.87	○	0.15	○
웨스트버지니아	A	○	1.00	○	0.18	○
위스콘신	3.25	○	0.25	○	0.06	○
와이오밍	A	○	B	○	0.02	○
워싱턴 DC	1.50	○	0.30	○	0.09	○

註: 1. A라고 표시한 18개 주는 주정부가 직접 스피릿을 취급하며 수입은 각종 세금, 비용, 그리고 순익 등으로부터 나타남.
2. B라고 표시한 주는 모두 주정부가 운영하는 판매점에서만 판매하며 수입은 각종 세금, 비용, 그리고 순익 등으로부터 나타남.

資料 : Internet, sso.org/fta/tax_stru.html

2. 英國

가. 附加價値稅

納稅義務者는 과세공급자 또는 과세공급을 의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자이다. 즉,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의도하는 자로서 개인과 파트너쉽(partnership),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 기타의 단체를 포괄한다.

기본세율은 17.5%이며 기본세율의 25/100, 즉 기본세율의 상하 4.37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세액산정은 매출세액(output tax)에서 매입세액(input tax)을 차감하는 방식을 따른다.

비과세·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영세율은 매출세액 면제 및 매입세액의 환급을 허용하는 것이며, 비과세는 매출세액은 면제해주지만 매입세액의 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 세 율	- 식료품, 상하수도, 책, 맹인 및 장애자용 용품, 가계 및 자선단체용 연료 및 전기, 거주용 빌딩의 건설, 방호빌딩, 특정한 국제서비스, 이동주택, 금, 지폐, 아동의류, 특수의류(근로자 보호용 등), 수출, 연료 및 동력, 공공교통기관, 의약품 및 의료기구, 특정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등에 적용
비 과 세	-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우편, 도박, 복권, 교육, 의료 및 복지서비스, 스포츠 및 예술활동 등에 적용
면 세	- 1994년 5월 31일 현재 연간 매출액이 4만 5천파운드 이하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납세의무가 면제

나. 담배消費稅

과세대상은 궐련 및 기타 담배제품이며 종량세와 종가세가 혼합된 혼합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파운드/천개비, 파운드/kg)

	궐 련		엽궐련	각 련	기 타
	종가세율	종량세액	종 량 세 액		
세율	20	57.64	85.61	85.94	37.64

資料 : 김진수 · 성명재, 『담배관련세제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Ⅱ)』, 한국조세연구원, 1994.

담배에 대해서는 17.5%의 부가가치세로 과세된다. 세포함 소매가격 대비 세율은 약 14.89%이다.

궐련 1갑의 경우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세포함 소매가격 = 제조판매원가(유통이윤 포함)
+ 종량세(£1.1528)
+ 종가세(세포함 소매가격의 20%)
+ 부가가치세(세포함 소매가격의 약 14.89%)

다. 酒稅

종량세로서 양조장 또는 보세창고로부터 인출시 과세한다.

맥 주	발효 전 액체인 맥아즙에 대해 1000° gravity 초과 1° 당 1.108파운드/100리터로 세액을 결정(6% 공제(deduction)를 허용)
증 류 주	알콜 100리터당 1,981파운드 과세
와 인	알콜도수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와인의 주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파운드/100리터)

알 콜 도 수	~ 15	15 ~ 18	18 ~ 22	스파클링 와인
세 율	125.96	217.25	250.59	208.00

기타 주류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파운드/100리터)

	세 율		세 율
cider and perry	21.32	쿨러(알콜함량, %) 1.2 ~ 2.1	12.60
		2.0 ~ 3.0	20.99
		3.0 ~ 4.0	29.39
		4.0 ~ 5.0	37.80
		5.0 ~ 5.5	46.19

라. 炭化水素稅(Hydrocarbon Tax)

英國에서는 석유제품에 대해 탄화수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체계는 종량세 구조이다.

(單位: %, 파운드/리터)

과 세 대 상	세 율	과 세 대 상	세 율
휘발유 유연(고급)	0.3912	산업용 경질유	0.0214
무연(고급)	0.3430	가정용 경질유	0.03147
경유	0.3130	산업용 중질유	16.7
		발전용 중질유	23.3

마. 自動車特別稅(乘用車特別稅)

과세대상은 신차 및 수입차이며 과세표준은 도매가격이고 세율은 10%이다.

이 외에도 도박유희세 등이 있다.

3. 獨 逸

가. 附加價値稅

納稅義務者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세율은 15%이다. 稅額算定方式은 英國과 동일하다.

비과세·감면의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경감세율	음식료품, 책, 신문, 의약품, 문화서비스, 복사, 여객운송
영 세 율	수출 또는 수출품의 임가공, EC내 거래, 해상운송 및 선박운송, 물건의 월경운송 또는 국제철도에 의한 화물운송, 중앙은행에 의한 금의 공급, 이상의 거래의 중개
면 세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보험, 기타 복지·공익사업
소규모 사업자 면세제도	전년도 과세매출액이 2만 5천마르크 이하, 또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10만마르크 이하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됨.

나. 담배消費稅

과세대상은 궐련, 시가(가는 시가 포함), 각련, 파이프 담배이

며 시가의 경우 종가세체계로 되어 있다. 나머지 담배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합된 혼합세 체계로 되어 있다. 종가세와 종량세의 합계가 최소세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세를 담배소비세액으로 결정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pf/개비, pf/kg)

	궐련 (개비당)			시가 (kg당)		각련 (kg당)			파이프 담배 (kg당)		
	종량세	종가세	최소세	종가세	최소세	종량세	종가세	최소세	종량세	종가세	최소세
세율	8.3	24.8	11	5	3.1	30.21	18.12	45	5.5	22	21

註 : 1. 종가세율은 소매가격 대비 비율임.
2. 최소세는 담배소비세의 세액의 하한으로 만약 단위당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세를 해당 제품의 세액으로 함.
資料 : 김진수 · 성명재, 『담배관련세제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Ⅱ)』, 한국조세연구원, 1994.

稅額算定方式(궐련 1개비의 경우)은 다음과 같다.

세포함 소매가격 = 제조판매원가(유통이윤 포함)
+ 종량세(pf8.3)
+ 종가세(세포함 소매가격의 24.8%)
+ 부가가치세(세포함 소매가격의 약 13.04%).

다음 항목들은 비과세 · 감면된다.

- 검사에 사용되는 담배
- 세무서 보관창고에서 창고책임자 또는 담당공무원에 의해 검사목적으로 소모되는 담배
- 견본 관람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설치된 담배
- 감독하에서 폐기처분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담배
- 흡연용도와 담배 상품 제조 이외의 상업적 목적에 적용되는 담배
- 학술적인 실험과 검사에 사용되는 제조담배

다. 酒稅

納稅義務者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이며 과세대상은 맥주, 증류주, 와인이다. 종량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와인 중 스틸와인(still wine)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맥주는 제조장(양조장)별 연간 생산량(즉 연간 생산규모)과 알콜도수에 따라 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십만리터, 마르크/100리터)

	세 율		세 율
맥주(양조장별 연간 생산규모)		증류주	2,550.00
~ 2	12.00	와인	
2 ~ 10	12.30	스틸와인(still wine)	비과세
10 ~ 20	12.60	스파클링 와인	266.00
20 ~ 30	12.90		
30 ~ 60	13.20		
60 ~ 90	13.80		
90 ~ 120	14.40		
120 ~	15.00		
알콜(알콜도수 5% 기준)	14.26		

註 : 1. 위의 세율은 알콜도수 5%(original gravity 11~16°)기준임.
2. 알콜도수 1.2%(original gravity 7° 이하) 맥주의 세율은 위의 세율의 1/2 경감
3. 알콜도수 3.1%(original gravity 7~11°) 맥주의 세율은 위의 세율의 1/4 경감
4. 알콜도수 6.2%(original gravity 16° 이상) 맥주의 세율은 위의 세율의 1/2 가산

라. 鑛油稅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등의 석유제품이며 종량세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긴급저장기금(Emergency Storage Fund)에 대한 기여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기금 역시 종량세 구조로 되어 있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마르크/리터, 마르크/천리터[경질유], 마르크/톤[중질유])

	세 율		세 율
휘발유 (유연 - 고급)	1.08	경질유(산업용)	80.00
(무연)	0.98	(가정용)	133.30
	(0.0072)		(7.81)
수송용 경유	0.62	중질유(산업용)	30.00
	(0.0066)	(가정용)	55.00
			(7.30)

註 : ( ) 안의 수치는 긴급저장기금에 대한 기여금임.

마. 競馬福券稅

納稅義務者는 행사주관자이며 과세표준은 마권 및 복권 매입액이고 세율은 약 16.67%이다.

바. 커피稅

納稅義務者는 생산자 및 수입업자이고 과세대상은 볶은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로서 세율은 볶은 커피의 경우 4.30마르크/kg,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 9.35마르크/kg이다.

4. 프랑스

가. 附加價値稅

納稅義務者는 프랑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의도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등을 포함한다. 과세대상은 프랑스 국내에

서 기업체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대가로서 수입재화를 포함한다.

세율은 20.6%로서 1995년 8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종전은 18.6%였다.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승합차 및 관련경비, 대중교통수단, 호텔, 레스토랑 요금, 200프랑 이상의 선물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비과세·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5.5% 할인세율	- 물, 비알콜음료, 대부분의 식료품, 의약품, 서적, 대중교통수단, 영화, 콘서트 등의 상영, 호텔용역 제공(단, 별 4개짜리 사치성호텔은 제외)
2.1% 특별할인 세율	-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의약품의 판매, 신문, 독창적인 연극·뮤지컬·콘서트 등의 140회까지의 공연, 비납세 의무자에 대한 동물의 판매, TV와 라디오 수신료
영세율	- 국제무역에 관련된 각종 서비스(물품의 수출입, 수출용품의 가공, 수리·유지 및 보세창고에서의 보관), 수출에 수반된 보험 또는 여신업무의 제공
비과세거래(면세)	- 거주용 부동산의 리스, 금융서비스, 법률서비스, 장애자협회 판매재화, 특정 중고품, 우유, 교육, 의료, 특정 어업제품, 재활용품, 저자·작곡자·조각가의 서비스, 도박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협의과세제도	- 연간매출액이 50만프랑 미만인 재화 공급사업자 또는 15만프랑 미만인 용역 공급사업자는 과세표준을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한 과세매출액을 감정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함.
간이과세제도	- 연간 매출액 규모가 3백만프랑 미만인 재화의 공급사업자 또는 90만프랑 미만인 용역 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의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함. -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신 정상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음.

면세사업자	- 연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이 1,350프랑 미만인 사업자들은 세액이 면제됨.
세액감면제도	- 연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이 5,401프랑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을 특별감면 받을 수 있음. 단, 기능장인의 경우에는 연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이 2만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액을 특별감면 받을 수 있음.

나. 담배消費稅

프랑스에서는 담배에 대해 담배消費稅와 附加價値稅가 과세된다. 이 외에도 농업부담금(BAPSA)이라는 다소 독특한 세금도 함께 과세되고 있다. 농업부담금은 附加價値稅와 동일한 법칙, 법령, 부령에 따라 결정·징수된다. 세포함 소매가격 대비 附加價値稅(세율 20.60%)와 농업부담금(세율 0.74%)의 세율은 각각 17.08%와 0.61%이다.

과세체계는 궐련의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의 혼합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제품의 경우에는 종가세의 체계로만 과세되고 있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 율
궐련	종가세가 54.5%이고 종량세는 천개비당 33.246프랑으로 총담배소비세의 부담률은 소매가격의 58.3%
각련	51.00%
파이프 담배	46.74%
냄새맡는 담배	40.20%
시가	28.86%
씹는 담배	27.47%

註 : 세포함 소매가격 대비 세율임.
資料 : 김진수·성명재, 『담배관련세제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Ⅱ)』, 한국조세연구원, 1994.

稅額算定方式은 다음과 같다.

(單位: %, 프랑)

	궐 련	엽 궐 련	파 이 프 담 배	각 련	냄새맡는 담 배	씹는담배
소매가격[1]	100	100	100	100	100	100
판매수익	8	8	8	8	8	8
부가가치세[2]	17.08	17.08	17.08	17.08	17.08	17.08
농업부담금	0.61	0.61	0.61	0.61	0.61	0.61
종가세	54.50	28.86	46.74	51.00	40.20	27.47
종량세[3]	33.2456	-	-	-	-	-

註 : 1) 소매가격을 100%로 환산한 것임.
2)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소매가격 대비 비율임.
3) 종량세는 궐련 천개비당 가격임.
資料 : 김진수・성명재, 『담배관련세제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Ⅱ)』, 한국조세연구원, 1994.

다. 酒稅

주세는 맥주, 증류주, 와인 모두 양조장에서 반출될 때 과세되며 納稅義務者는 제조자, 생산자, 수입업자이다.

과세체계는 종량세이고 동일한 맥주라 하더라도 original gravity와 용기의 크기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증류주에 대해서는 생산원료에 따라 정의되는 종류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체계는 순수알콜의 함유량에 따라 차등화하는 체계이다. 와인은 natural sweet 와인, 샴페인, fortified 와인, 기타 와인으로 구분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프랑/100리터)

	세 율
맥주 (알콜도수)	
~ 1°2	3.50
1°2 ~ 4°6 또는 0.65~1리터 용기 포장 제품	11.00
4°6 ~ (0.65리터 이하 또는 1리터 초과 용기 포장 제품)	19.50
증류주(순수알콜 100리터당 세율)	
럼, creme de cassis	4,495.00
와인 base의 aperitifs	6,930.00
브랜디와 곡주	7,810.00
와인	
natural sweet 와인과 샴페인	54.80
fortified 와인	6,930.00
기타	22

라. 石油產品 內國消費稅

석유류에 석유산품 내국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기타 탄화수소기금(Hydrocarbon Fund)과 IFP에 대한 기여금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만 산업용, 상업용, 국제교통수단으로 소비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100% 환급하고 있다.

과세체계는 종량세이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프랑/리터, 프랑/톤[중질유])

	세 율		세 율
휘발유 (유연)	3.8645	경질유(산업용)	0.494
(무연)	3.6030	(가정용)	0.1554
경유	2.158	중질유(산업용 및 가정용)	0.1147

5. 日本

가. 消費稅(附加價値稅)

納稅義務者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 등 각 단계의 사업자와 보세지역으로부터 외국화물을 인출하는 수입자이며 국내거래의 경우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행한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도 포함한다. 수입거래의 경우 과세화물을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출한 자이다.

과세대상은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한 자산의 양도(사업자로서 대가를 받고 행한 자산의 양도, 자산의 대부 및 노동의 제공),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출한 외국화물이다.

과세표준은 국내거래의 경우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로서 소비세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개별소비세액은 포함한다. 외국화물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CIF) + 개별소비세 + 관세이다.

현재 세율은 3%이나 1997년 4월 1일부터 지방소비세 1%를 포함하여 세율이 5%로 인상될 예정이다.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지만, 과세매출비율(과세매출/총매출)이 95% 미만인 경우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부분의 매입세액만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방식은 개별대응방식과 일괄비례분 방식 중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과세매입 사실의 장부기록 및 보존 또는 과세매입 사실을 증명하는 청구서 등을 보존하는 것이 요청된다. 1997년 4월 1일부터는 장부만이 아니라 청구서 등(invoice) 쌍방의 보존을 요건으로 하는 청구서(invoice) 방식으로 개정된다.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확정신고서를 제출

하고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 소비세액이 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3, 6, 9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60만엔 초과 500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영세율과 면세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영세율	- 국내로부터 수출되는 자산의 양도 또는 대부 - 외국화물의 양도 또는 대부 - 국내와 국외 사이의 여객이나 화물의 수송, 국제통신 또는 국제우편 - 선박운항사업자 등에 대한 외항선박 등의 양도, 대부, 또는 수리 - 국제수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등의 양도, 대부, 수리로 선박운항사업자 등에 대한 것 - 외항선박 등의 진행, 유도, 기타 입출항 또는 이착륙의 보조 - 외국화물의 하역, 운송, 보관, 검수 또는 감정 등의 노동의 제공 - 비거주자에 대한 일정의 무형고정자산의 양도 또는 대부 - 비거주자에 대한 노동의 제공
면 세	- 소비세의 성격으로부터 비과세하는 것 • 토지의 양도 및 대부 • 유가증권 등 및 지불수단의 양도 • 대부금 등의 이자, 보험료 등 • 우편절수류, 인지 및 증지의 양도 • 물품절수 등의 양도 • 행정수수료 등, 국제우편거래, 외국환거래 등 - 정책적 배려로 비과세하는 것 • 공적인 의료보장제도에 관계되는 요양, 의료, 시설요양 등 • 사회복지사업 및 갱생보호를 행하는 사업으로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 조산에 관계되는 자산의 양도 • 매장료 및 화장료를 대가로 하는 노동이 제공 • 일정 신체장애자용 물품의 양도, 대부 등 • 학교교육법상의 소·중·고등학교, 유치원, 전수학교, 각종학교 및 직업훈련학교 등의 수업료, 입학금, 시설설비 등에 관계되는 노동의 제공 • 학교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과용도서의 양도 • 주택의 대부

日本은 사업자의 납세사무부담을 배려하여 사업자면세점 제도, 한계공제제도, 간이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대상 및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매출액 범위	비 고
면세사업자 제도	3천만엔 이하	• 소비세 납세의무 면제 • 매입세액 공제 불허
한계공제 제도	5천만엔 미만	• 산출세액에서 한계공제세액 공제후 세액 납부 • 납부세액 = 산출세액×(매출액—3천만엔) ÷ 2천만엔 • 1997년 4월 1일부터 폐지
간이과세 제도	4억엔 이하	• 매출세액에 간주매입률을 곱한 금액을 과세 • 간주매입률: 도매업 90%, 소매업 80%, 제조업 70%, 기타 60% • 1997년 4월 1일부터 매출기준 2억엔으로 인하

나. 담배稅(國담배稅, 地方담배稅)

納稅義務者는 다음과 같다.

國담배稅	제조장 밖으로 옮겨진 제조담배 : 제조담배의 제조자 보세지역에서 인수된 제조담배 : 보세지역으로부터의 인수자
地方담배稅	제조담배에 대해 소매판매업자 또는 소비자 등에 매도하거나 소비 등을 한 제조담배의 제조자, 특정판매업자 및 도매판매업자

國담배稅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의 제조장에서 밖으로 옮겨진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된 제조담배이며 지방담배세의 과세대상은 소매판매업자 또는 소비자 등에 매도 등을 한 제조담배

이다.

과세표준은 궐련의 갑수로서 파이프담배 및 엽궐련은 1그램을 1갑으로, 각련, 가루담배는 2그램을 1갑으로 환산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엔/천개비, 엔/kg, %)

<table>
<tr><th rowspan="3"></th><th colspan="3">담배세 (국세)</th><th colspan="3">담배세 (지방세)</th></tr>
<tr><th colspan="2">개정전 (담배소비세)</th><th rowspan="2">현 행</th><th colspan="2">개정전 (담배소비세)</th><th rowspan="2">현 행</th></tr>
<tr><th>종 가 세
부분세율</th><th>종 량 세
부분세액</th><th>종 가 세
부분세율</th><th>종 량 세
부분세액</th></tr>
<tr><td>궐 련</td><td>23.0</td><td>1,032</td><td rowspan="4">3,126</td><td rowspan="5">22.4
(도부현:
8.1
시정촌:
14.3)</td><td rowspan="5">1,000
(도부현:
360
시정촌:
640)</td><td rowspan="4">3,126
(도부현:
1,129
시정촌:
1,997)</td></tr>
<tr><td>파이프담배</td><td>17.9</td><td>692</td></tr>
<tr><td>엽 궐 련</td><td>24.8</td><td>1,757</td></tr>
<tr><td>각 련
가루 담배</td><td>1.8</td><td>130</td></tr>
<tr><td>종 전 의
3 등 급
궐 련</td><td>9.9</td><td>359</td><td>1,484</td><td>1,484
(도부현:536
시정촌:948)</td></tr>
</table>

註 : 1. 현행의 파이프 담배와 잎담배의 세율은 1그램을 1개비로, 가루 담배와 각련 등의 제조담배 세율은 2그램을 1개비로 환산해서 계산함.
2. 종전의 3등급 궐련에 대한 지방의 담배세율은 도부현이 536엔, 시정촌이 948엔이었음.
3. 지방세분 담배세 이외에 국세의 담배세 수입의 4분의 1은 교부금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이전됨.

資料 : 대장성

다. 酒稅

納稅義務者는 주류 제조자이며 과세대상은 알콜분 1도 이상의 주류이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종류별, 품목별 및 알콜분에 따라 종량세 체계로 결정된다.

<table>
<tr><th>종 류</th><th colspan="2">품 목</th><th>알콜분(도)</th><th>종량세율(엔/kl)</th></tr>
<tr><td>청주</td><td colspan="2"></td><td>15.0</td><td>140,500</td></tr>
<tr><td>합성청주</td><td colspan="2"></td><td>15.0</td><td>79,300</td></tr>
<tr><td rowspan="2">소주</td><td colspan="2">갑류</td><td>25.0</td><td>155,700</td></tr>
<tr><td colspan="2">을류</td><td>25.0</td><td>102,100</td></tr>
<tr><td>미림</td><td colspan="2"></td><td>13.5</td><td>21,600</td></tr>
<tr><td>맥주</td><td colspan="2"></td><td></td><td>222,000</td></tr>
<tr><td rowspan="2">과실주류</td><td colspan="2">과실주</td><td></td><td>56,500</td></tr>
<tr><td colspan="2">감미과실주</td><td>12.0</td><td>98,600</td></tr>
<tr><td rowspan="2">위스키류</td><td colspan="2">위스키</td><td rowspan="2">40.0</td><td rowspan="2">982,300</td></tr>
<tr><td colspan="2">브랜디</td></tr>
<tr><td rowspan="2">spirit류</td><td colspan="2">spirit</td><td rowspan="2">37.0</td><td rowspan="2">367,300</td></tr>
<tr><td colspan="2">원료용 알콜</td></tr>
<tr><td>리큐르</td><td colspan="2"></td><td>12.0</td><td>98,600</td></tr>
<tr><td rowspan="3">기타 주류</td><td rowspan="2">발효주</td><td>맥아 67% 이상</td><td></td><td>222,000</td></tr>
<tr><td>맥아 25～67%</td><td></td><td>152,700</td></tr>
<tr><td colspan="2">기타</td><td>12.0</td><td>98,600</td></tr>
</table>

라. 其他 個別消費稅

기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세 율
휘발유세	휘발유	48,600엔/kl
지방도로세	휘발유	5,200엔/kl
석유가스세	자동차용 석유가스	17.50/kl
자동차중량세	승용차, 트럭, 버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중량,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 상이함. 예: 자가용승용차 - 6,300엔/0.5톤 · 년
항공기연료세	항공기 연료	26,000엔/kl
전원개발촉진세	일반 전기사업자의 판매 전기	445엔/1,000kwh
석유세	원유, 수입석유제품 천연가스 수입LPG	2,040엔/kl 720엔/톤 670엔/톤

1) 휘발유세 및 지방도로세

휘발유에 과세되며 세율은 휘발유 1kl당 휘발유세 4만 8,600엔, 지방도로세 5,200엔, 합계 5만 3,800엔인 종량세이다. 휘발유세는 국가, 지방도로세는 지방의 도로정비재원으로 충당된다.

2) 석유가스세

자동차용 석유가스용기에 충전되는 석유가스에 과세되며 세율은 석유가스 1kg당 17엔 50전의 종량세이다. 세수는 국가 및 지방의 도로정비재원으로 사용된다.

3) 자동차중량세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동차와 사용신청을 한 경자동차에 과세

한다. 세율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나 자동차중량 등에 의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1년인 자가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중량 0.5톤당 연간 6,300엔이다. 세수의 4분의 3은 국가의 일반재원이고, 4분의 1은 시·정·촌의 도로특정재원으로 양여된다.

4) 항공기연료세

항공기에 적재하는 항공기연료에 과세하며, 항공기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율은 1kl당 2만 6천엔의 종량세이며 국가의 공항정비비 및 공항관계지방공공단체의 공항대책비로 사용된다.

5) 전원개발촉진세

일반전기사업자(소위 전력회사)의 판매전기에 과세하며 세율은 판매전기 1,000kwh당 445엔이고 세수는 전원입지대책 및 전원다양화대책에 사용된다.

6) 석유세

원유, 수입석유제품 및 가스상탄화수소에 과세하며 세율은 원유 및 수입석유제품은 1kl당 2,040엔, 천연가스는 1톤당 720엔, 수입LPG는 1톤당 670엔의 종량세이다. 세수는 석유 및 에너지 수급구조고도화 대책에 사용된다.

6. 臺灣

가. 附加價値稅型 營業稅

納稅義務者는 다음과 같다.

① 물품 또는 노무를 판매하는 영업인

② 수입물품의 수취인 또는 소지인

③ 臺灣 내에 고정영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기업, 기관, 단체, 조직이 판매하는 노무의 매수인

과세대상은 臺灣 내에서의 물품 또는 노무의 판매 및 물품의 수입이며 다음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의제한다.

① 영업인이 생산·수입·구입한 물품을 영업인의 자가공급으로 전환하는 것 또는 생산·수입·구입한 물품을 무상으로 타인 소유로 이전하는 것.

② 영업인이 영업을 해산하거나 폐지시에 남은 물품(재고자산) 또는 채무변제를 위한 물품,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물품.

③ 영업인이 자기 명의로 물품을 대리 구매해서 위탁인에게 교부하는 것.

④ 영업인이 타인에게 위탁해서 물품을 대리 판매하게 하는 것.

⑤ 영업인이 대리 판매물품을 판매하는 것.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과세대상: 5%

② 은행, 보험, 투자신탁, 증권, 전당포: 5%

③ 보험업의 재보험 수입: 1%

④ 특수음식업: 15% 또는 25%

⑤ 소규모 영업인: 1%

⑥ 농산물 도매시장의 위탁판매인 또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영업인: 0.1%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다음 항목들은 매출세액공제를 불허한다.

① 법정 구입증빙이 없는 것.

② 본업 및 관련 업무에 관계없는 물품 또는 노무.

③ 교통용의 물품 또는 노무.

④ 종업원 개인의 복리를 위한 물품 또는 노무.

⑤ 9인승 이하 소형 자가용 승용차

非課稅 및 減免對象은 다음과 같다.

영세율	수출품, 수출과 관계있는 노무 또는 국내에서 공급하지만 국외에서 사용되는 노무, 국제선 운수 등
면 세	농어촌 정책과 관계된 것, 교육·문화와 관계된 것, 군사와 관계된 것 등

나. 貨物稅

納稅義務者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경우: 해당 생산·제조업자

② 과세대상 물품을 위탁 제조하는 경우: 위탁받은 생산·제조업자

③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의 수하인 또는 소지인

과세표준은 국내생산과 수입품에 대해 다르게 계산된다.

① 국내생산 : 생산·제조장 출고가격 ÷ (1 + 세율 + 12%)

② 수입품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항구건설비) ÷ (1 + 세율 + 10%)

1995년 현재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單位: %)

과세대상	세 율	과세대상	세 율
궐련	징수정지	전기류:	
잎담배	징수정지	냉장고	13
양주, 맥주(화주 제외)	징수정지	천연색 T.V.	13
고무 타이어	15	냉난방기	20
고무 타이어(대형 차량용)	10	냉난방기(중앙공급식)	15
시멘트	20	제습기	15
청량음료수	15	VTR	13
희석한 과일 및 야채쥬스	8	전축(전창기;record players)	10
판유리 및 유리막대	10	녹음기	10
		음향기기 (음향조합;audio recorders)	10
석유류:		전기오븐	15
가솔린	60	차량류:	
디젤유	50	소형차(9인승 이하)	
석유	50	2,000cc 이하	25
연료유(중유)	3	2,001~3,600cc 이하	35
항공유	8	3,601cc 이상	60
천연가스(LNG)	2	화물차, 대형버스, 기타 차량	15
솔벤트유	10	모터사이클	17
석유가스(LPG)	7.5	전동차량	반액

註: 주류에 대해서는 종전에 화물세를 부과하였으나 전매수입항목으로 재정수입에 기여하므로 폐지되었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된다.

○ 다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 국외로 운송·판매되는 경우

○ 전람회에 출품하지만 판매하지 않는 경우

○ 군위문품으로 기증되는 경우

○ 국방부의 사정을 거쳐 직접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第 Ⅱ 篇 租稅制度의 國際比較

Ⅰ. 所得稅制의 國際比較

1. 課稅對象所得

각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 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기타소득
미 국	임금, 급여, 팁, 수취이자, 수취배당금, 주·시 소득세 환부액, 이혼수당, 사업소득, 자본이득 또는 손실, 사업용자산의 매각손익, 퇴직연금, IRA 인출금, 기타연금 등, 가입, 사용료, 파트너쉽 등의 수익, 농업수입, 실업보증금, 사회보험금, 기타소득
영 국	근로소득, 무역 및 전문직 소득, 투자소득, 자본이득, 신용 및 재산소득
독 일	사업소득, 농림어업소득, 독립적 노동소득, 비독립적 노동소득, 자본재산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프랑스	상공업소득, 부동산소득, 농림업소득, 급여소득, 자유직업소득, 동산자본소득, 특정회사임원보수, 자본이득
일 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급여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일시소득, 기타소득
대 만	영리소득, 사무집행소득, 급여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및 권리금 소득, 농업·어업·축산업·광업·임업의 소득, 재산거래(양도)소득, 경기·시합 및 복권의 상금, 기타소득

2. 所得申告形態

각국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위를 기준으로 신고된다.

한 국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대 만
-독신자 -부부별산 -부부합산	-독신자 -부부합산 -부부별산 -특정세대주	-부부별산	-독신자 -부부합산	-가족합산 -분할과세 방식	-부부합산	-독신자 -부부합산 -부부별산

註 : 한국의 부부합산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 대해 적용됨.

3. 税率

각국의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單位: 만원, 달러, 파운드, 마르크, 프랑, 엔, 元의 순임)

	과 세 구 간	세 율 (%)
한 국	1,000 이하 1,000 ~ 4,000 이하 4,000 ~ 8,000 이하 8,000 초과	10 20 30 40
미 국	0 ~ 23,350 23,350 ~ 56,550 56,550 ~ 117,950 117,950 ~ 256,500 256,500 초과	15 28 31 36 39.6
영 국	3,200 이하 3,200 ~ 24,300 24,300 초과	20 25 40
독 일	5,616 이하 5,617 ~ 8,153 8,154 ~ 120,041 120,042 이상	0 19 19~53 53

	과 세 구 간	세 율 (%)
프랑스	0 ~ 22,210 22,211 ~ 48,570 48,451 ~ 85,480 85,481 ~ 138,410 138,411 ~ 225,210 225,211 ~ 277,730 277,731 이상	0 12 25 35 45 50 56.8
일 본	0 ~ 300 301 ~ 600 601 ~ 1,000 1,001 ~ 2,000 2,000 이상	10 20 30 40 50
대 만	300,000 이하 300,001 ~ 800,000 800,001 ~ 1,600,000 1,600,001 ~ 3,000,000 3,000,000 이상	6 13 21 30 40

註 : 미국과 독일의 경우 독신자 신고시를 기준으로 함.

4. 所得控除制度

각국은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항목을 갖추고 있다.

한 국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 특별공제
미 국	- 표준공제방식(standard deduction) 또는 실액공제방식(itemized deduction) · 의료비, 세금, 지불이자, 자선기부금, 도난재해손실, 전금비용, 잡비용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개인퇴직보험(IRA) 공제, 자영업퇴직보험(Keogh) 공제, 위자료 지불공제
영 국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노인을 위한 인적 공제, 의료보험비, 이자비용, 개인연금 혹은 퇴직연금에 지불한 금액 - 특별공제 · 위자료 지불, 주택마련 대출 이자금

독 일	- 표준 필요경비공제 - 특별 지출공제 · 개인보험료, 사회보험료, 건축저축, 교육비, 세무상담비, 기여금, 직업훈련비 - 인적공제 - 이상부담 공제
프랑스	- 소득공제 · 급여소득공제, 이자배당소득공제, 사회보험료공제, 노년자공제, 장애자공제 - 특별공제 · 공익사업기부금, 시청각설비이용료, 자녀의료비, 부양자녀공제, 위자료지불액
일 본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재해손실공제, 의료비, 사회보장보험료, 생명보험료, 근로소득공제, 재해보험료, 기부금
대 만	- 일반공제 · 열거공제 : 기여금, 보험료, 의료 및 산아비용, 재해손실, 가옥구입 차입금이자 · 표준공제 - 특별공제 · 자산양도손실, 급여소득특별공제, 저축투자특별공제, 장애자특별공제, 교육비특별공제

5. 稅額控除制度

각국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갖추고 있다.

한 국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미 국	- 미성년자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 장애자노인 세액공제 - 투자수익 또는 수취소득 세액공제
영 국	- 개인소득세액공제 - 외국세액공제 - 배당수익세액공제

독 일	- 배당수익 세액공제 - 외국세액공제 - 원천징수 세액공제 - 주택이전 세액공제
프랑스	- 이자지불비용 - 생명보험료 - 자녀교육비 - 주거용 빌딩에의 투자 - 새로 출자한 기업에의 투자
일 본	- 배당수익세액공제 - 외국세액공제
대 만	- 외국세액공제

6. 各國의 二重課稅 調整制度(Imputation Credit)

각국은 배당소득이 개인과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갖추고 있다.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대 만
세 액 공제율	①	배당금의 25%	배당금의 7분의 3	배당금의 50%	10%②	③
계산방법		④	④	④		

註 : ① 일반적으로 개인의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 계열회사간(affiliated corporations)의 배당소득은 100% 공제가능
-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80%까지 공제가능
- 그 외의 기업간의 배당금은 70%까지 공제가능

② 납세자의 총소득액이 1천만엔 미만일 경우
③ 기업간의 배당소득은 80%까지 공제가능
④ 세액공제금액을 배당수익에 합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함. 산출된 과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금액을 제외시킴.

예)

배당소득	800
25% 세액공제	200
과세배당소득	1000
세율 40%	400
– 세액공제	200
최종세액	200

Ⅱ. 法人稅制의 國際比較

1. 納稅義務者와 課稅對象

각국의 納稅義務者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한 국	· 영리내국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 영리외국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국내외의 수익사업소득 · 국내원천소득 ·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미 국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전세계소득 · 미국 내의 항구적 시설로부터의 소득, 미국을 원천으로 하는 이자·배당금·로열티 등
영 국	· 거주법인 · 비거주법인	· 전세계소득과 자본소득 · 영국 내에 지점 또는 대리인을 통한 사업소득
독 일	· 거주법인 · 비거주법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 전세계소득 · 독일 내의 항구적 시설로부터의 수익, 독일을 원천으로 하는 배당·로열티·채권이자 · 개인소득세로 부과
프랑스	· 거주법인, 비거주법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 국내소득 · 개인소득세로 부과
일 본	· 보통법인 · 공공법인 · 공익법인 · 협동조합 · 인격없는 사단	· 모든 소득 · 비과세 ·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과세 · 모든 소득 ·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과세
대 만	· 일반영리법인,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협동조합, 기타단체	· 모든 영리사업소득

2. 課稅區間과 稅率

각국 법인세의 課稅區間과 稅率은 다음과 같다.

	과세구간	세율(%)
한 국 (원)	1억 이하 1억 초과	16 28
미 국 (달러)	0 ~ 50,000 미만 50,000 ~ 75,000 75,000 ~ 100,000 100,000 ~ 335,000 335,000 ~ 10,000,000 10,000,000 ~ 15,000,000 15,000,000 ~ 18,333,333 18,333,333 이상	15 25 34 39 34 35 38 35
영 국 (파운드)	300,000 이하 300,000 ~ 1,500,000 1,500,000 초과	25 35 33
독 일	유보소득 배당소득	45 (실효세율[1]:48.375) 30 (실효세율:32.25)
프랑스		33.3
일 본	- 보통법인 · 자본금 1억엔 이하이고 연간 소득 8백만엔 이하인 경우 · 그 외 - 협동조합, 공익법인, 특별의료법인	 28 37.5 27
대 만 (元)	50,000 이하 50,000 ~ 100,000 100,000 초과	0 15 25[2]

註 : 1) 법인세액의 7.5% 團結附加稅 과세.
2) 누진차액 10,000元 적용

Ⅲ. 相續·贈與稅制의 國際比較

1. 主要國의 相續·贈與稅 課稅體系

각국의 상속·증여세 체계는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취득과세형으로 분류되며 納稅義務者는 다음과 같다.

	과세체계	납세의무자	
		상속세	증여세
한 국	유산과세형	피상속인	수증인
미 국	유산과세형	피상속인(유언집행자)	증여자
영 국	유산과세형	피상속인	수증인
독 일	유산취득과세형	상속인	수증인
프랑스	유산취득과세형	상속인	수증인
일 본	유산취득과세형	상속인	수증인
대 만	유산과세형	피상속인(유언집행자)	증여자

2. 主要國의 相續·贈與稅額 算定方式

각국의 상속세액은 다음과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산 출 세 액
한 국	〔(유산총액 + 증여재산) — (채무·장례비 + 비과세 및 불산입재산 + 공과금 + 각종 공제액)〕× 세율 — (단기상속면제 + 각종공제)
미 국	〔(유산총액 + 일생동안의 증여총액) — (채무·장례비·상속재산 관리비용 + 비과세재산 + 공제액)〕× 세율 — (증여세액공제 + 통합이전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영 국	〔(유산총액 + 7년이내 증여분) — (채무·장례비 + 비과세재산 + 공제액)〕× 세율
독 일	〔유산총액 + 10년이내 수증분 — (채무·장례비 + 비과세재산 + 공제액)〕× 세율
프랑스	〔(유산총액 + 일생동안의 증여총액) — (채무·장례비 + 비과세재산 + 공제액)〕× 세율 — 세액공제액
일 본	〔(유산총액 + 3년이내의 수증분) — (채무·장례비 + 비과세재산 + 공제액)〕× 세율 — 세액공제액
대 만	〔(유산총액 + 3년이내의 증여분) — (채무·장례비 + 비과세재산 + 면세액 + 공제액)〕× 세율 — 의제유산으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각국의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산 출 세 액
한 국	[(증여총액 + 5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가액) — (비과세 및 불산입재산 + 채무 및 부담액 + 각종공제)] × 세율 — 각종공제
미 국	(당해연도 증여총액 + 전년도까지의 증여누계액 — 연례비과세 및 기타 공제액 합계) × 세율 — 이전연도 증여에 대한 당해연도 세율적용 납부세액 — 통합이전세액공제
영 국	(증여총액 — 비과세 및 면세액) × 상속세율의 1/2(20%) ·7년 이내 사망시 - 상속세율(40%) 적용 ·7년 이후 사망시 - 면세하는 잠정적 면세이전(PETs)제도 실시
독 일	[증여총액 — 비과세증여 — 공제액(기초공제 제외)]× 세율 — 세액공제
프랑스	[증여총액 — 비과세증여 — 공제액(기초공제 제외)]× 세율 — 세액공제
일 본	(증여총액 — 비과세증여 — 배우자공제 — 기초공제) × 세율
대 만	[매년증여총액 — (매년 면세액 + 해당연도 매회 증여공제액의 합계)] × 세율 —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3. 主要國의 相續·贈與稅率體系

각국의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 율 체 계
한 국	- 4단계 초과누진세율 · 최저: 5천만원 이하 10% · 최고 : 5억 5천만원 초과 40%
미 국	- 17단계 초과누진세율 · 최저: 1만달러 이하 18% · 최고: 300만달러 초과 55%
영 국	- 단일세율체계: 40% 잠재적 면세이전제도 적용
독 일	- 친밀도에 따른 25단계 단순누진세율 제1류: 배우자, 자녀 · 최저: 5만마르크 이하 3% · 최고: 1억마르크 초과 35% 제2류: 부모, 조부모, 손자, 증손자 · 최저: 5만마르크 이하 6% · 최고: 1억마르크 초과 50% 제3류: 기타직계비속, 형제자매, 계부모,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 등 · 최저: 5만마르크 이하 11% · 최고: 1억마르크 초과 65% 제4류: 기타의 모든 취득자 · 최저: 5만마르크 이하 20% · 최고: 1억마르크 초과 70%
프랑스	- 친밀도에 따른 초과누진세율 배우자간 상속(7단계) · 최저: 5만프랑 이하 5% · 최고: 1,120만프랑 이상 40% 형제·자매(2단계) · 최저: 15만프랑 이하 35% · 최고: 15만프랑 초과 45% 직계상속(7단계) · 최저: 5만프랑 이하 5% · 최고: 1,120만프랑 이상 40% 4촌 이상 55% 기타 60%
일 본	- 9단계 초과누진세율 · 최저: 800만엔 이하 10% · 최고: 20억엔 초과 70%
대 만	- 18단계 초과누진세율 · 최저: 30만元 이하 2% · 최고: 1억 6천만元 초과 60%

각국의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세율체계로 구성된다.

	세 율 체 계
한 국	- 4단계 초과누진세율 · 최저: 2천만원 이하 10% · 최고: 3억원 초과 40%
미 국	- 상속세와 동일(통합이전세율 적용) 17단계 초과누진세율 · 최저: 1만달러 이하 18% · 최고: 300만달러 초과 55%
영 국	- 잠정적 면세이전(PETs)제도 적용 상속세의 1/2 (20%) 과세 · 7년 이내 사망시 상속세율(40%) 적용 · 7년 이후 사망시 면세
독 일	- 상속세와 동일(친밀도에 따른 25단계 단순누진세율) 제1류: 배우자, 자녀 · 최저: 5만마르크 이하 3% · 최고: 1억마르크 초과 35% 제2류: 부모, 조부모, 손자, 증손자 · 최저: 5만마르크 이하 6% · 최고: 1억마르크 초과 50% 제3류: 기타 직계비속, 형제자매, 계부모,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 등 · 최저: 5만마르크 이하 11% · 최고: 1억마르크 초과 65% 제4류: 기타의 모든 취득자 · 최저: 5만마르크 이하 20% · 최고: 1억마르크 초과 70%
프랑스	- 상속세와 동일 배우자간 상속(7단계) · 최저: 5만프랑 이하 5% · 최고: 1,120만프랑 이상 40% 형제 · 자매(2단계) · 최저: 15만프랑 이하 35% · 최고: 15만프랑 초과 45% 직계상속(7단계) · 최저: 5만프랑 이하 5% · 최고: 1,120만프랑 이상 40% 4촌 이상 55% 기타 60%
일 본	- 13단계 초과누진세율 · 최저: 150만엔 이하 10% · 최고: 1억엔 초과 70%
대 만	- 17단계 초과누진세율 · 최저: 30만元 이하: 4% · 최고: 1억 5천만元 초과: 60%

4. 主要國의 相續·贈與稅 控除制度

각국 상속세(증여세)의 공제제도는 다음과 같다.

	인 적 공 제	기타공제 및 감면, 비과세
한 국	· 배우자공제 :[1억원 + (결혼연수 × 1,200만원)]과 배우자가 법정 상속지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10억원 한도) 중 선택 · 자녀공제 : 2천만원(2인 한도) · 미성년자공제 : 300만원×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3천만원 · 장애자공제 : 3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 기초공제 : 1억원 · 주택상속공제 : 1억원 한도 · 주택상속추가공제 : (주택가액 1억원) × 90% 추가공제 * 주택상속공제와 주택상속추가공제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외에 별도로 1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 · 농지, 초지, 산림지 상속공제 : 농지 9천평 이내, 초지 4만 5천평 이내, 산림지 9만평 이내 · 산림상속공제 : 전액
미 국	· 배우자공제 : 전액공제(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제외)	· 비용공제 : 장례비용 및 상속재산관리비용, 우발손실(보험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한도 내) ·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개인적채무 · 자선단체 기부금 전액공제 · 1977년 이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세액공제 · 외국사망 세액공제(타국납부세액과 연방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 · 종합이전 세액공제(19만 2,800달러 한도)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연수에 따라 20~100%) · 州 사망세 세액공제(전액)
영 국	· 기초공제 : 상속재산누적시가총액의 첫번째 15만 4천파운드까지는 전액 공제 · 배우자공제: 전액공제(단, 受遺者가 해외거주자일 경우 5만 5천파운드 한도)	· 자선단체기부금 전액공제 · 정당기부금 전액공제 · 전시·공무로 인한 상속 비과세 · 국가적 유산이나 공공물의 보존관련 단체에 대한 상속

	인 적 공 제	기타공제 및 감면, 비과세
독 일	· 배우자공제 : 25만마르크(상속시 25만마르크 특별배려공제추가) · 자녀공제 : 9만마르크(상속시 1만~5만마르크특별배려공제추가) · 일반공제 : 친밀도에 따른 제1류에서 제4류까지의 분류에 따라 3천~5만마르크	· 비용공제 : 장례비용, 관리비용, 상속인의 채무 · 소액가사재산, 공익용재산 비과세 사후 동거자의 단기부양청구권 · 직계존속의 생전배려 및 간호인의 배려에 관한 비과세 · 공익단체 출연에 대한 전액 비과세 · 정당기부금 전액 비과세
프랑스	· 배우자공제 : 33만프랑 · 자녀공제 : 30만프랑 · 형제자매 : 10만프랑 · 장애자공제 : 30만프랑 · 세액공제 : 배우자와 직계자녀는 각 4천프랑, 기타는 각 2천프랑	· 테러희생자 유산 전액공제 · 생명보험금지급, 유물, 산림 등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면제 · 연금의 경우 생존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전시 완전면제
일 본	· 기초공제 : 5,000만엔 + (1,000만엔 × 법정상속인수) · 배우자세액공제 : 〔(①법정상속분과 1억 6천만엔 중 큰 금액과 ②배우자의 과세가격 상당액 중 적은 금액) ÷ 각 상속인의 과세가격의 합계액〕× 상속세총액 · 미성년자공제 : 6만엔 × 20세까지 연수 · 장애자세액공제 : 6만엔 × 70세까지 연수	· 묘소, 제구, 분묘 등의 소유권 · 공익사업용 재산 ·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한 심신장해공제제도에 의하여 급부금을 받을 권리 · 상속인이 취득한 생명보험금 등의 합계액 중 일정한 금액 · 상속인 등이 취득한 퇴직수당금 중 일정한 금액 · 상속세의 신고서제출기한까지 국가 등에 증여한 상속재산
대 만	· 배우자공제 : 200만元 · 직계존속 및 비속 : 1인당 25만元 · 미성년자 : 25만元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형제자매 및 조부모 : 1인당 25만元	· 상속받은 농업용지 : 가액의 50% · 단기재상속재산공제(연수에 따라 20~80%) · 장례비(40만元 한도) 및 관리비용 · 일반면세 : 유산총액에서 200만元까지 면세 · 군인, 공무원, 경찰, 교원 등이 임무수행으로 인해 사망시 400만元까지 면세

Ⅳ. 財産稅制의 國際比較

각국의 재산과세는 취득, 보유, 양도의 3단계에 걸쳐 과세되고, 각국의 세목명은 다음과 같다.

		한 국	미 국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일 본	대 만
재산보유세	지방	財産稅(건물) 綜合土地稅 (토지)	地方 財産稅	議會稅	動産稅	財産稅 土地稅 住居稅	固定資産稅 特別土地 保有稅	地價稅
	국가			營業用 레이트	純富裕稅	純富裕稅	地價稅	
자본이득과세	개인	讓渡所得稅 (분리과세)	聯邦 所得稅 州所得稅	資本 利得稅	(비과세)	所得稅	所得稅 (분리과세)	土地 增值稅
	법인	法人稅+ 法人特別 附加稅 土地超過 利得稅	法人稅	法人稅	法人稅	法人稅	法人稅	
이전·취득과세	지방	取得稅 登錄稅	所有權 移轉稅 抵當稅	印紙稅	不動産 取得稅	不動産 取得稅	不動産 取得稅 登錄免許稅	契稅

1. 取得段階課稅

	취득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취득단계과세
한 국	-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음	- 취득세 · 과세표준:취득당시시가 · 세율:2%(일반재산), 15%(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주택) · 면세: 50만원 이하 - 등록세: 0.3~3%(부동산소유권 취득), 0.8%(소유권 보존)
미 국	- 주거주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없음 · 부대금융비용(points)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허용 - 주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 소득공제 없음 - 임대부동산 : 임대주택취득시 세액경감 (비적립 저소득층 주택공제 : 보유기간 10년) - 거래비용 : 주거주주택의 거래비용은 공제 안됨 · 직장관련 이주(최소 35마일)시 최고 3천달러 소득공제	- 이전세(Transfer Tax) · 시가의 1~5%(36개 주에서 부과하고 있음)
영 국	-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음	- 인지세(stamp duty)
독 일	- 자가 거주주택의 건축 및 취득비용에 대한 8년간 소득세 소득공제 · 최초 4년-건축/취득비용의 6% (1만 9,800마르크 한도) · 다음 4년-건축/취득비용의 5% (1만 6,500마르크 한도) · 매년 부양자녀 1인당 1,000마르크 추가공제 허용	- 부동산 거래 이전세: 2% 또는 VAT

	취득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취득단계과세
프랑스	- 주거주 주택:신규거주주택취득 및 최소 6년간 보유시 세액공제(시가의 10%, 최고한도 30만프랑, 부부의 경우 60만프랑) - 임대주택 : 공제최고한도 40만프랑 (부부 80만프랑) - 세금공제 : 4년에 걸쳐 실시, 1회 적용	- 賣上稅(Land sales tax) · 세율 : 지방정부별로 4.2~6.5% 범위의 차등세율과 지방 정부단계별 부가세 존재.
일 본	- 주택건축, 구입, 증·개축시 주택융자금 : 최초 6년간 대출금 잔액의 1%까지 소득세액공제 - 융자최고한도액: · 1986.1 ~ 1991.3.31 건축 및 구입주택 2천만엔 · 1991.3.31 이후 건축 및 구입주택 3천만엔	- 부동산취득세(都道府縣稅) · 세율 : 4%(토지, 주택용토지는 세액의 1/4 감액), 3%(주택) · 면세 : 10만엔(토지), 23만엔 (건축가옥), 12만엔(취득가옥) - 등록면허세(국세) · 세율 : 0.6%(소유권보존) 5%(소유권이전) 0.4%(저당권설정)
대 만	-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음	- 契稅(Deed Tax) 세율 7.5%

2. 保有段階課稅

	저당이자소득공제	재산세	귀속임료 및 임대소득
한국	- 주택구입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액에 대한 공제 혜택 없음. 단,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의 40%를 연 72만원 한도에서 공제허용	- 재산세: 건물보유세 · 세율:0.3%(일반건물), 0.3~7%누진(주택) - 종합토지세:전국인별 합산토지세 · 종합합산:0.2~5% 누진 · 별도합산:0.3~2% 누진 · 분리과세:0.1%, 0.3%, 5% - 토지초과이득세(국세):초과 지가상승(1.5배)유휴토지 과세 · 세율: 30%, 50% · 기본공제: 200만원	- 자가거주주택의 귀속임료: 과세 안함 - 개인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 2주택 이하 과세 안함
미국	- 주거주 주택 : 공제허용 · 취득부채액 : 1백만달러 이하 주택융자에 한함 · 자기자본(equity)부채액 : 10만달러 이하 자기자본 담보 주택융자에 한함. - 주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제한적으로 차입금 지급이자 공제 - 임대부동산 차입금 지급이자 : 자산소득에 대해 공제	- 州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재산세 부과 · 세율, 평가절차 : 州별로 차등과세 · 실효세율 : 일반적으로 시가의 1~2% 수준임	- 자가거주 주택의 귀속임료: 과세 안함 - 부동산 임대소득: 개인소득세로 종합과세함 · 임대손실 소득공제 : 2만 5천달러 한도내에서 허용

	저당이자소득공제	재산세	귀속임료 및 임대소득
영국	- 주거주 주택 : 구입차입금 (1호당 한도액 3만파운드까지)에 대한 지급이자의 25% 공제 허용 - 주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 : 공제 안됨 - 임대용 주택 : 연간 26주 이상 임대된 주택의 차입금 이자는 제한없이 공제 허용	- 1993년 이후 營業用不動產에만 재산세 (Business Rates)가 국세로 부과됨. ·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자가거주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없음 - 1993년 4월 이후 地方議會稅(council tax) 발효 : 점유자에 대한 주거용 부동산 보유세 부과됨.	- 자가거주주택의 귀속임료 : 소득세에 과세되지 않음 - 주택(임대소득 : 연간 3,250파운드 초과액)에 대해 소득과세됨 · 비용공제없는 초과금액과 비용공제한 임대순소득 중 택일
독일	- 자가거주 주택의 건축 및 취득관련 차입금 지급 이자: 공제 허용 - 저당이자:건축 및 다음 2년간 연간 1만 2천마르크까지 공제 - 임대용 주택의 차입금 지급이자 : 공제	- 기본연방세율 : 부동산의 표준가액에 따라 적용 - 지방세율 : 주에 따라 차등과세 - 임대용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재산세의 소득공제 허용	- 자가거주주택의 귀속임료과세 : 1986년 폐지(1998년까지 이전제도하에서 부과됨)
프랑스	- 세액공제: 최초 5년 동안 이자총액의 25% 공제 - 주거주주택: · 1987.1.1 이후 체결된 계약의 이자액에 대해 최고한도 1만 5천프랑 공제 (부부 3만프랑) · 1991.9.18 이후 체결된 계약:최고한도 2만프랑(부부 4만프랑) - 임대주택 : 공제, 최고 한도제한대상에서 제외	- 土地稅 · 과표 : 임대액의 50% · 세율 : 지역마다 차등세율 · 1991년 평균 22.9% · 주택임대에 따른 재산세 : 공제	- 자가거주주택의 임대소득 : 과세 안함 - 임대주택의 임대소득 : 과세 및 누진세율 부과

	저당이자소득공제	재산세	귀속임료 및 임대소득
일본	- 공제안됨	- 固定資產稅 : 토지, 건물, 유형기업 자산 : 과세대상가액의 2/1 또는 1/4과표로 하여 1.4%(최고2.1%) 기본세율 부과	- 자가거주주택의 귀속임료 : 과세되지 않음 - 주택임대소득 : 개인소득세 성격으로 과세
대만	- 주택구입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현 재에 대해 1인당 연간 10만元)	- 房屋稅 · 과표 : 건축물의 현재가치 · 세율 주거용 : 1.38%(자가거주), 1.38 ~ 2%(자가비거주) 비주거용 : 3 ~ 5%(영업용), 1.5 ~ 2.5%(비영업용) 주거와 영업 겸용 : 사용면적에 비례해서 세율적용	- 비용공제한 임대소득은 개인소득세내에서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함.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 - 10%, 비거주자 - 20%)

3. 讓渡段階課稅

	양 도 단 계 : 주 택
한 국	-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분리과세 · 세율:일반자산 30~50%, 2년미만 보유자산 50%, 미등기전매 75% · 비과세 및 공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30%,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3년내 양도시 100%, 3~6년내 양도시 60%
미 국	- 主居住住宅의 대체취득시 과세연기(Rollover) 허용 요건 · 거래전·후 각 2년내 신주택 구입 · 대체취득가액 〉 양도가액 : 완전승계 · 대체취득가액 〈 양도가액 : 차액분에 대한 과세 - 주거주주택의 양도익 비과세 (Exclusion)요건 · 55세 이후 · 양도전 5년 기간중 3년 이상 보유·거주 · 일생 1회 12만 5천달러 한도액 - 주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 임대주택의 이득: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영 국	- 자가거주주택에 대한 자본이득: 비과세 - 자가거주주택 이외의 주택: 주택 매각시 자본이득세 부과 - 임대주택: 자본이득세 부과
독 일	- 부동산이전거래세 : 독일에 위치한 자산취득에 부과 · 세율:2%
프랑스	- 주거주 주택: 비과세 - 주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 및 임대주택: · 주거주 주택 비소유자에 의해 주택양도시 및 40만프랑 이하의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시 비과세 - 5년 이상 보유주택의 자본이득 : 당해 보유연도당 3.3% (1993.6 이후 5%) 세액공제 - 5년 이하 보유주택의 자본이득: · 배우자 : 2만프랑 공제 · 독 신 : 3만프랑 공제 · 부양자녀 1人당 1만프랑 공제

	양 도 단 계 : 주 택
일 본	- 부동산 양도익: 분리과세 특례 - 장기보유(5년 이상) 주택 : 10%(최초 6천만엔에 대해), 15%(6천만엔 초과분 누진과세) - 주거주택인 경우: 3천만엔 특별공제 - 단기보유(5년 이하)부동산 : 과세자본이득의 40%, 종합과세시 순증가분의 110% 중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함.
대 만	- 토지의 경우 자본이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을 가진 土地增値稅로 분리과세함.

4. 富裕稅

獨逸과 프랑스의 경우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 美國, 日本, 臺灣, 英國은 부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 국	- 부유세 부과 안함
미 국	- 부유세 부과 안함
영 국	- 부유세 부과 안함
독 일	- 구서독지역(old länder) 내 주택: 1964년 표준지가의 140% 수준으로 평가 - 구동독지역(new länder) 내 주택: 1935년 표준지가를 조정한 과표 - 순자산액에 부유세 1% 부과(농림지, 부동산, 사업용재산 0.5%) · 기초공제: 12만마르크(개인), 24만마르크(부부합산), 부양가족 1인당 12만마르크 허용.
프랑스	- 사업용 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에 부유세(1982~86년, 1988년~현재) 부과함
일 본	- 부유세 부과 안함
대 만	- 부유세 부과 안함

V. 消費稅制의 國際比較

소비세제는 매우 다양한 세목을 포괄하고 있는데, 각국이 운용하고 있는 소비세목은 다음과 같다.

	한 국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대 만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판매세	○	 ○	○	○	○	○	○
석유류세 (교통세,탄화수소세,광유세,석유산품내국소비세,휘발유세,석유류 화물세)	○	○	○	○	○	○	○
연방소매세		○					
연방제조자세		○					
시설이용세		○					
환경세		○					
도박세 또는 도박유희세		○	○				
항만유지세		○					
총포세		○					
담배(소비)세	○	○	○	○	○	○	
주세	○	○	○	○	○	○	
전화세	○	○					
주연료세		○					

	한 국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대 만
특소세 · 화물세	○						○
지방도로세						○	
석유가스세						○	
자동차중량세		○				○	
자동차특별세			○				
항공기연료세		○				○	
전원개발촉진세						○	
커피세				○			
자동차특별세			○				
경마복권세				○			

1. 附加價値稅 또는 販賣稅

각국 일반소비세의 세율과 소규모 사업자 면세제도는 다음과 같다.

	기본세율	기타 세율	비고(소규모사업자 면세제도)
한 국	10%	2%, 3.5%, 영세율, 면세	소액부징수제도 : 1과세기간 납부세액 24만원 미만 사업자 과세특례제도 :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간이과세제도 :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미만 사업자
미 국	0~7%	-	
영 국	17.5%	영세율, 면세	매출액 4만 5천파운드 이하 사업자
독 일	15%	7%, 영세율, 면세	직전기 매출액 2만 5천마르크 이하 또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10만마르크 이하로 예상되는 사업자
프랑스	20.6%	5.5%, 2.1%	협의과세제도: 매출액 50만프랑(재화) 또는 15만프랑(용역)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액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간이과세제도: 매출액 300만프랑(재화) 또는 90만프랑(용역) 미만 사업자 대상 면세사업자: 세액 1,350프랑 미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세액감면제도: 세액 5,401프랑(기능장인은 2만프랑) 미만 사업자 대상 감면
일 본	3%	영세율, 면세	매출액 3천만엔 이하 사업자 면세 한계세액공제제도 - 매출액 5천만엔 이하 간이과세제도 - 매출액 4억엔 이하
대 만	5%	0.1%, 1%, 15%, 25%, 영세율, 면세	

2. 담배消費稅

각국은 담배소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하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명칭	국세·지방세 여부	과세체계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 과세여부
			궐련	기타	
한 국	담배소비세	지방세	종량세		×
미 국	연방담배소비세	연방세(국세)	종량세	종량세, 종가세 또는 혼합세	○
	주담배소비세	지방세(국세)			
영 국	담배세	국세	혼합세	종량세	○
독 일	담배세	국세	혼합세	혼합세	○
프랑스	담배소비세	국세	혼합세	종가세	○
일 본	국담배세	국세	종량세		○
	지방담배세	지방세			

3. 酒稅, 石油稅

美國, 英國, 獨逸, 프랑스, 日本의 주세 체계는 모두 종량세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 구조로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알콜도수가 높을수록 주세율이 더 높으며, 맥주보다는 와인이, 와인보다는 증류주의 세율이 더 높은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알콜도수보다는 고급도에 치중하여 세율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美國, 英國, 獨逸, 프랑스, 日本의 석유세 체계는 종량세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臺灣의 경우에는 종가세 체계로 되어 있다.

4. 其他 個別消費稅의 國際比較

美國, 英國, 獨逸, 프랑스, 日本에서는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과세대상을 가진 개별소비세가 없다. 다만 美國의 경우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승용차와 보트, 항공기(주로 비사업용), 보석, 모피 등에 대해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목적과 비슷하며, 日本과 美國의 경우에는 자동차 중량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까지는 종가세 체계로 되어 있었으나 1996년부터는 종량세 체계로 개편되었다.

臺灣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처럼 가전제품 및 승용차, 석유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화물세라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총포류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특징적인 사항 중의 하나이다.

Ⅵ. 租稅收入의 國際比較

OECD 기준에 의거하여 주요국의 조세수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의 수치는 지방세도 포함된 것이다[14].

1. 各國의 主要稅收 現況(1994年 基準)

(單位: 백만달러, 총세수대비율(%))

	한국	미국[1]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1]	대만[1]
총세수	75,291	1,836,009	349,062	802,029	587,752	1,337,032	36,220
소득세	30.74	42.37	35.59	29.40	17.73	40.57	22.76
개인소득세	18.53	34.49	27.57	26.50	14.07	25.63	12.54
법인소득세	12.21	7.87	8.02	2.90	3.62	14.94	10.22
기 타	-	-	-	-	0.05	-	-
사회보장비	-	29.15	18.26	39.08	43.53	33.63	-
임금, 노동세	-	-	-	-	2.35	-	-
재산세	14.14[2]	11.31	10.65	2.77	5.30	11.09	25.66[4]
간접세	30.07	17.18	35.28	28.73	27.13	14.45	13.88
기타세목	25.05[3]	-	0.22	0.02	3.97	0.26	37.70
조세부담률(사회보장비포함)	-	29.7	34.1	39.2	44.2	29.1	-
조세부담률(사회보장비제외)	20.0	21.0[1]	27.6[1]	23.9[1]	24.3[1]	19.3[1]	18.3[1]

註 : 1) 1993년 기준.
2) 국세의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및 지방세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포함.
3) 교통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기타 지방세가 포함됨.
4) 토지세, 농지세, 방옥세 등의 지방세가 포함됨.

14) 자세한 OECD의 세목분류기준은 해당자료를 참조.

2. 各國의 主要 消費稅 現況(1993年 基準)

(單位: 백만달러, 총세수대비율(%))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총소비세입	21,638	315,411	111,905	207,429	146,449	177,554	5,126
부가가치세	67.29	-	55.28	63.07	63.00	35.37	-
판매세(Sales Tax)	-	44.18	-	-	-	-	-
주세	7.87	3.63	6.71	2.01	1.54	9.89	-
원유세	-	-	1.79	16.42	-	2.49	-
담배세(지방세포함)	-	3.90	10.06	5.67	3.83	5.22	-
물품, 서비스 이용세	-	12.51	4.67	4.19	3.34	12.78	-
기타	24.84	30.23	21.49	8.64	28.29	34.34	-

3. 各國의 財産稅, 讓渡稅, 贈與稅 現況(1993年 基準)

(單位: 백만달러, 총세수대비율(%))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총세수	9,224	207,573	34,226	20,264	28,415	136,340	10,064
부동산관련세	86.58	90.61	87.26	34.81	49.91	62.73	-
자산관련세	1.17	-	-	37.28	11.66	-	-
상속세	7.07	8.32	5.41	8.00	15.16	19.38[1)]	-
증여세	5.18	0.95	0.15	1.09	2.24		-
재산거래세	-	-	7.18	18.82	21.03	17.89	-
기타	-	0.41	0.00	0.00	0.00	0.00	-

註 : 1) 증여세 포함

資料 : *Revenue Statistics of OECD Countries 1965~1994*
『국세통계연보』(1995), 『지방세정연감』(1995)
『賦稅統計年報』(1993)

參 考 文 獻

國稅廳,『1996 改正稅法解說』, 1996. 1.

財務部 稅制室,『日本의 稅制槪要』, 1993.

財政經濟院,『租稅槪要』, 1995. 4.

조세통람사,『조세편람』, 1996.

韓國租稅硏究所,『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硏究』, 硏究報告書 No. 10, 1994.

______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硏究調査資料 No. 4, 1989.

韓相國,『臺灣의 財政과 租稅制度』, 韓國租稅硏究院, 1995.

______,『取得課稅型 相續稅轉換에 관한 硏究』, 政策硏究資料 94-07, 韓國租稅硏究院, 1994.

洪學杓 · 崔致德,『美國稅法要解』, 行法社, 1994.

吉田隆一,『固定資産稅の重點詳解』, 中央經濟社, 1992.

尾琦三郎 · 中野秀之,『資産稅の取扱いと申告の手引』, 1995.

山田晟,『ドイシ法律用語辭典』, 東京: 大學書林, 1984.

稅法硏究所,「稅法學」,『西ドイシ相續稅法の邦譯』, 京都, 1984.

財經詳報社,『日本の 稅制』, 1995.

中央經濟社,『EC加盟國の 稅法』, 1992.

Blackwell, *The Equitable Life Tax Guide*, London, 1995.

Commerce Clearing House, *Internal Revenue Code*, Chicago, 1995.

______, *U.S Master Tax Guide*, Chicago, 1996.

Coopers & Lybrand, *International Master Tax Guide*, 1995.

Ernst & Young, *International Business Series*, various issues.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European Tax*

Handbook, 1993.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An International Survey of Taxes on Land and Buildings*, 1994.

Ministry of Finance, *Guide to ROC Taxes*, 1995.

Sandford, C. T., *Taxing Inheritance and Capital Gains*, 2th ed., London :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67.

Steward, C. and A. Taylor, *The Equitable Life Tax Guide*, 99th ed., 1995/96.

Stephense, Richard B., Guy B. Maxfield, Stephen A. lind,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5th ed., Boston : Warren, Gorham & Lamont, 1987.

http://sso.org/fta/tax_stru.html

http://www.ace.co.uk

http://www.tns.lcs.mit.edu:80/uscode

http://www1.ey.com/folio.pgi/dbiworld.nfo